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

2015 연차보고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

2015 연차보고서





2015년 세계경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으로 인한 유로존의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경제는 메르스 사태, 수출 부진 등의 어려움 속에서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는 과거 부실금융회사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채를 2015년 중 한 해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 8.1조원 감축하여 당초 감축목표인 5.9조원을 2.2조원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자산유형별로 체계적인 매각전략을 수립·실행하여 3.4조원의 파산배당 실적을 달성한 결과이자, 잠재인수자를 발굴하고 다양한 매각방안을 강구하여 보유자산을 매각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한 결과입니다.

우리 공사는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경영을 건전화하고, 과도한 리스크는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차등 산정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차등보험료 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공동검사 방식을 개선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보호한도를 별도로 적용하고, 변액보험 최저보장 보험금 등을 추가로 보호하기로 하였으며,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관계를 설명·확인하는 의무를 법제화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대형금융회사(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면서도 그로 인한 시장충격과 공적 자금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발맞춰 금융당국과 대형금융회사(SIFI)의 회생정리계획 마련에 대한 논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회사의 부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철저한 책임추궁을 지속함으로써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외적으로는 예금보험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해온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15개국 16개 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중입니다. 그 결과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가 선정하는 ‘올해의 예금보험기구상’을 세계 최초로 2회 수상하는 등 성과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끝으로 우리 공사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기존의 전략체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한 발 앞서 손실을 감축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능력을 갖춘 ‘최고의 금융안정 및 예금자보호 서비스기관’으로 발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연차보고서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예금보험제도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및 성과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사 장

곽 배 국

Contents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
2015 연차보고서

본 | 문 | 차 | 례

제1장	주요 추진 업무	1
제2장	조직 운영	13
	제1절 조직 구성	14
	제2절 조직 관리	20
제3장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35
	제1절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36
	제2절 부실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보호	42
제4장	예금보험제도 선진화	47
	제1절 예금보험제도 개선	48
	제2절 예금보험제도 관련 조사연구	50
	제3절 국제교류 및 협력	53
제5장	리스크 관리	61
	제1절 조사 및 공동검사	62
	제2절 차등보험료율제의 성공적 시행	70
	제3절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 관리	73
제6장	부실금융회사 정리	79
	제1절 부실금융회사 경영관리	80
	제2절 예금자 불편 없는 부실금융회사 정리	82
	제3절 부실금융회사 특별자산의 관리	85

제7장 파산재단 및 인수자산 관리 91

제1절 파산재단 관리 92

제2절 부실금융회사 인수자산 관리 98

제8장 부실책임 추궁 103

제1절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조사 104

제2절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109

제3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111

제4절 부보금융회사 건전경영 풍토 조성 116

제9장 기금관리 121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22

제2절 예금보험기금 134

제10장 2015년도 결산 145

제1절 결산 개요 146

제2절 결산 기준 147

제3절 결산 현황 153

부 록 167

1. 예금보험제도 개요 168

2. 대외평가 171

3. 2015년도 주요일지 173

4. 통계 174

Contents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
2015 연차보고서

표차례

〈표 I - 1〉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및 공사 단독조사 실적	3
〈표 I - 2〉 2015년 중 영업정지 저축은행	4
〈표 I - 3〉 2015년 중 영업정지 저축은행 정리 현황	4
〈표 I - 4〉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조달 및 지원 현황	7
〈표 I - 5〉 공사 보유 주요 지분 현황	9
〈표 I - 6〉 2015년 생활금융교육 추진 실적	10
〈표 II - 1〉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15
〈표 II - 2〉 예금보험위원회의 주요 기능	15
〈표 II - 3〉 2015년 중 예금보험위원회 의안 목록	16
〈표 II - 4〉 임 원	18
〈표 II - 5〉 조직도	19
〈표 II - 6〉 인원 현황	19
〈표 II - 7〉 전략 목표, 전략 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	22
〈표 II - 8〉 「하이-KDIC」 주요 프로그램	24
〈표 II - 9〉 2015년 사회공헌 활동 내역	30
〈표 II - 10〉 제4차 정보화 2단계(2015년) 세부 이행과제	33
〈표 III - 1〉 연도별 예금자보호제도 홍보 이미지	37
〈표 III - 2〉 홈페이지 개편 화면 비교	37
〈표 III - 3〉 연도별 예금자보호제도 인지도 추이	38
〈표 III - 4〉 예금보험관계 표시 이행여부 점검 실적	39
〈표 III - 5〉 여신고객 불편 해소 방안	42
〈표 III - 6〉 2015년 부실저축은행 정리방식 현황	45
〈표 IV - 1〉 2015년 주요 조사연구 보고서 현황	51
〈표 IV - 2〉 2015년 주요 발간물	52
〈표 IV - 3〉 2015년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교류 실적	58
〈표 V - 1〉 조사·공동검사 관행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주요 내용	65
〈표 V - 2〉 2015년 금융리스크리뷰誌 주요 내용	68
〈표 V - 3〉 차등평가의 구분	71
〈표 V - 4〉 등급별 적용 차등보험료율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율 대비)	71
〈표 V - 5〉 금융권역별 설명회 개최 실적	72

〈표 V- 6〉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 · 추가 · 수정 내역	74
〈표 VI- 1〉 2013년 이후 부실금융회사 경영관리 현황	80
〈표 VI- 2〉 2015년 부실금융회사 경영관리 인력 파견 현황	81
〈표 VI- 3〉 2014년~2015년 부실저축은행 정리(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	83
〈표 VI- 4〉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경과	84
〈표 VI- 5〉 특별자산 유형별 관련 대출 현황	86
〈표 VI- 6〉 자산유형별 관리형태	86
〈표 VI- 7〉 특별자산 4단계 회수관리 체계	87
〈표 VI- 8〉 특별자산 유형 및 매각절차	88
〈표 VI- 9〉 매각 대상 자산별 외부 전문기관 유형	88
〈표 VI-10〉 특별자산 회수유형별 실적	89
〈표 VII- 1〉 파산관재인 선임 현황	93
〈표 VII- 2〉 파산재단 보유자산 매각 실적	96
〈표 VII- 3〉 파산재단 종결 및 진행 현황	97
〈표 VII- 4〉 2015년 중 정리금융회사 인수자산	98
〈표 VII- 5〉 정리금융회사 인수자산(누계)	99
〈표 VII- 6〉 케이알앤씨(KR&C) 보유 자산(잔액)	101
〈표 VIII- 1〉 부실금융회사 관련 위법 · 부당행위 조사 현황(누계)	105
〈표 VIII- 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투입 부실금융회사 관련 소송제기 현황	107
〈표 VIII- 3〉 예금보험기금 투입 부실금융회사 관련 소송제기 현황	107
〈표 VIII- 4〉 부실채무기업 관련 심의 현황(누계)	110
〈표 VIII- 5〉 부실채무기업 관련 소송제기 현황(누계)	110
〈표 VIII- 6〉 2011년 이후 영업 정지된 부실금융회사의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현황	112
〈표 VIII- 7〉 연도별 해외은닉재산 회수 현황	113
〈표 VIII- 8〉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 현황	115
〈표 VIII- 9〉 최근 5년간 저축은행 직원 대상 부실예방교육 실시 내역	117
〈표 VIII-10〉 저축은행 합동교육 실시 내역	117
〈표 IX- 1〉 금융권역별 특별기여금요율	123
〈표 IX- 2〉 금융권역별 특별기여금 수입	123
〈표 IX- 3〉 2002년 12월 31일 이전 예보채 발행 및 상환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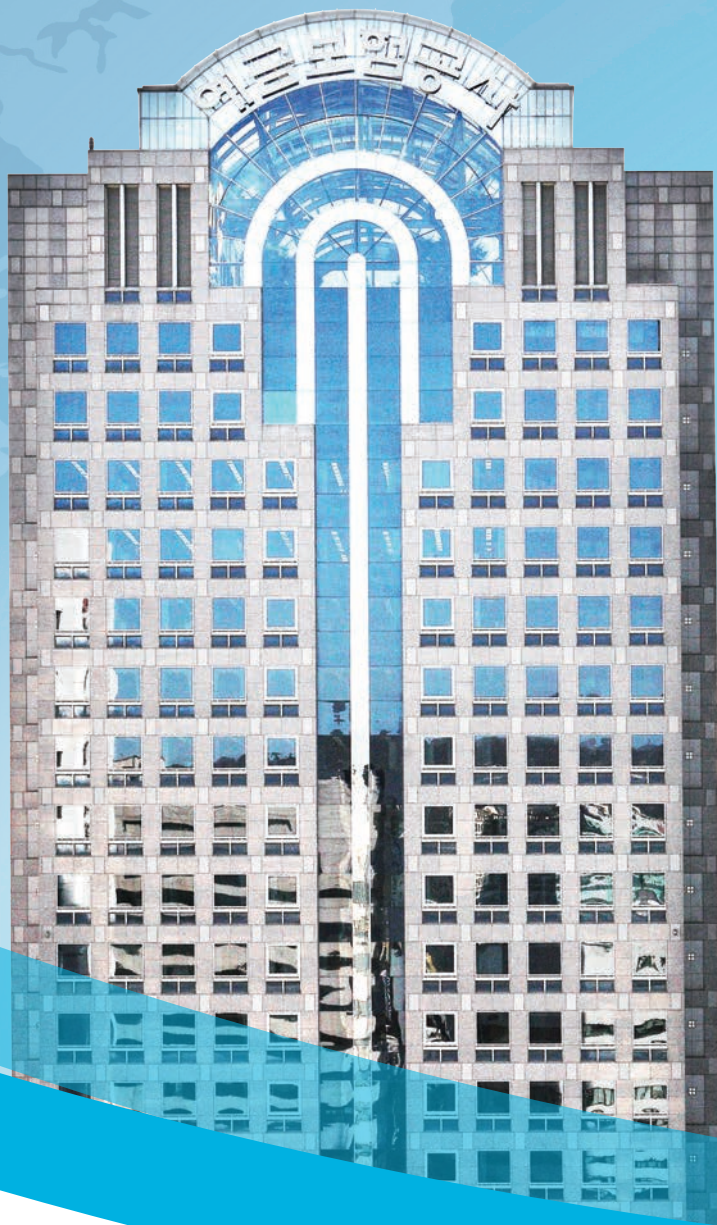
Contents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
2015 연차보고서

표 | 차 | 례

〈표Ⅸ- 4〉 상환기금채 발행 및 상환	125
〈표Ⅸ- 5〉 상환기금 차입 및 상환	126
〈표Ⅸ- 6〉 상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2015년)	127
〈표Ⅸ- 7〉 상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누계)	127
〈표Ⅸ- 8〉 연도별 저축은행 예금보험금 지급	128
〈표Ⅸ- 9〉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129
〈표Ⅸ-10〉 상환기금의 회수(2015년)	130
〈표Ⅸ-11〉 상환기금의 회수(누계)	131
〈표Ⅸ-12〉 금융권역별 파산배당금 회수	132
〈표Ⅸ-13〉 케이알앤씨(KR&C)의 자산매각 등을 통한 회수	133
〈표Ⅸ-14〉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율	134
〈표Ⅸ-15〉 연도별 ·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 수입	135
〈표Ⅸ-16〉 부보금융회사 출연금	136
〈표Ⅸ-17〉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채권 발행 및 상환	137
〈표Ⅸ-18〉 예금보험기금 차입 및 상환	137
〈표Ⅸ-19〉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2015년)	138
〈표Ⅸ-20〉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누계)	139
〈표Ⅸ-21〉 특별계정을 통한 예금보험금 지급 및 자금 지원 현황	140
〈표Ⅸ-22〉 예금보험기금의 회수(2015년 및 누계)	140
〈표Ⅸ-23〉 파산배당금 및 대출금 회수	141
〈표Ⅸ-24〉 케이알앤씨(KR&C)의 자산매각 등을 통한 회수	142
〈표Ⅹ- 1〉 요약 재무상태표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통합)	157
〈표Ⅹ- 2〉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통합)	158
〈표Ⅹ- 3〉 요약 재무상태표 (예금보험기금)	159
〈표Ⅹ- 4〉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예금보험기금)	160
〈표Ⅹ- 5〉 요약 재무상태표 (공사회계)	161
〈표Ⅹ- 6〉 요약 손익계산서 (공사회계)	162
〈표Ⅹ- 7〉 요약 재정상태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63
〈표Ⅹ- 8〉 요약 재정운영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64

〈그림 I - 1〉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구조	7
〈그림 II - 1〉 KDIC 비전 재정비 내용	20
〈그림 II - 2〉 KDIC 비전 및 전략 체계도	21
〈그림 II - 3〉 10대 미래전략 Agenda	23
〈그림 II - 4〉 KDIC 성과관리체계도	25
〈그림 II - 5〉 윤리경영 추진 전략 체계도	28
〈그림 II - 6〉 정보화 중장기 전략 체계도(2014~2016)	32
〈그림 VI - 1〉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정리방식 체계도	84
〈그림 VII - 1〉 채무조정서비스 제도 개선내용	94
〈그림 VII - 2〉 파산재단 단계별 관리방안	97
〈그림 VII - 3〉 케이알앤씨(KR&C)의 업무	100
〈그림 VIII - 1〉 부실책임조사 절차 및 조사대상자 권익보호제도	106
〈그림 VIII - 2〉 국내재산조사 업무흐름도	111
〈그림 VIII - 3〉 은닉재산 신고센터 업무흐름도	114



선제적 대응능력을 갖춘

최고의 금융안정 및 예금자보호 서비스기관



제1장

주요 추진 업무

300

2015년 부보금융회사 수

8,714

조 억원

2015년 생활금융교육 추진 실적

5,576

만 명

2015년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 실적

9

건

2015년 영업정지 부보금융회사 수

1

개

8

건

2015년 공사 단독조사 실적

644

명

268

2015년 표시제도 현장점검 1인당 영업점 수

5,000

예금보험 한도액

3,420

조

억원

2015년 예금보험기금 회수액

1,624

조

2015년 공적자금 회수액

KDIC

2015년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예금보험제도 선진화를 도모하였다. 「예금자보호법」 개정(2015.12.22 시행)을 통하여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및 변액보험 최저보장 보험금이(2016. 6.23 시행)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편입되었으며, 세무관서에 대한 공사의 부실관련자 과세정보 요구권 명문화를 통하여 은닉재산 조사를 위한 효율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예금보험관계 설명을 의무화함으로써 예금자의 권익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5,000만원)를 적용하는 등 퇴직연금(DC, IRP)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2014년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인 차등보험료를 제도를 개선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차등보험료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하였으며, 금융당국의 규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자산운용사에 대한 차등평가 방법을 변경하였다. 또한 '사전 부실예방에 중점을 둔 조사·공동검사'를 실시하고, 금융감독원의 확인검사를 축소시켜 부보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시키고, 점검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사·공동검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한편, 2015년 중 영업 정지된 부실금융회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하였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하여 부실금융회사의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한화생명 보험 지분 일부(9.5%)를 매각하여 6,537억원을 회수하였고, 보유자산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투입자금 회수 노력을 경주하였다.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이 보유한 자산의 특성을 감안한 매각전략을 수립하는 등 회수기법을 고도화하여 파산 배당이 2014년 2.6조원에서 2015년 3.4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외에도 회수사례집 발간 및 매각 장애요인 극복방안 마련 등 회수 관련 업무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고, 부실을 초래한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부실책임을 추궁하였다.

그 밖에도, '선제적 대응능력을 갖춘 최고의 금융안정 및 예금자보호 서비스기관'이라는 비전을 수립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6년 6월 공사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예금보험제도의 발전 및 공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략체계를 정비하고 미래전략 Agenda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 공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였다.

부보금융회사 리스크 상시감시 강화

공사는 리스크 상시감시 모형을 활용하여 부보금융회사의 재무현황 변동 및 잠재 리스크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 부실우려가 있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함으로써 보험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사전 부실예방에 중점을 둔 조사·공동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경미한 위규 사항은 현장에서 부보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점검기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조사·공동검사의 틀을 ‘기금 손실 예방을 위한 사전 부실 방지’로 전환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부보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부보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와 소통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공사는 부실화가 진행될 경우 대규모의 기금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형·계열 저축은행 6개사를 비롯한 총 9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해서 금융감독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통보함으로써 경영개선을 유도하였다. 또한, BIS비율 적기시정 조치 기준 +2% 미만, 3회계연도 연속 적자 등 단독 조사 요건에 해당되는 8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단독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 및 해당 저축은행에 통보하여 경영개선을 유도하였다. 특히, 2014년 5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확보된 시정조치 요청권을 활용하여 총 6개 저축은행 단독조사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 앞 시정조치 요청을 완료하였다.

〈표 I-1〉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및 공사 단독조사 실적

공동검사	→	2011년 31개사	→	2012년 9개사	→	2013년 18개사	→	2014년 9개사	→	2015년 9개사
단독조사	→	2011년 -	→	2012년 8개사	→	2013년 11개사	→	2014년 17개사	→	2015년 8개사

그 외에도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부실징후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감독관을 파견하여 해당 저축은행의 현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저축은행 대표이사 및 리스크 담당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하여 교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축은행업권의 자체 경쟁력 강화를 적극 유도하였다.

부실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정리 및 제도 개선

2014년 8월 부실금융회사로 결정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2015년 1월에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을 추진하여 예금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경영개선명령 종료 후 골든브릿지저축은행 대주주의 자체정상화 의지 피력으로 정리절차 진행에 차질이 우려됐으나, 이를 사전에 대비하여 제3자 계약이전 및 M&A 방식을 병행 추진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일부 자산·부채를 성공적으로 조은저축은행에 계약이전 시켰다.

〈표 I-2〉 2015년 중 영업정지 저축은행

영업정지일	저축은행명
2015. 1. 16	골 든 브 릿 지

2012년 하반기부터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을 도입하여 부실저축은행에 대해 금요일 영업종료 후 영업을 정지되고 월요일에 인수저축은행의 영업을 재개되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금자 및 여신거래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부실저축은행을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인수자를 찾기 어려워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함에 따라 공사의 가교저축은행 매각·관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적극적인 잠재인수자 물색 등의 노력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는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을 도입하여 예금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가교저축은행의 매각·관리 부담을 해소하는 정리체계를 정착시켰다.

또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정리 시 기존의 제3자 계약이전, 가교저축은행 설립, 청·파산 외 M&A를 통한 정리비용을 추가로 검증함으로써, 최소비용원칙 준수와 시장상황 및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는 정리·매각절차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I-3〉 2015년 중 영업정지 저축은행 정리 현황

영업정지 저축은행	→	인수 금융회사
골 든 브 릿 지		조은저축은행

특별자산의 효율적 매각 추진

자산별로 특화된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적정 매각시기 및 매각전략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PF사업장별 특성에 적합한 회수방식을 추진하고, 관련 관공서 등과 협조하여 인허가 사업권 등을 취득하거나 연장하여 자산 가치를 확보하였다. 유사 성격의 자산은 그룹화하여 관리하고 자산별로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여 회수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고가 미술품에 대하여는 경매 대상 미술품의 전시회 개최, 해외경매 출품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잠재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등 회수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산회수자문위원회(舊 매각자문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 매각방안 등을 심의함으로써 특별자산 회수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파산재단의 효율적 관리

공사는 파산재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파산재단 사무실을 통·폐합하고, 적정 업무보조인 수 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파산재단 운영경비 절감 및 운영의 체계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파산관재인에 대한 교육, 파산재단 업무현황 조사, 윤리강령 제정 등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공사는 파산재단의 자산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자산의 보유현황 및 매각대상 자산을 파악하고 자산유형별 맞춤형 매각방안을 수립하는 등 보유자산의 효율적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파산재단별로 연간 배당목표액을 부여하고 환가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조기배당을 유도하는 등 파산배당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14년 2조 6,474억원에 비해 29% 증가한 3조 4,017억원을 2015년 중 파산배당금으로 회수하였다.

공사는 수시로 파산재단의 비용 대비 환가효율성을 점검하고 효율성이 저하되는 재단에 대해서는 종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5년 말 현재 전체 490개 파산재단 중 446개를 종결하였다.

엄정하고 효율적인 부실책임 추궁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등 부실 발생 즉시 부실책임조사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조사반을 편성하여 부실금융회사 임직원 등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정하고 적극적인 부실책임 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이후 새로이 영업 정지된 31개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한편,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가 완료되어 기존에 수행 중이던 부실금융회사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조사를 더욱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부실책임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와 복잡·다양해지는 쟁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실책임심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법률·금융 분야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선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실책임조사 대상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부당한 피해 예방을 위해 부실책임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에서 통지까지 각 단계별로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진행상황을 수시로 안내하는 한편,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공사는 저축은행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 등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영업정지 직후부터 신속하게 재산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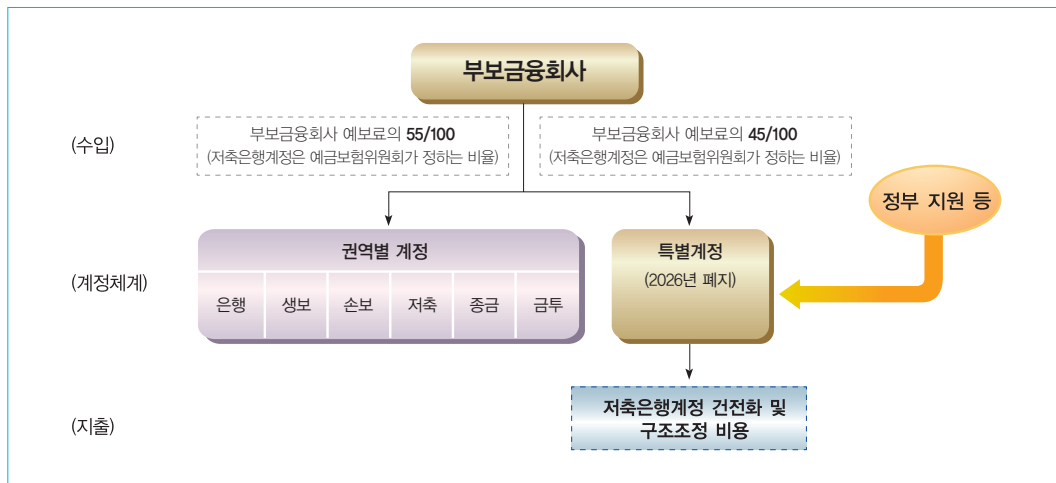
이와 함께, 저축은행 관계자 초청 워크숍, 지역별 여신담당 임원 간담회, 직원 대상 부실예방 교육 등 직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업권의 건전경영 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손해배상 소송대리인 워크숍을 개최하여 소송 노하우 및 주요 법적쟁점 등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위법·부당행위자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집을 발간·배포하는 등 소송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잔부채권 관리 강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제고

공사는 부실저축은행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4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2015년 말까지 31개 저축은행에 예금보험금 지급 등으로 지원한 총 27조 1,704억원을 차질 없이 적기에 조달하였다. 2015년 중에는 1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하여 537억원을 특별계정에서 지원하였다.

*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계정 건전화 달성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예금보험료·차입금·채권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2011년 1월부터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

〈그림 I-1〉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구조



또한, 공사는 2012년 7월 및 2013년 11월, 2014년 10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총 2,500억원을 무이자·장기 상환조건(10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용자받는 한편,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채권’을 발행하여 외부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채권전자입찰 시스템(E-BAS) 구축, 부보금융회사 한도대출약정 활용 등을 통해 조달비용을 절감하였다.

〈표 I-4〉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조달 및 지원 현황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조원)

지 원 액			조 달 액	
삼화 등 31개 저축은행	출자, 출연 및 예금보험금 등	27.2	계정 간 차입	1.9
			외부조달(특별계정채권 발행 등)	18.1
			예금보험료 등	7.2
합 계		27.2	합 계	27.2

아울러, 공사는 예금보험기금(특별계정)을 통해 지원된 자금의 회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2015년 중 파산배당금 등으로 총 3조 3,444억원을 회수하였다.

한편, 2014년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인 차등보험료율 제도와 관련하여 차등평가 결과에 대한 부보금융회사의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는 등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차등보험료율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하였다. 또한, 합리적인 차등평가를 위한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의 규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자산운용사에 대한 차등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2015.2월 및 12월)하였다. 이와 더불어,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차등평가 실시 전에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목표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예금보험료 감면과 관련하여 2014년말 계정별 기금 적립률에 따라 목표규모 상한을 초과한 금융투자계정은 예금보험료를 면제하였고, 하한을 초과한 생명보험계정은 2015 회계연도에 예금보험료 일부를 감액(17%) 하였다.

공적자금의 차질 없는 상환

공사는 2002년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 조정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2015년 말 현재 공사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상환해야 할 82.4조원 중 총 67.7조원을 정부출연금(45.7조원)과 회수자금 등(22.0조원)으로 상환하였다. 잔여 부채 14.7조원은 회수 자금과 특별기여금 등으로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상환할 계획이 있으며, 2013년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공적자금 정기재계산 결과에서 잔존부채의 상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공사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부실금융회사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지분매각이나 배당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고 있으며, 2015년 중 출자 금융회사 지분매각, 배당 등을 통해 총 1조 6,243억원을 회수하였다.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위해 2015년 7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의결한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에 따라 기존 경영권 지분 매각방식 외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분산매각(예 :

투자자별 4%~10%)하는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였다.

2015년에 한화생명보험 지분 24.75% 중 9.5%를 블록세일을 통해 매각하여 6,537억원을 회수하였고, 출자주식 배당을 통해 총 7,747억원을* 회수하였다.

* 우리은행 2,589억원, 서울보증보험 4,771억원, 한화생명보험 387억원

그리고 공사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파산재단의 보유자산 처분 및 KR&C가 보유한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1,959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I-5〉 공사 보유 주요 지분 현황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지 원 액	회 수 액 ¹⁾	잔여지분 평가액 ²⁾	공사 지분율
우리은행(舊우리금융지주)	127,663	82,017 ³⁾	30,442	51.06%
수 협	11,581	-	11,581	우선출자증권
서울보증보험	102,500	29,467	1,361	93.85%
한화생명보험	35,500	21,136	9,788	15.25%
합 계	277,244	132,620	53,172	-

주 : 1) 지분 매각, 배당금, 상환우선주 상환 등을 포함한 금액 기준

2) 상장주식은 2015년 12월말 종가 기준, 비상장주식은 2015년 말 공사 결산서 기준(다만, 수협의 경우 우선출자증권 상환예정액)

3) 경남·광주은행 매각 회수금액 포함

능동적인 예금자보호 서비스 실현

공사는 예금보험금 지급 대상 31개 저축은행의 예금자가 미수령한 예금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2015년부터 개인 뿐 아니라 법인으로 안내대상을 확대하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예금보험금 안내서비스를 다변화하였다. 또한, 추후 발생할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예금보험금 지급 제도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예금보험관계 표시 이행여부 점검 방식 및 내용의 다변화를 통하여 예금자보호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온라인 점검 방식을 전 부보금융업권에 확대 적용하였으며, 부보금융회사 본점(홍보물 담당부서) 및 금융상품 비대면 판매채널(홈쇼핑·온라인판매 등)에 대한 특별 점검 실시를 통해 표시 이행을 독려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였다.

한편, 공사는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사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5년에는 공사 임직원들이 요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시설인 '남산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그 동안의 1사 1촌(충남 예산군 운곡리 사과마을) 지원사업의 노력을 인정받아 농촌사회 공헌인증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舊 시장경영진흥원), 한국 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과 협력하여 상인대학 및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생활 금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과 MOU체결을 통해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금융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였다.

〈표 1-6〉 2015년 생활금융교육 추진 실적

(2015년 말 현재, 단위: 명)

구 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전통시장 상인	노 년 층	다문화가족	일반인 등	합 계
인원수	15,756	26,618	3,907	8,299	542	645	55,767

공사는 국민들의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함께 금융 거래 시 예금자보호 여부 확인을 유도하는 '행동유발형 홍보'를 2015년에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예금자보호제도 핵심내용을 담은 광고물을 제작하여 신문·잡지, 교통매체와 더불어 케이블TV 및 라디오를 통해 집중 홍보하였다. 또한, 금융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홍보와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활발히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예금자보호제도 및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인지도가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 예금자보호제도 인지도 : 2014년 90.1% → 2015년 91.2%, 공사 인지도 : 2014년 87.9% → 2015년 88.0%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공사는 2015년 현재 총 15개국 16개 기관과 상호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예금보험기구와 예금보험 현안에 대한 정보·인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예금보험기구 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흥국의 예금보험

제도 구축 또는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을 2010년 12월부터 적극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5년까지 총 15개 신흥국과 동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정부의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KSP)’에도 적극 참여하여 몽골, 탄자니아의 예금보험제도 도입·개선을 위한 자문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공사는 기존의 예금보험제도 도입·개선을 위한 정책 자문뿐만 아니라 IT시스템 설계 및 운용 등을 위한 기술 자문으로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15년에는 몽골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IT 시스템 구축을 위한 KSP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공사는 적극적인 예보제도 운영경험 공유 및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협력 노력을 인정받아, 2015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4차 IADI 연차총회에서 ‘올해의 예금보험 기구상(핵심준칙 및 해외협력 부문)’을 수상하였다.

앞으로도 공사는 예보제도 운영경험 공유 사업을 통하여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글로벌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공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

2015. 6. 1.



선제적 대응능력을 갖춘

최고의 금융안정 및 예금자보호 서비스기관

사 창립 19주년



국민의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제2장 조직 운영

제1절 조직 구성

제2절 조직 관리

제1절 조직 구성

1. 예금보험위원회 및 이사회

가. 예금보험위원회

예금보험위원회는 위원장인 공사 사장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1인과 기획재정부 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2인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예금보험위원회는 정관의 변경, 공사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공사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 기금 계정 간의 거래, 여유자금의 운용 방법 지정,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목표규모 설정, 예금보험금 및 가지급금의 지급결정, 정리 금융회사와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 지원,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부보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공동검사 참여 요청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표 Ⅱ-1〉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2015년 12월말 현재)

구 성		성 명
당업직 위원	예금보험공사 사장	곽 범 국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 찬 우
	기획재정부 차 관	주 형 환
	한국은행 부총재	장 병 화
위촉직 위원	금융위원회 위 축	장 영 철
	기획재정부장관 추 천	이 철 환
	한국은행 총재 추 천	김 희 경

〈표 Ⅱ-2〉 예금보험위원회의 주요 기능

구 분		주 요 내 용
의결 사항	의 결	- 공사 정관의 변경 - 공사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 - 출연금, 예금보험료 및 연체료의 전부 또는 일부 감액 내지 납부 유예 -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목표 규모 설정 - 예금보험금 지급 여부의 결정 - 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 지원 - 예금보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부보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검사 실시 요청 또는 공동검사 참여 요청 -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계약이전 명령, 파산신청 등 필요 조치 요청
	결 정	- 부실금융회사의 결정 - 부실우려금융회사의 결정 - 기금 계정간의 거래 - 예금보험위원회 의사록의 공개 방법 -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관련 필요 사항 -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관련 필요 사항 - 가지급금의 지급 - 최소비용원칙에 의한 자금 지원 등의 예외 인정
	심 의	- 기금운용계획 - 공사 업무와 관련한 제규정의 제·개정
	지 정	- 여유자금의 운용 - 매입 대상 유가증권의 지정 - 예치 대상 부보금융회사의 지정
보고사항		경영정상화이행약정 분기별 점검실적 보고

〈표 II-3〉 2015년 중 예금보험위원회 의안 목록

일 자	처 리 안 건
1.12	• ○○저축은행 일부 자산·부채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안 •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결정안 • 보험금지급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201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발행안 • 2015년도 예금보험공사 예산안 변경
2.25	• 2015년도 1/4분기 공동검사 참여 요청안 •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201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자산운용지침안 • 2015년도 예금보험기금 자산운용지침안 • 2014회계연도 예금보험기금 회계, 공사 회계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회계의 결산안 • 2014년도 예금보험기금 운용계획 대비 집행실적 보고 • 2014년도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계정간 거래 내역 보고 • 2014년도 공사 운영경비 정산 결과 보고 • ○○보험(주)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보고 • ○○등 3개 저축은행 조사 결과 보고 • 2014년도 3/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 결과 보고
3.25	• 2014년 9월 및 10월말 결산 부보금융회사의 차등보험료율 결정안 • 우리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 및 서울보증보험 경영정상화계획 추가안 •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
4.29	• 2015년 2/4분기 공동검사 참여 요청안 • 2014년도 4/4분기(연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안 • 운영경비배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
5.20	• 2014년 12월말 결산 부보금융회사 등의 차등보험료율 결정안 • 201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운용계획안 • 201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발행계획안 및 동 채권에 대한 국가채무보증 신청안
6.24	• 2015년 3/4분기 공동검사 참여 요청안 • 목표규모 초과 계정에 대한 예금보험료 감면 결정안 •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보고 •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
8.19	• 2015년 3월말 결산 부보금융회사의 차등보험료율 결정안 • ○○보험(주)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보고 • 2015년도 1/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보고 •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일 자	처 리 안 건
9.23	• 2015년 4/4분기 공동검사 참여 요청안 • 2015 회계연도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반기결산 결과 보고
10.21	• 부보금융회사등의 조사 및 공동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 • 2015년도 2/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보고 •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11.25	• 2014사업연도 상호저축은행 차등보험료율 결정안 • 경영정상화이행약정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2. 9	• 2016년도 예금보험기금 운용계획안 •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
12.23	•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201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발행안 • ○○증권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보고 • 2015년도 3/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12.29	• 2016년도 예금보험공사 예산안

나. 이사회

이사회는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이내 및 비상임이사 7인 이내로 구성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장의 임기는 3년이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정관의 변경, 공사 예산의 편성 및 운영계획 수립과 변경, 결산, 경영목표의 수립 및 변경, 주요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임원의 보수,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조직·인사 등 공사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다른 법령·정관 또는 다른 내규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도록 규정한 사항, 그 밖에 이사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표 Ⅱ-4〉 임 원

(2015년 12월말 현재)

직 위	성 명
사 장	곽 범 국
부 사 장	정 욱 호
상 임 이 사	신 승 우
상 임 이 사	김 광 남
상 임 이 사	임 성 열
상 임 이 사	김 준 기
비 상 임 이 사	조 흥 식
비 상 임 이 사	이 술 영
비 상 임 이 사	최 승 호
비 상 임 이 사	양 돈 선
비 상 임 이 사	최 성 수
비 상 임 이 사	이 재 연
비 상 임 이 사	박 철 규
감 사	윤 창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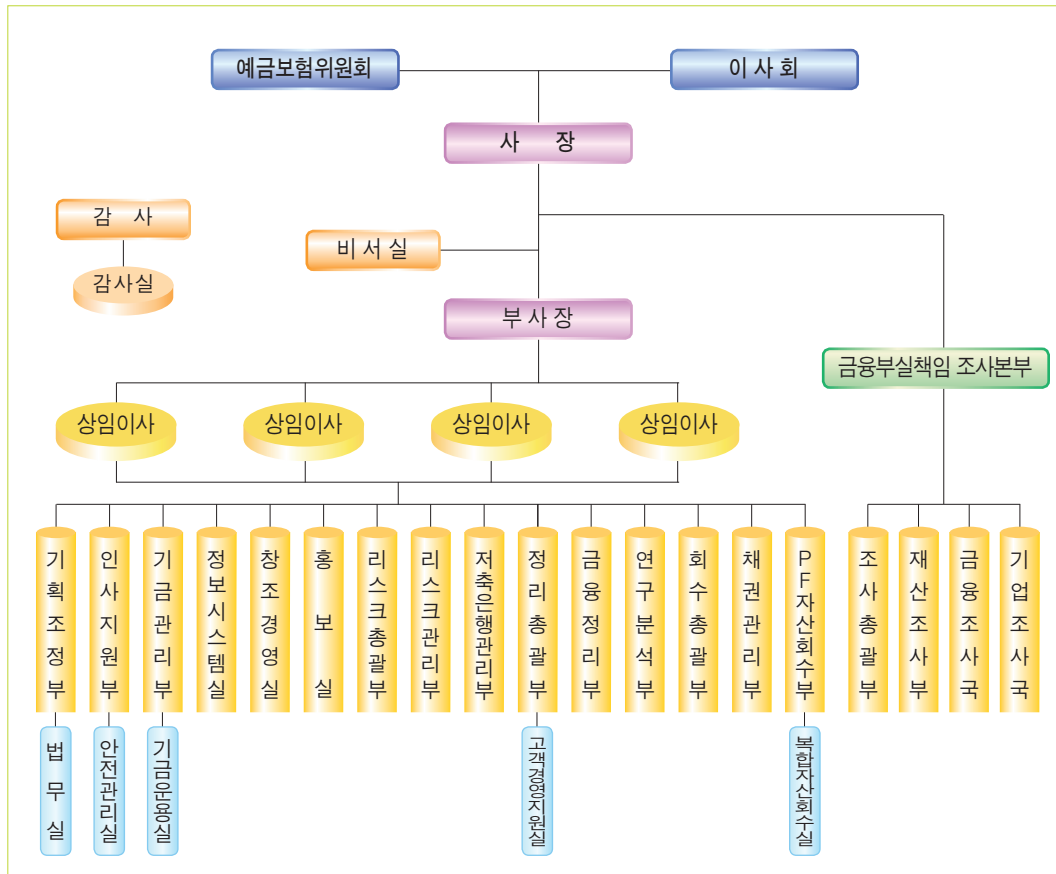


2. 조직 일반

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1996년 6월 1일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 2015년 12월 말 현재 기획조정부, 인사지원부, 리스크총괄부, 리스크관리부, 저축은행관리부, 연구분석부, 기금관리부, 정리총괄부, 금융정리부, 회수총괄부, 채권관리부, PF자산회수부, 정보시스템실, 창조경영실, 비서실, 감사실, 홍보실 및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12부 5실 1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5〉 조직도

(2015년 12월말 현재)



〈표 II-6〉 인원 현황

(2015년 12월말 현재 현황, 단위 : 명)

구 분	임 원	직 원		
		일반직	별정직 ²⁾	합 계
인 원	14 ¹⁾	552	78	644

주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비상임이사 7인 포함

2) 변호사·박사 등 전문직과 경영관리인, 파산관재인 대리인 및 검사인력 등 특정직

제2절 조직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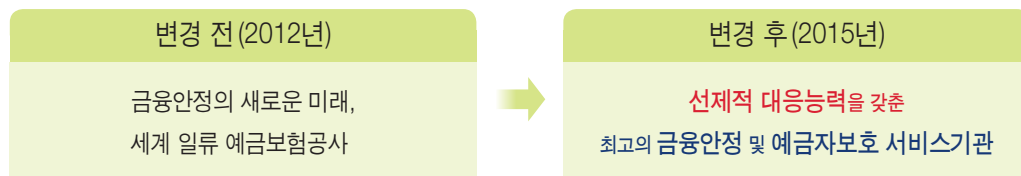
1. 비전, 중장기 경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공사는 2005년 3월 비전을 최초로 수립한 이후 공사를 둘러싼 경영환경 변화, 사장의 경영 철학 및 대내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및 재정비하여 왔다.

공사는 2016년 6월 공사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예금보험제도의 발전 및 공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15년 하반기부터 중장기 비전 등 전략체계를 재정비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새로운 비전은 공사의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선제적 대응능력을 갖춘 최고의 금융안정 및 예금자보호 서비스기관’으로 설정하고 공사는 2015년 9월 15일 이사회 의결 이후 2015년 9월 23일 비전 선포식을 통해 이를 대내외에 공표하였다. 아울러, 새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 등 전략체계를 재수립하고 미래 대비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미래전략 Agenda를 새롭게 설정 하였다.

〈그림 II-1〉 KDIC 비전 재정비 내용



가. 비전체계

(1) 공사 비전 및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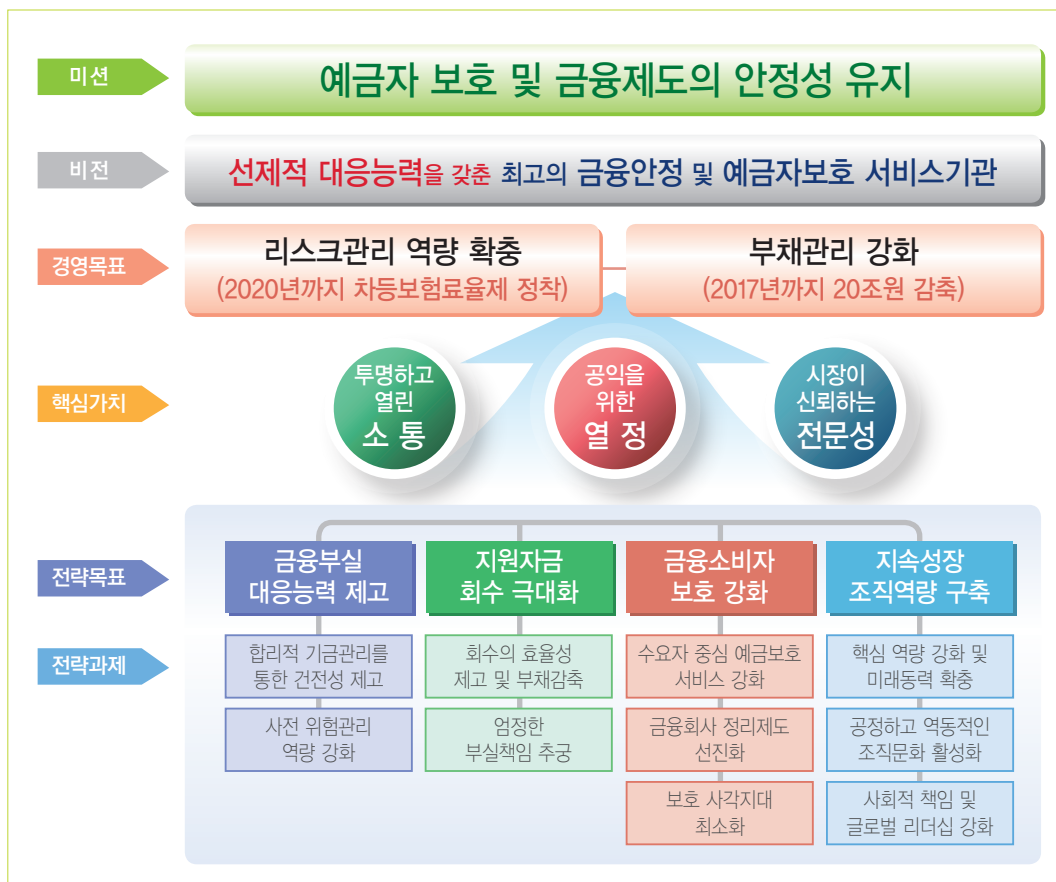
선제적 대응능력을 갖춘 최고의 금융안정 및 예금자보호 서비스기관



20년 예금보험제도 운영 경험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금융시장의 위험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진취적인 기관으로 발전을 도모하여 최고 수준의 금융안정 및 예금자보호 서비스기관으로 발돋움 하겠다는 의지

(2) 비전 및 전략체계도

〈그림 II-2〉 KDIC 비전 및 전략 체계도



나. 전략체계 재정비 및 미래전략 Agenda 수립

공사는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새롭게 설정된 비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4대 전략목표를 ‘금융부실 대응능력 제고’, ‘지원자금 회수 극대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지속성장 조직역량 구축’으로 재설정하고, 동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10대 전략과제와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도 5년간(2016~2020)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재수립하였다.

〈표 Ⅱ-7〉 전략 목표, 전략 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전략과제	세 부 실 행 과 제
금융부실 대응능력 제고	합리적 기금관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관리 - 상환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상환대책 이행 - 기금운용의 수익성 및 안정성 균형관리
	사전 위험관리 역량강화	- 리스크요인의 조기파악 등 상시감시 강화 -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성공적 운영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조사/공동검사의 효율적 수행
지원자금 회수 극대화	회수의 효율성 제고 및 부채감축	- 보유지분 및 자산의 효율적 매각 추진 -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MOU 관리체계 개선 - 파산재단의 효율적 관리 및 회수 강화 - 특별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회수 극대화
	엄 정 한 부실책임 추궁	- 부실책임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 부실관련자의 국내외 재산조사의 효율적 실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수요자 중심 예금보호 서비스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예금보험 정보 제공 - 신속하고 편리한 예금보험금 지급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	- 부실금융회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 - 대형금융회사 등에 대한 정리제도 선진화
	보호 사각지대 최 소 화	- 예금보험 보호대상 범위 적합성 제고 -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지속성장 조직역량 구축	핵심역량 강화 및 미래동력 확충	- 핵심업무 중심의 합리적 조직 및 예산운영 -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 - 미래 과제의 발굴 및 전략적 대응
	공정하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활성화	- 보수·성과평가 제도의 합리성 제고 - 소통을 통한 혁신동력 창출 - 공유와 협업 통한 유능한 공사구현
	사회적 책임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정보보안체계 및 정보시스템 역량 강화 - 신뢰성 제고를 위한 윤리경영 정착 - CS경영체제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국제사회 역할 확대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

아울러, 금융검업화 진전에 따른 신종복합금융상품 다수 출현 등 금융환경 변화로 국민의 니즈를 새롭게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는 미래 대비 신성장 과제로서 미래전략 Agenda를 선제적으로 수립하였다. 이는 전략과제 중 대국민 서비스 확장 및 공사 기능 제고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야 하는 과제 등으로서 주로 CEO 주도의 전사적 추진과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II-3〉 10대 미래전략 Agenda

금융시장 위험관리	① 사전 위험관리 역량 강화 ② 부실이전 단계에서의 시장안정기능 확충
효율적 부실 정리·회수	③ 대형 금융회사(SIFI) 및 업권별 정리제도 개선 ④ 기업가치 제고 방향으로 MOU관리체계 전환 ⑤ 청산회수·조사 업무 역량 강화(시스템 확충 등)
예보제도 선진화	⑥ 시장여건 및 규모에 걸맞는 예보제도 개선 ⑦ 기금건전성 제고 ⑧ 보호사각지대에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
조직역량 강화	⑨ 조직운영 효율화 및 Control Tower 기능 강화 ⑩ 업무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

2. 역동적인 인사, 조직문화 구현

가. 역동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하이-KDIC」 프로그램 실시

공사는 역동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친절한 대국민 서비스(Hi)’와 ‘공사의 위상 및 역량 강화(High)’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하이-KDIC」 프로그램을 2015년에도 시행하였다.

「하이-KDIC」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소통 활성화’와 ‘공감대 형성’ 및 ‘다함께 실천’ 등 3대 실행과제는 공사의 미션 및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추진의 주요한 원동력이 되어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표 II-8〉「하이-KDIC」 주요 프로그램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소통 활성화 (전방위 소통)	문화 데이	• 정부의 “문화융성”, “일·가정양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스마트 보드	• 직급별 대표 7명으로 구성된 스마트 보드를 구성하여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로 적극 활용
	Cross Meeting	•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부서(팀)간 회의 개최
	해피 타임	• 경영진이 전사적 차원에서 직원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서를 방문하여 격려하는 행사
	런 치 콜	• 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는 CEO와의 점심 이벤트 프로그램
	티 앤 툅	• CEO가 정기적으로 대상 팀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는 프로그램
공감대 형성 (행복한 일터)	행복예감활동	•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1부서 1시설 돕기, 무료급식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 실시
	신입직원 멘토링	• 회사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선배직원이 신입직원을 전담하여 일정기간 지도
	사내공모제	• 사내의 필요 인재를 선택하여 우선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인력운용의 효율성 증대
	KDIC-Highway 연수	•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서로 다른 부서, 다른 직급 직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극기훈련 등의 연수 실시
	Follow-up 연수	• 입사 5년차 이상 직원들의 유대감 강화 및 리더십 등 역량강화를 도모
다함께 실천 (핵심가치 공유)	가정의 날	•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고, 정시퇴근을 유도하여 가정친화 및 자기계발 촉진
	협업광장·공유광장	• 지식경영 관련 지식포털시스템 운영
	파고 TV	• 경영이념, 경영전략회의, 홍보/보도자료 등 경영전략 공유를 위한 VOD서비스 제공

나. 사전 리스크관리 기능 강화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직 개편

2015년 12월에 사전 리스크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리스크관리기획실을 리스크총괄부로 격상하고, 효율적 조직운동을 위해 부문별 기획 및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선임 부서제를 도입하였으며,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조정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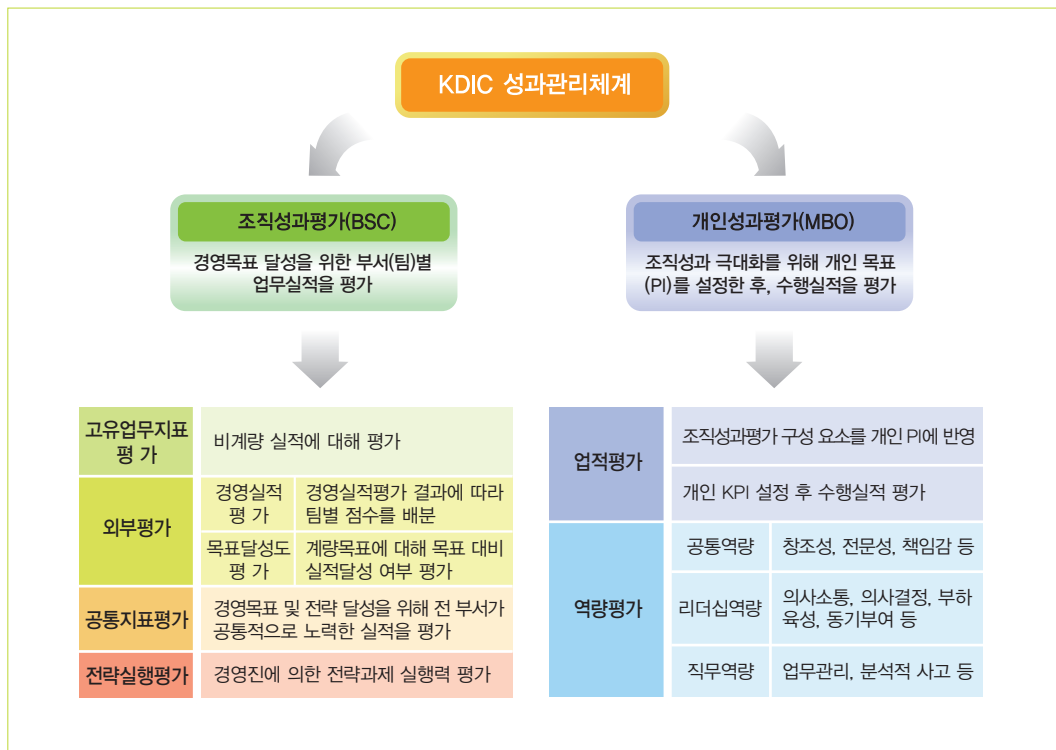
또한, 부서 간 지속적인 업무 조정 및 임시조직 활용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업무 처리의 생산성도 제고하는 등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다.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성과평가제도 운영

공사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5년 말 전략적 성과관리제도(Balanced Score Card ; BSC)를 도입하여 2006년 부서 단위에 대한 평가를 최초로 실시하고, 2007년 팀 단위까지 평가대상을 확대하였다. 2009년부터는 성과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성과평가 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의견 수렴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성과평가제도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15년에는 (i) BSC 평가절차를 단순화하여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ii) BSC 평가 시 외부평가 결과의 배분 기준을 명확화하였으며, (iii) 계량지표의 비중을 강화하여 평가 결과의 객관성 및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전직원 성과연봉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2010년 노사합의로 도입한 개인성과평가제도(MBO)를 2012년 전산화하여 지속적으로 정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한편, 2014년에는 업적평가와 역량평가의 비율 조정, 경력평정 개선 등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였으며, 2015년에는 임금피크제 도입(2016년부터 시행)에 따라 노사공동으로 임금피크제 대상자 등에 대한 평가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림 II-4〉 KDIC 성과관리체계도



라. 세대 간 상생고용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공사는 정부 노동개혁 과제의 선도적 이행을 통한 청년층 고용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4년 12월부터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공사의 인력 및 보수구조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인건비 운영 추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설계하였다.

관련 제도 도입 과정에서 공사는 임직원간 소통을 통한 신뢰구축을 위하여 사장이 전 직원 설명회에 직접 강사로 나서는 등 총 13회에 걸친 직군별 맞춤형 설명회를 실시하는 한편, 다양한 소통의 기회(타운홀 미팅, Tea & Talk, 스마트보드 간담회 등)를 마련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임금피크제 관련 사례 발표 등 〉



아울러 노사공동TF를 구성하여 제도 설계안의 적정성을 노사 공동으로 검증함으로써 노사 간 단일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소통 노력과 조기도입에 대한 노사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사는 2015년 8월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였다.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에 대한 적합 직무개발 및 인력 배치방안, 성과평가 및 교육 방안 등 세부 인사관리 방안도 완비하여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차질 없이 실시하는 한편, 청년고용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공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노력은 공공기관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2015 공공기관 정책 워크숍」,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사례발표를 하였고, 공사 사례가 대한민국 정책포털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정책뉴스로 게재되는 등 임금피크제 도입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3.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 활동

가. 윤리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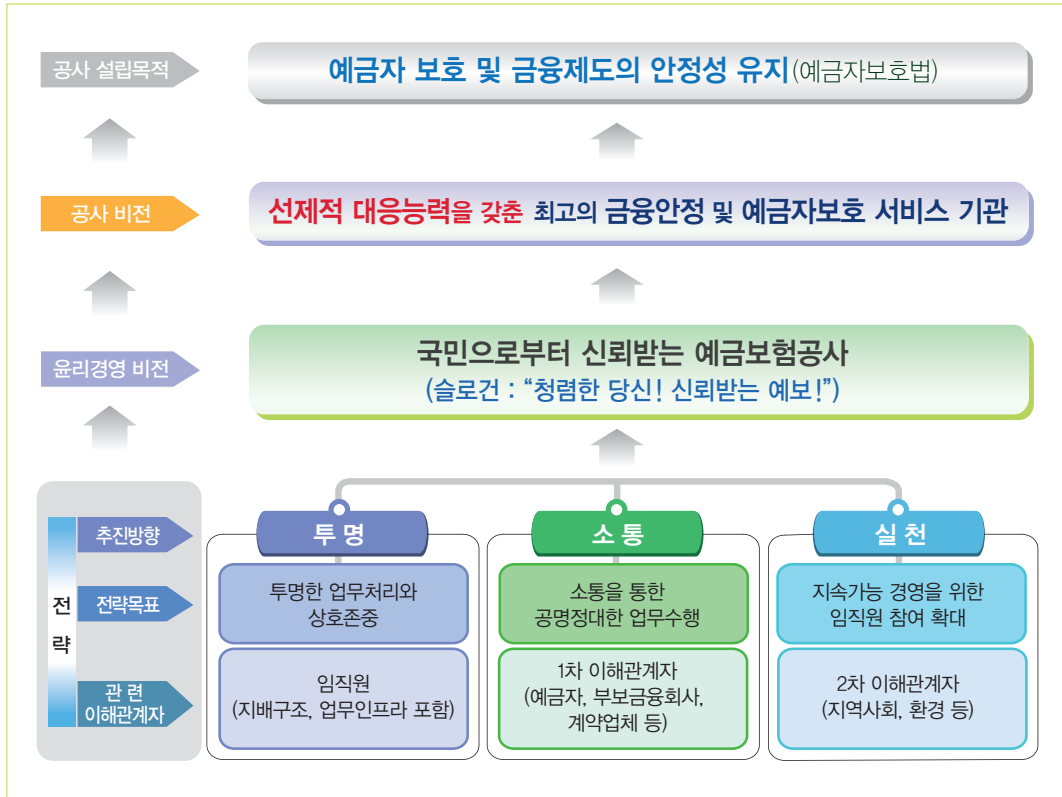
공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경영의 대표 핵심가치를 “투명하고 열린 소통”, “공익을 위한 열정”, “시장이 신뢰하는 전문성”으로 정하고, 윤리적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윤리경영을 도입하여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윤리경영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및 연간 윤리경영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윤리경영과 관련한 경영환경 및 정부 정책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이를 통해 윤리경영 체계의 지속적 개선과 윤리경영 문화의 정착·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매월 청렴DAY 운영, 청렴 Talk 및 청렴·윤리경영 레터를 사내 인트라넷에 정기적으로 게시하는 등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공감대를 제고함과 동시에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윤리적인 갈등 상황에서의 행동요령을 전파하였다. 또한 대내적인 윤리경영 문화의 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형 윤리경영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아이디어를 공모하였으며, 청렴·윤리 실천리더들을 대상으로 정기회의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또한, 고객접점 업무를 담당하는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이 반부패·청렴 과제를 발굴·추진하도록 조치하고 파산관재인을 대상으로 청렴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공사의 윤리경영이 고객접점 조직에까지 전파되도록 하였다. 더불어 대외적으로는 UN 산하 전문기구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 UNGC)에 윤리경영 이행 상황을 보고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지속가능경영 실태 조사(KoBEX SM)에 참여함으로써 윤리경영 실천수준에 대한 대외 공신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에서 2등급을 받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1위로 선정되었으며, KoBEX SM 측정 결과에서도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2014년에 이어 계속 유지하였다.



〈그림 II-5〉 윤리경영 추진 전략 체계도



나. 사회공헌 활동

(1) 사회공헌 활동 브랜드 “행복예감(預感)”의 정착 및 지속적 확대

공사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신뢰에 보답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사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파산재단 관련 사회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공사 고유의 공유가치 창출형 사회공헌활동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성실히 참여한 임직원 및 부서에 대한 포상을 확대 실시하는 등 공사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활동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공사는 사회공헌 활동의 정체성 확립 및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사회공헌 활동 브랜드로 “행복예감(預感)”을 2014년에 처음 도입한 바 있는데, 동 브랜드의 정착 및 지속적 확대를 위하여 공사의 모든 사회공헌 활동을 “행복예감” 브랜드로 일원화하였으며, 다양한 계층 및 지역주민을 위해 해당 브랜드의 취지에 맞는 “이웃 공감”, “지역 공감”, “농촌 공감”, “환경 공감” 등 4개 부문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동시에 공사 임직원이 행복예감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복예감 활동 자발적 완주 프로그램」을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운영하였으며, 공사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수혜 기관별, 시즌별로 다양한 맞춤형 활동을 실시하였다.

(2)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다양한 행복예감 활동

공사는 2015년 중 임직원 기부금, 임직원의 외부강사료 기부 등으로 총 2억 1,784만원의 「행복예감기금」을 조성하여, “이웃 공감”, “지역 공감”, “농촌 공감”, “환경 공감” 등 4개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에 1억 8,177만원을 지출하였다.

“이웃 공감” 부문은 공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인 예보꿈나무 장학사업(기존에는 학업 성적 우수자, 예체능특기자, 효행사례자 등의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하여 서울시 중구 소재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도 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 기부청원제(임직원의 추천으로 주변 불우이웃 지원), 아동양육시설 방문(요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시설인 ‘남산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 사회복지 단체 등에 대한 성금·물품 후원, 사랑의 헌혈(임직원 헌혈) 및 기후난민 지원(희망T 제작)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9〉 2015년 사회공헌 활동 내역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회, 명)

구분	활동명	활동내용	횟수	참여인원	주기
이웃 공감	불우이웃 돕기	도움이 필요한 개인, 시설 지원	18	-	연중
	예보꿈나무 장학 사업	전국 저소득 고등학생에 장학금 지원	1	20	매년
	기부청원제	임직원 추천으로 주변 불우이웃 지원	6	7	수시
	국가유공자 돕기	국가유공자 지원(연탄배달, 떡국지원 등)	5	35	수시
	남산원 봉사활동	아동보육시설 청소 등 환경정리	10	71	매달
	사랑의 헌혈	임직원 헌혈	15	15	수시
	파산재단 관련 지원 사업	파산재단 관련 취약계층 발굴·지원	4	-	수시
	기후난민 지원 사업	지구 온난화 피해자 지원(희망T, 영양식 후원)	3	36	수시
지역 공감	개별/그룹 활동	임직원 개별 봉사활동 지원	9	18	수시
	무료급식 봉사활동	무료 급식소(나눔의 등지) 지원 및 배식봉사	15	119	매달
	1부서 1시설(가정) 돕기	부서별 1개 시설(가정) 돕기 사업 지원	120	437	연중
	사랑의 집고치기	저소득가정 주거환경 개선(해비타트 연계)	3	45	매분기
	전통시장 가는 날	통인시장 활성화(접선 후원, 식사, 장보기)	64	1,049	매주
농촌 공감	1사 1촌 지원	자매결연 마을 일손 돕기 등 (운곡리 사과마을)	1	67	매년
환경 공감	청계천 봉사활동	쓰레기 줍기 등 청계천 주변 정화	2	18	수시
	공원 돌보미	탐골공원 환경정화	9	98	매달
	식목 행사	식수활동을 통한 탄소배출 절감	1	35	매년
	업사이클링 캠페인	폐 이어폰 재활용을 통한 청각장애인 지원	25	113	매분기
합 계			311	2,183	-

“지역 공감” 부문에서는 무료급식(은평구 소재 사회복지단체인 ‘나눔의 등지’ 급식비 지원 및 배식), 1부서 1가정(시설)돕기(각 부서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거나 봉사), 사랑의 집고치기(‘해비타트 서울지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전통시장 가는 날,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연탄 나르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 외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충남 예산군 운곡리 사과마을의 일손을 돕는 1사 1촌 지원사업(“농촌 공감”), 공사 소재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 쉼터인 청계천에 대한 정화,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식목행사 참여, 폐 이어폰 재활용을 통한 업사이클링 캠페인(“환경 공감”)등의 활동도

전개하였다. 특히, 자매결연을 하고 농촌의 일손을 10년 동안 도와온 그동안의 노력을 농림 축산식품부가 인정하여 공사를 농촌사회공헌인증기업으로 선정하였다.

(3)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공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1년 8월 서울 종로구 통인동에 소재한 통인시장과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2012년부터 매주 목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도시락 데이)’로 지정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에 자매결연 전통시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임직원을 위해서 셔틀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상인대학 강의 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병행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에는 기존의 전통시장 활성화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이 있는 2개 지역(대구 및 전주)의 전통시장과의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2014년도에는 이를 확대하여 4개 지역(수도권, 충청, 광주 및 제주)의 전통시장과도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공사는 2015년 한 해 동안 1,049명의 임직원이 64회에 걸쳐 공사 인근의 자매결연 전통시장인 통인시장을 방문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하였다.

4. 중장기 정보화 계획 추진 현황

공사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내외 환경을 종합 분석한 후 정보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말 제4차 「정보화 중장기 전략계획」(2014~2016)을 수립하였으며,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주도하는 창조적 금융IT 리더”를 IT비전으로 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하여 5개 전략목표 및 13개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제4차 「정보화 중장기 전략계획」의 2단계에 해당하는 정보화 전략과제 사업을 추진하였다.

첫째, 공사는 정부의 정보기술아키텍처(EA) 성숙도 모델 개편에 따라 공사 EA관리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행정자치부 주관 EA성숙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정보자원 관리 수준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파산재단 부실책임자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 판결문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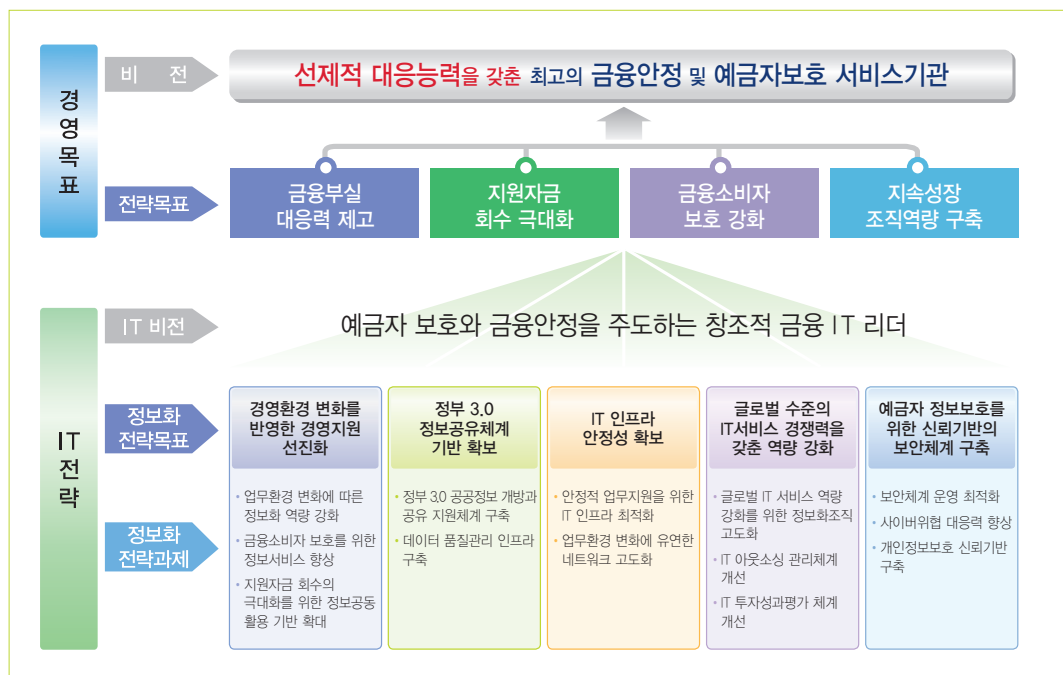
DB를 구축하여 정보 공동 활용 기반을 확대하는 등 정보공유 및 협업을 활성화하였다.

둘째, 공사에서 생산한 결재문서를 원문 그대로 국민에 공개하는 원문정보공개시스템 및 파산재단 보유자산 등의 공매정보를 제공하는 예보공매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한편,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부 3.0 정보공유체계 기반을 확대하였다.

셋째, IT인프라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성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사 주전산기를 공개 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으로 전환하였다. 신규 주전산기는 보다 적은 운영비용으로 기존 대비 2.1배 성능을 향상시킴에 따라 공사 업무시스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 및 부보금융회사에 고품질의 IT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전환은 공공기관 최초 전사적 공개 소프트웨어 환경의 성공적 전환 사례로써 공사의 IT 서비스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예금자 등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일제히 정비하고, 파산재단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지도점검 및 교육 강화, 사이버위협 종합대응 훈련 실시 등 정보보안 침해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사는 2015년에 행정자치부 주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3년 연속으로 획득하는 등 정보보안 최우수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림 II-6〉 정보화 중장기 전략 체계도 (2014~2016)



〈표 II-10〉 제4차 정보화 2단계 (2015년) 세부 이행과제

정보화 전략 목표	2단계 (2015년도) 정보화 세부 이행과제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경영지원 선진화	• 부실조사소송관리시스템 개선	(~12월)
	• e-HR시스템 개선	(~12월)
	• 예금동향시스템 개선	(~10월)
정부 3.0 정보공유체계 기반 확보	•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	(~12월)
	• 예보공매정보시스템 구축	(~12월)
IT 인프라 안정성 확보	• 전사적 공개 소프트웨어 환경 전환	(~11월)
글로벌 수준의 IT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역량 강화	• IT 투자성과 평가체계 개선 - 통합정리정보, 성과관리시스템 개선사항 도출	(~ 8월)
신뢰기반의 보안체계 구축	•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안 침해 예방활동 강화	(연 중)
	•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사후 심사	(~10월)
	• 업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연 중)





선제적 대응능력을 갖춘

최고의 금융안정 및 예금자보호 서비스기관



DIC 체허 체

제3장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제1절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제2절 부실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보호

제1절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1. 예금자보호제도 인지도 제고

가. 주요 홍보 추진 실적

공사는 대국민 여론조사 및 전년도 홍보매체에 대한 효과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와 금융정보 취약계층(20대 및 60대, 시장상인, 주부 등) 대상 종합인지도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고, 2015년 홍보계획을 수립 후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지면광고 및 라디오 광고용 홍보콘텐츠를 신규 제작하였으며, 2014년 집중 추진하였던 “행동 유발형 홍보문구(지금 확인하세요,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등)”를 지속 활용하여 해당 홍보물을 접한 국민들이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중요정보(보호상품, 보호회사, 보호한도)를 직접 확인하도록 유도하였다.

홍보매체는 매체 신뢰도가 높은 신문, 케이블TV, 라디오 광고를 집중 활용하였다. 케이블 TV 및 라디오 광고의 경우 채널별 주요 시청층 및 시청률을 고려한 광고 방영 채널 및 프로그램 선정을 통해 홍보효과를 높이하고자 하였으며, 이외에도 KTX, 버스, 지하철 등 교통매체와 옥외전광판 등의 매체도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간결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고객 맞춤형 메뉴를 확대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보 집중력과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표 Ⅲ-1〉 연도별 예금자보호제도 홍보 이미지

〈표 Ⅲ-2〉 홈페이지 개편 화면 비교

특히, 2015년에는 금융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및 공사인지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미지광고 및 공사 캐릭터 부문에 대한 광고 공모전 주최를 통해 공사 홍보에 대한 대학생들의 참신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하는 공사의 역할을 널리 알리고자 전국의 대학생 및 주부를 대상으로 SNS 기자단을 확대 선발하여 운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SNS를 이용하는 국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SNS(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를 적극 활용하였다.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시장상인연합회를 통해 LED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및 탈북 새터민에 대해서는 각각 전국 217개 다문화센터와 31개 새터민 지원 ‘하나센터’에 예금자보호제도 및 생활금융 교육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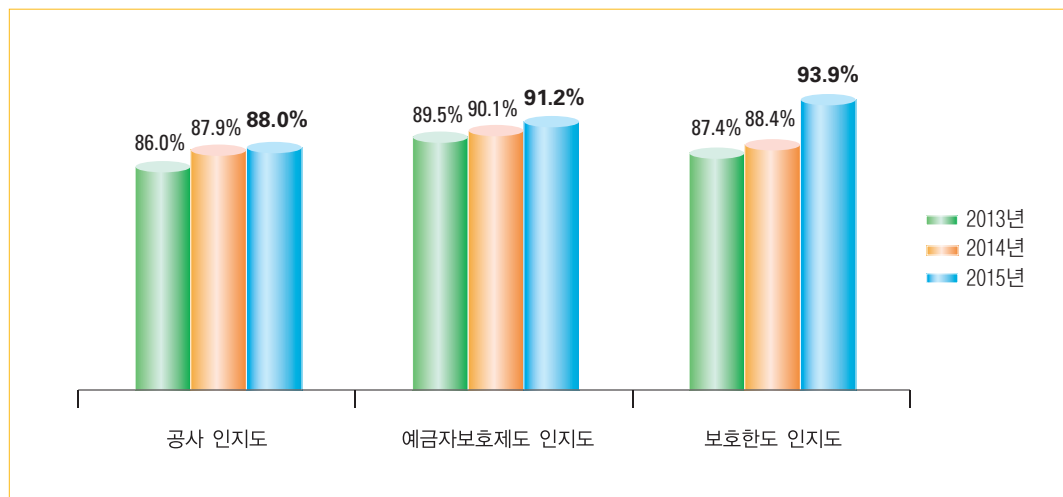
더불어, 참석자의 70% 이상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인 재테크 관련 박람회에 참가하여 후 순위채권 등 비보호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안내하고, 재테크에 도움이 될 파산재단 매물정보를 소개하였다.

나. 예금자보호제도 인지도 조사 결과

공사는 매년 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여론조사를 외부 전문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다. 공사의 체계적인 홍보활동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 경제교육의 확대와 지속적인 공사 관련 언론보도 등으로 공사 및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5년도 ‘공사 인지도’는 88.0%로 전년대비 0.1%p 증가하였고, ‘예금자보호제도 인지도’는 91.2%로 전년대비 1.1%p, ‘예금보호한도에 대한 인지도’가 93.9%로 전년대비 5.5%p 증가하였다.

〈표 Ⅲ-3〉 연도별 예금자보호제도 인지도 추이



2. 표시제도 이행여부 점검 및 안내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 등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보호여부 및 보호한도 등 예금보험관계의 성립여부와 그 내용을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공사는 예금보험관계 표시 이행여부에 대해 부보금융회사를 조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는 부보금융회사로 하여금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건전한 상식을 바탕으로 보호대상 금융상품과 보호대상이

아닌 금융상품을 본인의 책임 하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정보 부족으로 인한 금융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다.

공사는 예금보험관계 표시 이행여부 점검 방법을 다변화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2015년 중에는 온라인 점검을 보험업권 및 금융투자업권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금융 회사 본점(홍보물 담당부서)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금융상품 비대면 판매채널(홈쇼핑, 온라인 판매 등)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를 통해 예금보험관계 표시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하였다.

〈표 Ⅲ-4〉 예금보험관계 표시 이행여부 점검 실적

(단위 : 개)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현장 점검	472	639	617	683	649
1인당 점검 영업점 수	120.3	159.8	205.7	237.2	268.2
온라인 점검	-	-	-	1,683	598
소 계	472	639	617	2,366	1,247

한편 공사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리플렛·포스터·ATM부착용 스티커 등의 안내 자료를 부보금융회사에 배포·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정보 취약계층인 외국인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10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태국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번역한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3. 생활금융교육 실시

가. 금융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교육 확대

공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대두되어, 미래금융소비자(초·중·고등학생) 및 금융정보 취약계층(노년층·시장상인·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 초등학생과 노년층, 2011년 시장상인,

2013년 다문화가족, 2014년 중·고등학생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하였고, 2015년에는 제대 예정 군인과 탈북 새터민 및 국가유공자를 신규로 발굴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교육수요가 많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11명의 '지역강사'를 활용한 지역 밀착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 지방 생활금융교육 비율이 58.5%로 전년대비 9.8%p 향상되었다.

미래금융소비자의 경우 2015년 2월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과 MOU를 체결하고 한국 과학창의재단의 협조를 받아 교육대상을 모집하였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생활금융 교육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교육신청을 받고, 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생활금융교육 강사가 직접 각 학교를 방문하여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였다. 2015년에는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0회에 걸쳐 15,756명,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88회에 걸쳐 26,618명에 대하여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였다.

노년층의 경우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비정기적인 예금보험제도 안내 교육을 진행하여 왔으나, 2012년 9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MOU를 체결한 후 2015년에는 83회에 걸쳐 8,299명에 대하여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여건이 열악한 노인복지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기자재를 지원하였다. 또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주최하는 제23회 추계 전국노인복지관대회에 참여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안내하고 공사의 생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였다.

시장 상인의 경우 2011년 1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舊, 시장경영진흥원)과 MOU를 체결하고 2012년부터 상인대학 정규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2015년에는 92회에 걸쳐 3,907명에 대하여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여건이 열악한 전통시장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기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최하는 각종 박람회(전국우수시장박람회, 상인대학 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안내하고 공사의 생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였다.

2013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생활금융교육은 2015년에는 23회에 걸쳐 542명에 대하여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생활금융교육 및 전통시장 체험행사를 진행하였다.

공사는 금융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5년 신규로 발굴한 제대 예정 군인과 탈북 새터민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9회에 걸쳐 259명에 대하여 생활금융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사가 2015년 한 해 동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장 상인, 노년층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603회의 생활금융교육을 진행하였으며 55,767명이 교육을 받았다.

나. 생활금융교육 강사 역량 강화

생활금융교육 강사는 ‘사내강사’, ‘전문강사’, ‘지역강사’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현업 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119명의 ‘사내강사’는 초등학교 학생 중심의 생활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사내강사 연수 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강의 품질을 제고하였다.

외부 전문교육기관에서 전문강사 연수 과정을 이수한 「KDIC 생활금융교육센터」 내 5명의 ‘전문강사’는 중·고등학교 학생, 시장 상인,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생활금융교육을 진행하였다.

주요 거점지역으로 위촉된 ‘지역강사’는 실습중심의 집합교육과 생활금융교육 현장 참관 및 평가를 실시하여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다. 생활금융교육 맞춤형 교재 및 체험형 교구 개발

공사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상·하반기 맞춤형 교재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10종의 기존 교재 중 2014년에 개발한 3종(중학생용, 고등학생용, 청소년 진로교육용)의 교재에 대해서는 2015년에 외부전문기관의 감수를 받았다. 또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체험형 교구를 개발하였다.



제2절 부실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보호

1. 경영관리 중 여신 고객 등에 대한 불편 해소

2011년부터 이루어진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인해 예금자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여신 고객들도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다. 대출 상황과 관련된 혼란, 대출 만기 연장 중단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 등과 같은 민원이 공사에 접수되었다. 이에 공사는 고객의 범위를 예금자뿐만 아니라 여신거래자까지 확대하여 고객중심의 예금자보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표 Ⅲ-5〉 여신고객 불편 해소 방안

사 업 명	주 요 내 용	기 대 효 과
대출채무자 안내 강화	채무자별 대출 잔액증명서 발송 및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출상환 등 안내	연체 등을 방지하여 채무자 피해 예방
저금리 대출 안내	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 안내	금리 부담 완화
대출 만기 연장 가이드라인 제공	만기도래 대출의 연장 대상, 조건 등을 제시	채무자의 상환능력 제고

공사는 대출채무자별로 대출 잔액증명서를 발송하고 경영관리 착수 시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출상환 방법을 공지하는 등 채무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였으며, 고금리 대출자에게

는 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을 안내하였다. 또한 채무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대출 연장 기간 등을 조정하도록 ‘대출 만기 연장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그 밖에 원격지 고령채무자를 위해 대출연장신청서류를 출장 접수하고, 담보부동산의 경매 대신 정상매매를 유도하는 등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 예금보험금 등의 안정적 지급 및 서비스 강화

공사는 2015년 예금보험금 지급 대상 31개 저축은행의 예금자가 미수령한 예금보험금을 최대한 지급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예금보험금 지급대상자가 예금보험금을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우편 및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지급대상자에게 예금보험금 수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였다. 또한 추후 발생할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예금보험금 지급 제도를 개선하였다.

첫째, 예금보험금 미수령 대상이 개인인 경우 행정자치부 협조를 통해 확인한 최근 주소지로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특히, 예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서울 중구청 협조를 통해 발급 받은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행정자치부 협조를 통해 최신 주소지로 보정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미수령예금보험금 안내 대상을 법인 예금으로까지 확대하여 법원 등기소를 통해 확인한 법인등기부등본의 최근 주소지로 우편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둘째, 주소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위와 같은 우편 안내를 받지 못하는 예금자들에 대해서는 2015년 하반기부터 통신 3사(SKT, KT, LG U+)의 협조를 받아 미수령 예금보험금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을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사는 적극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3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유권해석을 획득하고, 통신 3사를 설득하여 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 당시 예금자의 휴대전화번호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제공받아, 그 중 226명에게 미수령 예금보험금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다.

우편 및 문자 안내를 받은 예금자 및 그 상속인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금보험금을 조회 및 수령 신청하거나, 지급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예금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공사는 현재 예금보험금 수령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가까운 지급대행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점 위치를 포탈(네이버, 다음) 지도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예금보험금 수령 대상자가 사망자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과 협조하여 상속인이 금융감독원에 사망자의 금융 정보 조회를 요청할 때 미수령 예금보험금도 동시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사의 적극적인 안내 및 조회·지급 서비스 제공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5,893명의 예금자에게 19억원의 예금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셋째, 공사는 추후 발생할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저축은행중앙회의 전산을 사용하지 않는 12개 상호저축은행과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예금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예금보험금 전산 자료 표준화 등을 위한 전산업무 협약(MOU)을 2015년 12월에 체결하여 예금보험금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공사는 적극적인 예금보험금 안내와 지급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예금자 보호를 한 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3. 금융거래 중단기간 최소화

공사는 2012년 하반기부터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을 도입하여 부실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시키지 않고 부실금융회사 결정 등 정리절차를 진행하여 금융거래 중단 없이 제3자 또는 공사 보유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예금자 등 해당저축은행 거래자들의 불편과 금융시장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는 가교저축은행을 활용하여 금요일 영업종료 후 영업정지와 함께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고, 익영업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한편, 2013년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인 잠재인수자 물색 등의 노력을 통해 가교저축은행을 활용한 기존의 정리방식이 아니라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을 통해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함으로써 예금자 불편뿐만 아니라 가교저축은행을 관리·매각하여야 하는 공사의 부담을 줄이고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기에 종결하는 정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2015년에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으로 차질 없이 정리하였다.

〈표 Ⅲ-6〉 2015년 부실저축은행 정리방식 현황

부 저 축 은 행	정리방식	영업정지일 (=계약이전일)	영업재개일	영업정지기간
골든브릿지	제3자 계약이전	2015. 1.16	2015. 1.19	0일(영업일 기준)

4. 파산배당금 등 지급 노력

부보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파산재단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며 잔류 자산을 현금화하여 배당재원을 마련한 후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등 파산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액 비율대로 파산배당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파산절차 장기화로 파산배당금 지급에 상당시일이 소요되어 경제적 불편을 겪게 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등 파산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산배당금을 미리 당겨서 지급하는 「개산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 2에 의거 5,000만원을 초과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급하게 되며 공사가 예금 등의 채권을 매입하고, 향후 예상되는 파산배당률을 고려하여 초과 금액의 일부를 예금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개산지급금 지급 이후 미리 지급한 개산지급금을 초과하여 파산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정산금을 지급하게 된다. 공사는 2015년 말까지 25개 저축은행의 5만 3천여명의 예금자들에게 537억원의 개산지급 정산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개산지급금 및 동 정산금 지급을 통해 조기에 파산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초과 예금자의 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개산지급금 및 개산지급 정산금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예금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예금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보험금 및 파산배당금, 개산지급 정산금 등 미수령금의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사는 미수령금 관련 신문광고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 미수령금 지급 대상자의 최근 주소를 파악하여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미수령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선제적 대응능력을 갖춘

최고의 금융안정 및 예금자보호 서비스기관



제4장

예금보험제도 선진화

제1절 예금보험제도 개선

제2절 예금보험제도 관련 조사연구

제3절 국제교류 및 협력

제1절 예금보험제도 개선

1. 예금보험제도 관련 법령의 정비

2015년 12월 22일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공포·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2010년 11월 17일 18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제출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후 19대 국회가 개원되자, 2012년 10월 9일 정부 제출안으로 재상정되어 2015년 7월 정무위원회와 2015년 11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2015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증권금융회사 예수금과 변액보험 최저보장 보험금이(2016. 6. 23.시행)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신규 편입되었다. 증권금융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 제1항에 따라 자금의 위탁을 받을 수 있고 동 자금의 성격이 예금과 유사하여 부보 금융회사로 편입하고 해당 예수금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적용하게 되었으며, 변액보험 최저 보장 보험금은 투자 실적과 관계없이 확정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보험 계약과 유사하므로 예금자 보호를 적용받게 되었다.(제2조 제2항 나목, 다목)

공사의 과세정보 요구권을 명확히 하였다.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조사를 위하여 자료제공 요구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관서의 장 등을 추가하고 요구 자료가 과세정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제21조의3 제2항, 제3항) 또한, 예금보험관계의 설명을 의무화하였다. 부보금융회사가 일반 예금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예금자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를 설명하고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을 통해 이를 증빙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는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 손실 및 동양증권의 CP·회사채 등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 보호여부 및 보호한도 등에 대한 설명이 미비하였다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제29조 제3항, 제4항)

이 밖에 ‘부실금융기관’이라는 명칭을 ‘부실금융회사’로 통일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예금보험료에 대한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신설하였다. 기존에는 상법상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예금보험료 청구권의 경우 2년, 예금보험료 환급 청구권의 경우 3년을 적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청구권 및 환급청구권 모두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였다.(제30조 제6항, 제7항) 또한, 개산지급금 과다 지급시 환수권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존에는 개산지급금 초과지급(파산배당 < 개산지급금)시 이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반환확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후정산 및 환수 조항을 신설하여 예금자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해소하였다.(제35조, 제35조의2) 마지막으로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시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의 사실 은폐, 거짓 진술 등 방해 사례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부실책임 조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제44조)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설명을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며, 아울러 부실관련자 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하고 과세정보의 적기 확보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변액보험 최저보장 보험금 보호,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 예금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이해관계인 조사불응시 처벌에 관한 규정은 「예금자보호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내 시행령 개정을 거쳐 효력을 발휘한다.

한편, 2015년 2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 기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 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IRP) 적립금 중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은행 예금, 금리연동형·이율보증형 보험상품 등)으로 운용되는 금전에 대하여 별도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예금자가 보호대상 적립금 등이 예치된 부보금융회사에 다른 보호대상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대상 적립금 등과 기타 보호대상 예금을 합산하여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 부보금융 회사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 퇴직연금(DC, IRP) 각각에 대하여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함으로써 퇴직연금(DC, IRP)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제3조 제1항 제3호)

제2절 예금보험제도 관련 조사연구

1. 예금보험제도 조사연구

공사는 예금보험제도와 금융·경제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예금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이바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 등은 금융시스템 상의 취약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 ; IADI)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을 반영하여 예금보험핵심준칙 및 가이드 라인을 개정하였으며, 각국 예금보험기구들도 예금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예금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EU는 은행부실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 전반에 위기로 악화 되지 않도록 EU 차원의 통일된 은행감독 등을 위한 은행연합(Banking Union)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이러한 국제기구 및 주요국 등의 제도 개선 동향을 분석하고, 금융·경제 현안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통해 국내 예금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제도의 국내 도입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표 IV-1〉 2015년 주요 조사연구 보고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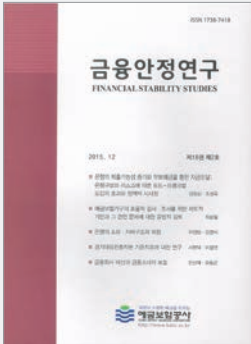
주 제	제 목
글로벌 예금보험제도 운영지침과 운영현황	• 사전적 자금조성에 관한 IADI 지침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차등보험료율제 도입에 관한 IADI 지침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부실 조기인식 및 적기개입에 관한 IADI 지침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부실관련자 및 예금보험사기 처리에 관한 IADI 지침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대국민 인지도 제고에 관한 IADI 지침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도덕적 해이 완화에 관한 IADI 지침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복수 예금보험기구에 관한 IADI 지침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금융환경 변화 등 금융·경제 현안에 대한 연구	• 유럽의 은행연합(Banking Union) 추진 현황과 예보제도 시사점 • 주요국의 부실금융회사 자금지원 체계 •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와 예금보험제도의 역할 • 유럽의 예금자·투자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



2. 연구 결과물 공유 노력

공사는 예금보험제도와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을 주제로 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그 결과물을 “금융안정연구(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와 “외부연구지원 공모논문집”에 수록·발간하여 정책당국, 유관기관, 학계, 언론 등에 배포하였다. 공사는 이와 같은 발간 사업 및 제공을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IV-2〉 2015년 주요 발간물

제 목	개 재 논 문
금융안정연구 (제16권 1, 2호) 	• 은행의 퇴출가능성 증가와 부보예금을 통한 자금조달 • 예금보험기구의 효율적 검사·조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그 관련 문제에 대한 공법적 검토 • 은행의 소유·지배구조와 위험 • 경기대응원충자본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 • 금융회사 파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 보증보험의 위험구조와 시스템 리스크 • 전세제도 하에서 은행대출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단기 금융·주식·외환시장 간의 연계성 분석 • 한국의 금융제약 하에서의 기업투자에 관한 자산유형성의 역할 • 한국주식 고유변동성의 추세와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
외부연구지원 공모 논문집 	• 국가별 차이를 감안한 효율적 예금보험제도 운영 및 예금보호기간간 공조체계 논의 • 예금보험공사의 파산관재업무에 대한 법적 쟁점과 성과분석 • 예금보험기금 건전화에 위한 대응 과제 - 회생 및 정리계획 도입 등 정리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금융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 협동조합형 은행이 리스크, 금융산업의 안정성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제3절 국제교류 및 협력

1. IADI 등 국제기구 내 주도적인 활동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제고

가. 예금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한 대내외 활동 강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에서 금융안전망의 중심축으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역할이 크게 강조됨에 따라, 각국 예금보험기구의 국제협의체인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IADI가 제정한 “예금보험핵심준칙 및 평가기준(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s and Methodology)”은 2011년 2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 FSB)에 의해 주요 글로벌 금융규범(12 Key Standards for Sound Financial Systems)의 하나로 채택됨에 따라 IADI는 국제기준 제정기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2013년 2월 IADI는 FSB의 요청에 따라 ‘예금보험핵심준칙’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공사는 주요국 예금보험기구를 중심으로 구성된 「개정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 소속되어 개정 작업에 참여하여 2014년 11월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공사는 IADI 평가단을 초청하여 공사의 예금보험제도가 개정 ‘예금보험핵심준칙’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2015년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평가받았다.

IADI 창립회원이자 집행위원인 공사는 IADI의 주요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사는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권역의 부실금융회사를 다수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해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인정받은 공사는 IADI 산하 「통합예금보험제도연구 소위원회(Subcommittee on Integrated Protection Scheme)」의 의장직을 맡아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에 그 연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였다.

또한 IADI가 계약이전(Purchase and Assumption ; P&A) 방식을 이용한 정리 경험이 많은 공사에게 「계약이전방식 연구 소위원회(Subcommittee on P&A)」의 의장직 수행을 요청함에 따라, 공사는 동 소위원회의 발족을 주도하여 의장기구로서 활동하고 있다.

나. 2015년 ‘올해의 예금보험기구상’ 핵심준칙 및 해외협력 부문 수상

특히 2015년에는 그간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결실을 맺어, 공사는 2015년 10월 2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4차 IADI 연차총회에서 ‘올해의 예금보험기구상’ 핵심준칙 및 해외협력 부문을 수상하였다. ‘올해의 예금보험기구상’은 IADI가 매년 자국내 금융안정 및 예금보험 분야 국제협력에 현저히 기여한 회원 기구를 대상으로 ‘핵심준칙 및 해외협력’, ‘정리 및 보험금 지급’, ‘예금보험제도 개선’ 등 3개 부문에 대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 2015년 올해의 예금보험기구상 수상 장면 〉



공사는 2012년 ‘올해의 예금보험기구상’을 수상한데 이어 최근 3년간 제도개선 및 몽골, 필리핀 등 15개국과의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공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5년 ‘올해의 예금보험기구상’(핵심준칙 및 해외협력 부문)을 수상하게 되었다.

2.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교류 확대

가. MOU 체결과 인력 교류를 통한 정보 및 인적 교류 확대

공사는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상호협력 증진과 예금보험제도 현안에 대한 정보 및 인력 교류를 목적으로 해외 예금보험기구 및 중앙은행 등과 MOU를 체결하여 왔다. MOU는 양 기관간 정기회의, 정책 자문 및 정보 제공, 인력 교류 등 다양한 협력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 일조하였다. 공사는 앞으로도 예금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해외 예금보험기구와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공사는 2015년에 3개국 예금보험기구와 기존의 MOU를 갱신하였다. 2009년 러시아 예금보험원 및 터키 예금보험기금과 최초로 체결한 MOU는 2012년에 이어 2015년에 갱신하였으며(러시아 : 3월 24일, 터키 : 11월 17일), 2012년 우크라이나 예금보험기금과 최초로 체결한 MOU는 2015년 11월 11일에 갱신하였다.

〈 터키 예금보험기금과의 MOU 서명식 〉



아울러, 공사는 MOU 인력교류 조항을 근거로 2015년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공사의 예금보험금 지급, 가교저축은행을 활용한 부실금융회사 정리, 대국민 홍보활동, IT 시스템 운영경험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또한 세계은행 지원으로 IT 시스템을 구축 중인 베트남 예금보험기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부보금융회사로부터의 데이터 입수, 리스크 IT 시스템 등 공사의 예금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전수하였다.

공사는 몽골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에 따라 예금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직원을 2014년 8월부터 1년간 파견하였으며, 2015년 8월에도 몽골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발전을 위해 정책자문을 할 수 있는 직원을 선발하여 파견하였다. 또한 2015년 8월에는 MOU에 따라 공사 직원을 영국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에 3개월간 파견하여 영국의 예금보험 및 정리 제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사와 MOU 체결기구들은 그간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지속적인 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 추진 강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국의 예금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려는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공사는 2010년 12월, 공사 내부에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KDIC-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 KDIC-KSP)’ 추진단을 구성하고, 예금보험제도를 새로이 구축하거나 개선하려는 해외 국가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 정책자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왔다.

2015년에도 공사는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국가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예금보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영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과 연수를 실시하였다.

3월에는 예금보험제도를 선진화하려는 라오스 예금자보호기금의 요청에 따라 라오스 예금자보호기금 및 중앙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현지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예금보험제도 운영 경험 등에 대한 소개 중심에서 벗어나 사례 연구(Case Study) 등 실무 위주의 연수로 질적인 변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일본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에 따라 DICJ 주최 제8차 라운드테이블

(Roundtable)에서 공사 부실책임조사 및 재산조사 성과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해외 참가자들은 공사의 부실책임추궁체계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4월에는 정부의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요청에 따라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공사의 부실금융회사 정리 및 회수 경험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또한, 공사를 방문한 주일 프랑스대사관 재정경제참사관 등을 대상으로 정부기관 및 금융안전망 기구와의 협력체계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6월에는 필리핀 예금보험공사가 주최한 목표기금제 국제워크숍에 참석하여 공사의 목표기금제 도입 경과와 설정 방법 및 운영 현황 등을 소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국제적 관점을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10월에는 태국 예금보험원 임직원들에게 예금보험금 지급,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공사의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몽골 예금보험공사 대상 KDIC-KSP 컨설팅 최종보고회 〉



2014년까지 공사는 정부(기획재정부)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입찰에 참가하여 정부 주도의 KSP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5년에는 정부 KSP 컨설팅 사업과 별도로 몽골 예금보험공사 대상 「예금보험금 지급 절차 및 IT 시스템 구축 지원」을 주제로 최초의 자체 KDIC-KSP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였다. 기존의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공유 이외에 IT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국내 IT 업체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하였다.

〈표 IV-3〉 2015년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교류 실적

국 가	대상기관	일 자	주 요 내 용
라 오 스	예금자보호기금, 중앙은행	3월	• 라오스 예금자보호기금 및 중앙은행 대상 예금보험제도 연수 실시
일 본 등	IADI 회원기구 및 유관기관	3월	• 제8차 DICJ 주최 Roundtable 참석·발표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부실채권 정리기금	4월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및 부실채권 정리기금 정책 실무자 공사 내방
프 랑 스	주일프랑스대사관	4월	• 주일프랑스대사관 재정경제참사관 공사 내방
필리핀 등	IADI 회원기구	6월	• 목표기금제 국제워크숍 참석·발표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공사	7월	•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공사 직원 대상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공유 워크숍」 개최
태 국	예금보험원	10월	• 태국 예금보험원 임직원 역량강화 연수 실시
베 트 남	예금보험기구	10월	• 베트남 예금보험기구 임직원 대상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공유 워크숍」 개최
몽 골	예금보험공사	8월~12월	• KDIC-KSP 컨설팅 「예금보험금 지급 절차 마련 및 IT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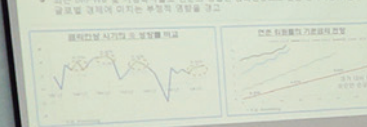
'15년도 제1차 업권별 경영위험 분석 및 전망 팀장 발표회

2015.10.26(월)

I 82 금융경제 이슈 및 위험요인

가 미 국 : 원안하고 철저적인 금리인상 현행

- [금리인상 속도 및 수준] 낮은 물가상승률 및 경기회복 속도, 인플레이션 경기 재등화 우려 등 감안시 금리인상의 속도 및 폭은 제한적일 것임
- 연준위원들의 기존공리 현행제 유지로 median도 향후 금리인상의 한계라고 일관적 으로 드러나짐 (가우치오, 카터, 노먼, 로버트슨, 버크, 윌킨슨, 블로움버그)
- 중국발 글로벌 경기둔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글로벌 거물가 하락 등이 연준의 빠른 금리인상을 제책하는 요인으로 작용
- 최근 10년 10%의 저명확률로 연준의 성공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하강 위험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고



선제적 대응능력을 갖춘

최고의 금융안정 및 예금자보호 서비스기관



제5장 리스크 관리

제1절 조사 및 공동검사

제2절 차등보험료율제의 성공적 시행

제3절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 관리

제1절 조사 및 공동검사

1. 리스크 감시 기반 및 역량 강화

가. 리스크 감시 기반 강화

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기금에 미치는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하기 위하여 리스크 감시모형을 통해 부보금융회사의 현재 재무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미래 변동상황 등을 예측하고 있다. 동 모형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금융권역별 감시단계 분류기준에 따라 개별 부보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시 수준을 차등화 함으로써 상시감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공사는 예금보험기구로서 위기상황에 취약한 부보금융회사 선별, 예금보험기금 소요액 추정 등 금융위기 상황에 효과적인 사전 대응을 하기 위하여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위기상황」 시 부보금융회사의 재무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개발을 추진하였다. 공사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개발을 통해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 변화에 따른 보험사고 위험 증가 여부의 주기적 모니터링,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한 부보금융회사 선별, 위기 상황시 소요 되는 예금보험기금 규모를 측정하여 예금보험기금 조달 계획 등 사전적 위기대응 계획 수립, 차등보험료율제도와의 연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는 2009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처음 체결 후 2012년 개정된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입수한 부보금융회사 재무정보를 통해 금융 시장과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나. 리스크 감시 역량 강화

공사는 리스크 감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리스크 감시모형 등을 활용한 분석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직원들의 거시경제 환경 분석 및 리스크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신용평가기관 등의 국내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보금융회사 경영정보시스템(FIAS), 조사·공동검사 관리시스템(EIMS) 및 리스크 감시모형에 대한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2015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공사 내부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매주 수요일을 「비재무정보 집중 수집일」로 지정하여 비재무정보에 대한 수집을 강화하였으며, 각 금융권역에 특화된 외부 금융정보 활용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2014년 저축은행업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공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평가를 2015년에는 전문 분야별·업권별 경력과 지식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6인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전체 부보금융 업권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제도/기반, 상시감시, 현장 점검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해 평가를 받았으며, 공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 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의견을 바탕으로 공사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 조사 및 공동검사 등 현장 확인 실시

가. 리스크 현장 확인 실시

공사는 리스크 감시모형 등을 통해서 인지된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 감축을 위하여 「예금자 보호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동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단독 조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진 등과의 면담 등 리스크 현장 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관리자로서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단독조사의 목적을 ‘기금 손실 최소화를 위한 사전 부실예방’으로 설정하였다. 공동검사·단독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제표 시계열 분석 등 사전에 심층 리스크 요인 분석을 통하여 중점 착안사항을 선정하였다. 또한, 보험사고 및 예금보험기금손실 예방 등을 위한 공사의 업무목적에 따라 공동검사·단독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 방향과 검사 방식을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 진단 및 개선 중심으로 개편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다.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현장 확인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하였다

2015년에는 보험, 증권사 및 저축은행 등 총 9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과 공동검사와 관련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검사 워크숍도 실시하였다.

한편, 저축은행업권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별하고 적기에 단독조사를 8회 실시하였다. 단독조사 대상 선정 시에는 피검기관의 이중 수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공사의 단독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부실우려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저축은행 중 공동검사 실시 대상, 매각 등 정리절차 추진 대상 및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저축은행을 제외 후 단독조사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금융감독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사계획을 최적화한 후 단독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 등 자율적인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자율시정을 유도하여, 저축은행 업권에 자율적 경영개선 풍토가 정착되도록 유도하였으며, 대주주 불법 행위, BIS비율 급락 등 중대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정조치 요청권한을 활용하여 공사의 시정조치 요청사항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확인 검사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보금융회사의 추가적인 수검부담을 완화시켰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제재절차 등에 따라 처리절차가 장기화되는 문제점도 개선하였다.



〈표 V-1〉 조사·공동검사 관행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주요 내용

	종 전	개선 방안
조사 및 공동검사 틀의 변환	- 경영상항 전반 포괄적 점검 - 외부 위험요인 분석 및 현장 확인 연계 미흡 - 금융감독원 앞 시정조치 요청을 통한 개선 유도	① 사전 부실예방에 중점을 둔 점검 ② 위험요인 사전 분석 강화 ③ 부보금융회사의 자발적 개선 유도
부보금융회사 부담완화	- 현장 확인 전 수검자료 일괄 요구 - 자산규모 등 외형에 따른 점검기간 설정 - 관행적 확인서·문답서 징구 (2015년 초 폐지) - 공사 단독조사 후 금융감독원 확인검사 - 조사 및 공동검사 결과의 일괄 통보	④ 금융감독원 공유정보 및 공시 정보 우선 활용 ⑤ 보험사고 위험성 정도에 따라 점검기간 단축 ⑥ 확인서·문답서 대신 조사·공동검사 의견서 교부 - 객관적 증빙자료 수집 원칙 확립 ⑦ 금융감독원 협의를 통해 지적사항별 증빙자료를 정형화하여 확인검사 부담 완화 ⑧ 시급한 시정필요사항의 분리통보 실시
부보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및 소통강화	- 실시 부서장 재량의 청렴 교육 - 권익보호 담당역 1인 운영 - 서면 또는 현장방문 선택 - 점검기간 중 상근 임직원 위주의 비정기적 면담 - 서면 위주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 결과 확정 후 통보 - 조사·공동검사 실시부서의 결과 심의	⑨ 점검예절/청렴교육 의무화·규정화 ⑩ 권익보호 담당역 및 담당직원 확충 - 원칙적 현장방문 실시 ⑪ 점검기간 중 임직원 수시간담회 개최 및 사외이사 면담 실시 ⑫ 심의시 출석·서면의견 진술 가능 ⑬ 결과 진행사항 통지제도 도입 ⑭ 실시부서와 독립된 결과심의 제도 도입

나. 조사·공동검사 업무관행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시행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조사·공동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에 「조사·공동검사 업무관행 개선 및 효율화 방안」을 시행하였다. 동 방안은 조사·공동검사 틀의 변환, 부보금융회사 부담완화, 부보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및 소통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개선 방안은 제9차 「금융개혁회의」에서 논의·확정되었으며,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언론 브리핑도 실시하였다. 공사의 이와 같은 조사·공동검사 관행개선 노력에 따라 총 지적건수

대비 자율 시정 비율이 2014년 14%에서 2015년에는 72%로 증가하였으며, 현장점검 기간은 평균 17일에서 평균 11일로 단축되었다. 또한, 권익보호 담당역 현장면담 비율도 개선 이전 34%에서 100%로 증가 하였다.

〈 조사·공동검사 업무관행 개선 관련 금융위원회 합동 언론 브리핑 〉



3. 상시 감시 기능 활성화

공사는 리스크 상시 감시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금리·주가 등 경영·영업환경 여건 변화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변동 등 개별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금융제도 변화, 금융업권별 현안에 대하여 리스크 요인을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등 리스크 상시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였다.

특히, 은행업권의 바젤Ⅲ 자본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 보험업권의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영향, 금융투자업권의 NCR 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 등 각 금융업권의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부실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 함으로써 부실 위험을 차단하였다.

또한, 리스크 분석의 역량을 강화하고, 각 금융업권간 리스크 요인에 대한 공유 활성화 등 상시감시 업무수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리스크분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개별 부보금융회사의 경영현황, 리스크 요인 등을 분석하여 공유함으로써, 타 금융업권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리스크 분석에 활용하였다.

2015년 8월 중국발 금융쇼크 등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불안이 급증하여 ‘금융시장 대책반’을 신설하고, 매주 금융업권별 리스크 분석보고서를 생산하여 금융업권 및 개별 부보금융회사의 주요 리스크 요인, 감독당국의 조치사항 및 투자자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포착할 경우 적시에 보고하여 대응하였다.

한편,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보험사고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상시감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 및 개별 부보금융회사에 관한 주요 리스크 이슈에 대한 유관 부서들간의 폭넓은 의견 교환과 정보 공유를 도모하는 한편, 위기 시 주요 대응기구로서 그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4. 시장친화적 리스크 감시

가. 시장전문가들과의 교류 강화

공사는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시장참가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규율을 유도하고자, 2004년부터 계간지 “금융리스크리뷰誌”를 발간하고 있다.

2015년에는 금융리스크리뷰誌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금융시장 전문가의 릴레이 기고를 신설하고, 외부전문가의 원고를 확충하는 등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소통의 장 및 금융리스크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부보금융회사 임직원 등이 참여하여 각 금융권역의 리스크 요인과 주요 이슈에 대한 강의 및 토론을 진행하는 ‘청계금융포럼¹⁾’을 11회 개최하였고, 부보금융회사의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하는 ‘상시감시포럼’²⁾ 및 ‘리스크스터디포럼’³⁾은 8회를 개최하여 리스크관리기법 등에 대한 리스크 감시 실무자의 금융업 실무지식을 함양하였다.

- 주 : 1) 금융업권별 관계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업권별 발전방향 논의 (업권별 개최)
 2) 부보금융회사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 (은행, 금투, 보험)
 3)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사의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 (저축은행)

〈표 V-2〉 2015년 금융리스크리뷰誌 주요 내용

비 고	주 요 내 용
2015년 봄 호	- 핀테크 혁신이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 - 복합금융그룹의 리스크 요인과 통합감독체계 방향
2015년 여름호	- 비대칭 분포를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 추정 -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핵심준칙 개정과 시사점
2015년 가을호	- ELS·DLS 증가에 따른 증권사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 생명보험사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결과 및 시사점
2015년 겨울호	- 예금보험 차등보험료율제도 장기적 안착을 위한 과제 - 한계기업 발 시스템 위기에 대한 진단 및 정책 대안 - 예금보험공사의 위험관리 필요성 및 개선 2016년 보험업계 대내외 리스크 이슈와 대응방안

한편, 공사는 2011년부터 금융과 관련된 학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학생에 대한 현장실습, 공사 직원의 대학교 특강, 그리고 학계 전문가의 초청 강연으로 구성된 ‘KDIC-학계협력 프로그램’(KDIC Exchange Program with Finance Academy ; KEPA)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총 16회를 실시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기존 수도권 소재 대학 위주로 진행하던 KEPA를 금융정보에 취약한 지방 소재 대학으로 확대하여 지역간 금융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금융소비자(학생)에게 공사 업무를 소개하거나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정부3.0의 소통·공유 가치를 구현하였다. 앞으로도 공사는 예금보험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및 학계와의 소통을 위하여 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미비점이나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동 프로그램을 개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나. 부보금융회사와의 교류 강화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상시감시 업무 수행을 통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평가 및 분석 정보를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제공하였으며, 단독조사 및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를 통해 확인한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부보금융회사별 특성을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율적인 리스크 감축을 유도하였다.

또한, 차등보험료를 평가결과를 각 부보금융회사에 통보할 때, 전년도의 평가결과와 대비한 개선점, 해당 금융업권 전체와의 비교·분석한 결과 등 종합 분석내용을 경영진에 제공함으로써, 부보금융회사간 예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였다.

특히, 저축은행업권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임직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최근 저축은행의 영업 행태,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저축은행업권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저축은행 임직원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에 총 36회의 실무사례 중심의 방문 교육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공사는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지원 서비스와 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시장친화적인 리스크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2015년 KDIC-학계협력 프로그램 〉



제2절 차등보험료율제의 성공적 시행

1. 차등보험료율제의 의의 및 개요

차등보험료율제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여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9년 2월 「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1항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전체 부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이 의무화되었다.

차등평가는 평가의 기대효과, 예금보험료 납부규모, 평가 가능 여부 등에 따라 크게 (1) 차등 모형평가, (2) 특정보험료율 적용 평가, (3) 등급외 적용 평가로 구분된다.

이 중 차등모형평가는 기본평가부문(80점)과 보완평가부문(2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평가부문은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을 나타내는 ‘위기대응능력’,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건전성 관리능력’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손실회복능력’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보완평가부문은 기본평가를 보완하는 ‘재무위험관리능력’ 항목과 금융당국의 제재현황 등 ‘비재무위험관리능력’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V-3〉 차등평가의 구분

구 분	대 상	평 가 방 법	적 용 요 율
차등모형평가	특정보험료율 및 등급의 적용 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부보금융회사	차등모형에 의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1~3등급으로 구분	등급별 요율 적용
특정보험료율 적용 평가	소액보험료 납부 부보금융회사 등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규정에서 미리 정한 요율 적용
등급의 적용 평가	부실금융회사,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명령 중인 부보금융회사 등		규정에서 미리 정한 할증 요율 적용

또한, 공사는 차등보험료율제 도입으로 인한 부보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프트랜딩 기간을 설정하고 등급별 차등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V-4〉 등급별 적용 차등보험료율(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율* 대비)

등 급	소프트랜딩 기간		본격 가동 기간		
	2014~2015년	2016년	2017~2018년	2019~2020년	2021년~
1등급(할인)	△5%	△5%	△5%	△7%	△10%
2등급(표준)	0%	0%	0%	0%	0%
3등급(할증)	+1%	+2.5%	+5%	+7%	+10%

* 은행(0.08%), 보험·금융투자(0.15%), 상호저축은행(0.40%)

2. 정확하고 공정한 차등평가 실시

공사는 2015년 평가대상 312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차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는 등 차등보험료율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하였다. 이는 동 제도 도입 및 시행과 관련된 부보금융회사 대상 설명회 개최, 차등평가 결과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부단한 제도개선 노력 및 「차등보험료율산정시스템(RBPS)」의 지속적 개선 등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이다.

〈표 V-5〉 금융권역별 설명회 개최 실적

구 분	은 행	생 보	손 보	금융투자	저축은행	합 계
회 수	7회	1회	1회	1회	5회	15회

3. 차등보험료율제의 지속적인 개선 및 의견수렴

공사는 바젤Ⅲ 시행 등 각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과 관련된 변경사항의 반영 및 부보금융회사의 권익 제고 등을 위하여 2015년 2월 및 12월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등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보다 견고히 정비하였다.

한편, 기존에는 평가 종료 후 각 부보금융회사에 차등보험료율만을 통보하였으나, 2015년 9월부터는 차등보험료율 통보와 함께 “차등평가 결과 종합분석자료”를 통해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상대적인 위치 및 리스크 요인 등 차등보험료율 등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차등보험료율제가 부보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경영개선 및 경쟁력 제고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5년 12월에는 차등평가 등급 개선도가 우수하고 차등보험료율제 발전에 적극 기여한 부보금융회사 직원을 포상하여, 차등보험료율제에 대한 업계의 관심 및 인지도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차등보험료율제에 대한 수용도 및 안착 수준 등을 파악하여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자 부보금융회사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 수용도 및 공사의 노력도 등을 평가하는 “차등보험료율제 종합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인지도,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의지 및 공사의 노력도 부문 등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 및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등에서도 차등보험료율제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G7 국가 중 5개 선진국이 동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차등보험료율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공사가 운영하는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이 제고될 것이며, 나아가 국가 대외 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절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 관리

1. MOU 체결 및 점검

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및 공적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위하여 1999년 이후 총 14개 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 해당 금융회사에 재무비율 목표 및 비재무부문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왔다. 2002년 4월 이후 제주은행 등 11개 금융회사를 매각 또는 합병시킴에 따라 공사는 이들 금융회사와의 MOU를 해지(광주·경남은행 2014.10.10, 우리금융지주 2014.11.3)하였으며, 2015년 말 현재 우리은행, 수협 신용사업부문 및 서울보증보험 등 3개 금융회사와 체결한 MOU를 관리하고 있다.

제5장

리스크 관리



〈표 V-6〉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추가·수정 내역

(2015년 12월말 현재)

금융회사	MOU 체결 (재체결)	MOU 관리목표		MOU 해지
		추 가	수 정	
우리은행 (舊한빛은행)	1999. 1.22 ¹⁾ (2000.12.30)	2003. 1.22 2005. 3.23 2007. 3.28 2009. 3.30 2011. 3.30 2012. 3.29 2013. 4.24 2014. 3.25 2015. 3.25	2004. 9.22 2007.12.26 2010. 3.23	-
수 협 신용사업부문	2001. 4.25	2005. 3.23 2007. 3.28 2009. 3.30 2011. 3.30 2012. 3.29 2013. 4.24 2014. 3.25 2015. 3.25	2003. 2.12 2003. 7. 9 2005.12.21 2007.12.26 2010. 3.23	-
서울보증보험	2000. 4.12 ¹⁾ (2001. 6. 9)	2005. 6.22 2007. 7.18 2009. 6.10 2011. 6. 8 2012. 6.12 2013. 6.26 2014. 3.25 2015. 3.25	2002. 7.10 2006. 6.21 2007.12.26	-
제주은행	2000.12.30	-	-	2002. 4.29 (신한지주 앞 매각)
서울은행	2000.12.30	-	2001. 6.29	2002.12. 1 (하나은행 앞 매각)
조흥은행	1999.11.12 ¹⁾ (2002. 1.31)	-	-	2003. 8.19 (신한지주 앞 매각)
대투증권	2000. 9.25 ¹⁾ (2002. 2.20)	-	-	2005. 5.31 (하나은행 앞 매각)
한투증권	2000. 9.25 ¹⁾ (2002. 2.20)	-	-	2005. 3.31 (舊동원지주 앞 매각)
대한생명	2000. 4.12 ¹⁾ (2001. 9. 5)	-	-	2002.12.12 (한화컨소시움 앞 매각)
우리카드 (舊평화은행)	2000. 6. 7 ¹⁾ (2000.12.30)	-	2002. 3.25	2004. 3.31 (우리은행과 합병)
우리종금	2000.12. 9	-	2001. 6.29	2003. 8. 1 (우리은행과 합병)
우리금융지주	2001. 7. 2	-	2004. 9.22 2007.12.26 2010. 3.23	2014.11. 3 (우리은행과 합병)
광주은행	2000.12.30	-		2014.10.10 (JB 금융지주 앞 매각)
경남은행	2000.12.30	-		2014.10.10 (BS 금융지주 앞 매각)

주 : 1) 해당 금융회사, 공사, 금융감독위원회(現 금융위원회) 3자간 약정 체결

2015년 중 공사는 MOU 체결 금융회사의 2014년도 3/4분기부터 2015년도 3/4분기까지 MOU 이행실적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우리은행이 2014년도 연간 MOU 재무비율 목표에 일부 미달하였다.

2014년도 연간 MOU 재무비율 목표를 일부 미달한 우리은행의 경우 전반적인 재무비율의 달성수준이 양호한 점을 감안하여 공사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 관리규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의 재무비율 목표미달에 따른 조치를 면제하였다. 다만 일부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인력관리 노력 미흡 등 비재무부문 이행부진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취하였다.

향후에도 공사는 MOU 체결 금융회사의 목표 달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MOU 관리의 효율성 제고

가. 합리적인 MOU 목표 부여 및 MOU 관리 개선방안 수립

공사는 2010년도 및 2011년도 MOU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변경된 목표부여방식(2011년도부터)을 적용하여 2015년도까지 MOU 재무비율 및 비재무부문 목표를 부여하여 왔다. 2015년도 하반기 중에는 성공적인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자 유인 및 경영자율성 확대를 통한 기업가치(주가) 제고 가속화 등을 위해 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1)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가 배당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적자금을 상환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MOU 완화요건에 누적회수율 기준(50%초과)을 추가하고, 2) ‘매각 성공으로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공사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MOU 해지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MOU 해지요건을 구체화하였으며, 3) 수익성 지표에 대한 관리를 비용통제적인 관점보다 결과지표 중심으로 전환(MOU 완화요건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판매관리비용률 및 1인당 조정영업이익을 지표에서 삭제하고, ROE 지표를 추가)하기로 하고, 4) MOU 완화요건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추가적으로 목표 부여시 일회성·비경상적 요인을 제외하고, 목표

이행 수준 평가시 경쟁사 대비 개선도가 양호한 지표에 대한 가점제 도입 및 지표별 과락제를 폐지함으로써 MOU 운영과정에서 중장기 성과 중심의 의사결정을 유도 하는 등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여 기업가치 제고 및 성공적인 공적자금 회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MOU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동 제도개선 후속 조치로 2015년 11월에 「경영정상화이행약정 관리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금융위원회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지원 중이며 2016년 1분기 중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나. MOU 체결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 및 경영협의 시스템 운영

공사는 MOU 이행실적 점검시 MOU 목표 달성 여부 대한 점검 이외에도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MOU 점검결과 통보시 이에 대한 주의환기 내용을 포함 하였으며, 필요시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MOU 체결 금융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사후적인 MOU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또한, 2014년에 이어 2015년 12월에도 MOU 업무 관련 실무자 통합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사와 MOU 체결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및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한 MOU 관리업무의 질적 제고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였다.





저축은행 파산재단 관련 PF사업장 등에 대한 2015년도 제1차 투자설명회

2015년 3월 25일(공사 2층 세미나실), 14:00~16:00

예금보험공사
KDI FINANCIAL GUARANTEE CORPORATION

2. 물건소개

현장 이용상태

- 1층은 구분상가(7개)로 나뉘어져 케스킨(커피점), 편의점, 현대문헌점, 부동산중개소, 의료복합점이 입주 및 운영중이며 2~10층은 각각 구분상가(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4~4층은 주차장 및 관리사무실로 이용중
- 정상 분양중인 1~3층, 4층 및 8층 일부, 8층은 현대문헌점, 은행, 병원, 약점 등이 입주해 있으며 현재 분양중 일부에 불입 임대차 존재



선제적 대응능력을 갖춘

최고의 금융안정 및 예금자보호 서비스기관



제6장

부실금융회사 정리

제1절 부실금융회사 경영관리

제2절 예금자 불편 없는 부실금융회사 정리

제3절 부실금융회사 특별자산의 관리

제1절 부실금융회사 경영관리

1. 부실금융회사 경영관리 현황

2011년도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2013년도부터 2015년도 까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공사는 2014년에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부실금융회사로 지정(2014. 8.27일)됨에 따라 해당 시점부터 경영관리인 및 관리보조인 등을 파견하여 경영관리업무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 명령(2015. 1.16일)에 따라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을 통해 신속한 정리를 수행하였다.

〈표 VI-1〉 2013년 이후 부실금융회사 경영관리 현황

부실금융회사	영업정지일	현재 상태(인수자)	계약이전일	파산선고일
서울저축은행	2013. 2.15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예주저축은행)	2013. 2.15	2013. 9.26
영남저축은행	2013. 2.15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예솔저축은행)	2013. 2.15	2013. 9.26
신라저축은행	2013. 4.12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예신저축은행)	2013. 4.12	2013.10.29
그린손해보험	2013. 5. 3	제3자 계약이전(MG손해보험)	2013. 5. 3	2013.11. 1
스마일저축은행	2013.11. 1	제3자 계약이전(오에스비 저축은행)	2013.11. 1	2014. 4.29
한울저축은행	2013.12.27	제3자 계약이전(폐퍼저축은행)	2013.12.27	2014. 7. 1
해솔저축은행	2014. 5. 2	제3자 계약이전(웰컴저축은행)	2014. 5. 2	2014.10.21
한맥투자증권	2014. 1.15	투자자예탁자산 계약이전(아이엠투자증권)	2014.12.26	2015. 2.16
골든브릿지저축은행	2015. 1.16	제3자 계약이전(조은저축은행)	2015. 1.16	2015. 6.15

2.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체계적 경영관리

공사는 경영관리 인력 파견 및 업무 지원을 통해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체계적 경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사는 경영관리 파견 인력이 해당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 업무참고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분기별로 경영관리인·관리보조인 회의를 개최하여 현장과의 정보 교류 등을 통하여 경영관리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경영관리 부실금융회사별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업무 협의 및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 경영관리 파견 인력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014년에 부실화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는 자산규모 및 지점개수 등을 고려하여 경영관리인 1명과 관리보조인 5명을 파견하였다. 공사는 경영관리인 등을 통해 해당 부실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유도와 재산관리, 계약이전 등 정리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여 차질없이 정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표 VI-2〉 2015년 부실금융회사 경영관리 인력 파견 현황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명)

부실금융회사	경영관리인	관리보조인		합 계
		종합직	별정직	
골든브릿지저축은행	1	1	4	6

공사는 부도금융회사 영업정지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영업정지 직후 집중되는 전화 문의로 인해 저축은행 직원과 연락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구성하여 운영하던 저축은행 관련 민원 전담조직인 「고객 응대반」을 2015년에 확대하였다. 이로 인해 전화 불통으로 인한 고객의 불안을 해소하고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수요자 친화적 서비스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2절 예금자 불편 없는 부실금융회사 정리

1. 부실금융회사 정리현황 및 정리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공사는 2012년 하반기부터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을 도입하여 부실저축은행에 대해 금요일 영업종료 후 영업정지하고 월요일에 인수저축은행의营业을 재개함으로써 금융거래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금자 및 여신거래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공사는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으로 정리 시 신속한 정리를 위해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이로 인해 공사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가교저축은행에 대한 매각 및 관리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하반기 스마일저축은행부터는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을 도입하여 예금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가교저축은행의 매각·관리 부담을 없애고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조기에 종결하는 정리체계를 정착시켰다.

공사는 2013년 10월 부실금융회사로 결정된 해솔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스마일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을 추진하여 2014년 5월 웰컴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을 완료하였다. 또한, 2014년 8월 부실금융회사로 결정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으로 2015년 1월 조은저축은행에 계약이전을 완료하여 ‘금융거래 중단 없는 신속한 정리체계’의 모멘텀을 유지하였다.

〈표 VI-3〉 2014년~2015년 부실저축은행 정리(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

부실금융회사	부실금융회사 결정일	계약이전일 (=영업정지일)	인수금융회사
해솔저축은행	2013.10.10	2014. 5. 2	웰컴저축은행
골든브릿지저축은행	2014. 8. 27	2015. 1.16	조은저축은행

한편, 공사는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의 정착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외에도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산하에 「계약이전방식 연구 소위원회(Subcommittee on P&A)」 설립을 추진하는 등 IADI 차원의 국제 공동조사 연구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는 계약이전(Purchase and Assumption ; P&A) 방식을 이용한 정리 경험이 풍부한 공사에 그 산하 「계약이전방식 연구 소위원회(Subcommittee on P&A)」의 의장직 수행을 요청하였으며, 공사는 이에 따라 동 소위원회의 의장기구로서 각국 예금보험기구와 협력하고 있다.

2. 2015년 정리 세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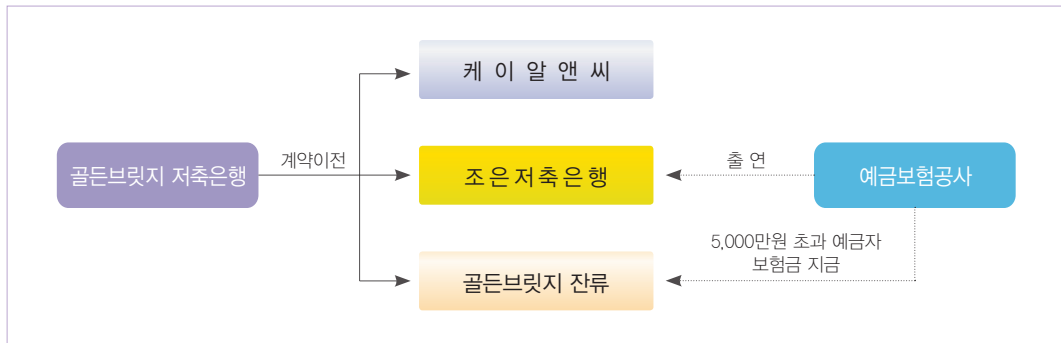
2014년 8월 27일 금융위원회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부실금융회사로 결정함에 따라, 공사는 지체 없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정리 절차에 들어갔다.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부과 받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금융위원회는 2014년 10월 14일 공사에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공사는 2014년 10월 17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지분 또는 자산 및 부채 매각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여, 웰컴저축은행, 조은저축은행, 미창석유공업 등 3개사를 예비 인수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4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조은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이 가장 적절한 정리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검증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5년 1월 16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조은저축은행 및 케이알앤씨(KR&C)로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하는 결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그 결과 조은저축은행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 거래를 그대로 승계하여 2015년 1월 19일 부터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조은저축은행에서 기존 거래조건(만기, 약정 이자 등)과 동일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VI-1〉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정리방식 체계도



〈표 VI-4〉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경과

일 자	내 용	비 고
2014. 4.21~ 5.30	•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실시	금감원
2014. 6.10	•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사전 통지	금융위
2014. 6.30	• 골든브릿지저축은행, 금융위에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
2014. 7.31	• 경영평가위원회,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결정	경평위
2014. 8.27	• 골든브릿지저축은행 부실금융회사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부과	금융위
2014.10.14	• 경영개선명령(자본금 증액) 불이행 보고	-
2014.10.14	• 공사에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처리방안 의견 제시 요청	금융위
2014.10.17~10.28	•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정리를 위한 입찰공고 및 인수의향서 접수	공 사
2014.11.26	• 최종입찰 및 최소비용검증을 거쳐 조은저축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공 사
2014.12. 5	• 금융위 앞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처리방안 의견 제시	공 사
2014.12. 5	•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영업인가 취소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금융위
2014.12.17	•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영업인가 취소 및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금융위
2015. 1.12	•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안 의결	예보위
2015. 1.14	• 행정처분 부과(영업정지, 계약이전 결정 등)	금융위
2015. 1.16	•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 실시	-
2015. 1.19	• 조은저축은행에 대하여 출연 실시	공 사

제3절 부실금융회사 특별자산의 관리

1. 특별자산 현황

가. 개 요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등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2011년 이후 부산계열 저축은행 등 다수의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 받음에 따라 이들의 자산이 대거 특별자산으로 편입되어 공사는 2015년 말 현재 관련 대출채권 기준 총 11조 4,418억원 규모의 특별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특별자산은 대출 취급과정에서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차명으로 SPC를 설립하고 이들 SPC에 대출을 실행하여 국내외에서 아파트 등 대규모 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자산으로 물건 상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인의 법률분쟁이 많을 뿐만 아니라, 미술품 및 고가의 외제차량 등 종류도 다양하여 이들 자산을 고유한 특성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자산가치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였다.

공사는 이러한 특별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1년 하반기에 특별자산 관리 전담부서(특수자산부)를 설치하였으며 2015년 말 현재 1부, 1실(PF자산회수부, 복합자산회수실)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VI-5〉 특별자산 유형별 관련 대출 현황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개)

사 업 유 형	대 출 채 권		투자자산 (투자액, B)	합 계 (A+B)
	건수 (사업장)	금액 (A)		
아파트 등	382	60,075	1,411 (14개)	114,418
리조트 등	38	11,012		
골프장	28	11,291		
물류센터 등	74	11,134		
선박	3	3,071		
해외건설	10	6,150		
기타(납골당 등)	21	5,907		
일반대출	25	4,367		
합 계	581	113,007	1,411	114,418

나. 특별자산 관리현황

특별자산 관리 전담부서는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되는 시점부터 특별자산 관련 대출의 취급 과정, 권리관계분석 및 사업현장에 대한 조사를 거쳐 현재의 자산상태를 파악하는 한편, 자산 가치의 저하요인을 분석하고 가치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특별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인·허가 및 사업권 만료 임박 사업장 등 자산가치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특별 자산에 대한 회수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분야별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자산별 특성에 부합되는 매각전략을 수립하여 회수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 VI-6〉 자산유형별 관리형태



2. 특별자산 회수 극대화 추진

가. 회수관리 체계

공사는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자산에 대해 당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시점부터 회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파산단계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된 특별자산의 회수재원 확보를 위하여 관련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후,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자산별 특성에 부합되는 매각 등 회수 전략을 수립하고, 이어서 대상자산에 대한 매각공고 및 입찰실시 등 매각 본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매각완료 자산에 대한 입금관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4단계의 단계별 회수체계를 갖추고 있다.

〈표 VI-7〉 특별자산 4단계 회수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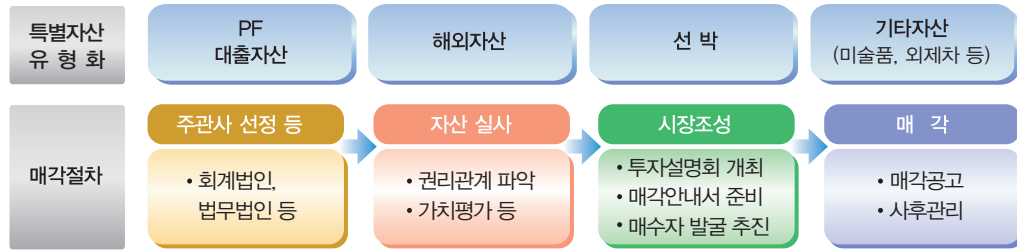
영업정지 직후부터 단계별 매각방안에 따른 매각 추진			
1단계 (보전조치)	2단계 (전략수립)	3단계 (매각)	4단계 (사후관리)
사업장현황 조사 채권보전조치	회수 · 정리방안 마련	매각 등 회수절차 진행	매각 후 사후관리

또한, 조사결과 분류된 특별자산을 자산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유형화시킨 대상 자산에 따른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의 집중도 및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회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편, 특별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계, 금융계,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자산회수자문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특별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중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잠재투자자들에게 투자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 및 지방 거점도시(부산 등 7개 도시)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5년까지 총 8회에 거친 투자설명회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잠재투자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였다.

〈표 VI-8〉 특별자산 유형 및 매각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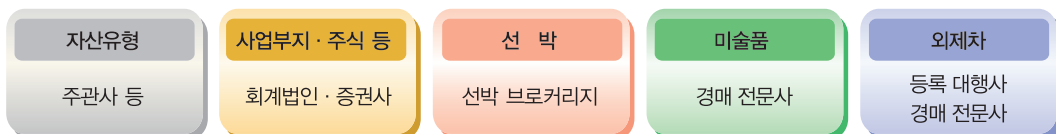
대외적으로는 부실저축은행 대주주 등의 비리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과 공사는 긴밀히 협력하여 압수자산을 신속히 인수하여 보존조치를 취하고, 관할 법원에는 공사의 특별자산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특별자산의 원활한 관리 및 회수를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 등 해외 투자 특별자산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외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법률 및 행정처리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는 현지 로펌 등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고 현지 대사관 등의 업무협조를 구하는 등 해외에 있는 특별자산의 회수를 위하여 대외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나. 회수절차

특별자산은 당해 사업의 특성과 담보물의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별·자산별 특성에 맞는 회수방안을 수립한 뒤 매각주관사를 선정하여 공개 입찰 등을 통해 회수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사는 특별자산의 공정한 매각을 위해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법률자문을 거쳐 대상 자산에 대한 법률관계를 분석한 뒤, 사업장별 또는 자산별 특성에 맞춰 최적의 회수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각을 추진한다.

〈표 VI-9〉 매각 대상 자산별 외부 전문기관 유형



PF 등 특수 사업장에 대한 청산가치 및 계속사업가치를 산출하는 사업성 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고 청산가치가 큰 경우에는 대위변제 후 직접 매각하거나, 신탁사 공매, 법원 경매, 대출관련자와의 상환협의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미술품의 경우에는 국·내외 경매 전에 작품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는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매각과정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은 분기단위로 측정되어 평가되고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며, 법률상 다툼 등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단이나 물상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협의 또는 채무의 조정 등을 통해 대출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 회수실적

공사는 특별자산의 회수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회수노력을 전개한 결과 2011년 이후 회수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 말까지 총 2조 8,952억원의 회수 성과를 거두었다.

〈표 Ⅶ-10〉 특별자산 회수유형별 실적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회수 금액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PF 등 부동산	828	1,567	3,346	8,048	8,655	22,444
골 프 장	-	100	212	158	317	787
선 박	3	219	661	871	1,199	2,953
주 식	-	838	641	214	183	1,876
해외자산	58	9	38	357	81	543
미술품 등 기타	-	53	49	86	161	349
합 계	889	2,786	4,947	9,734	10,596	28,952

2015년 하반기 파산관재인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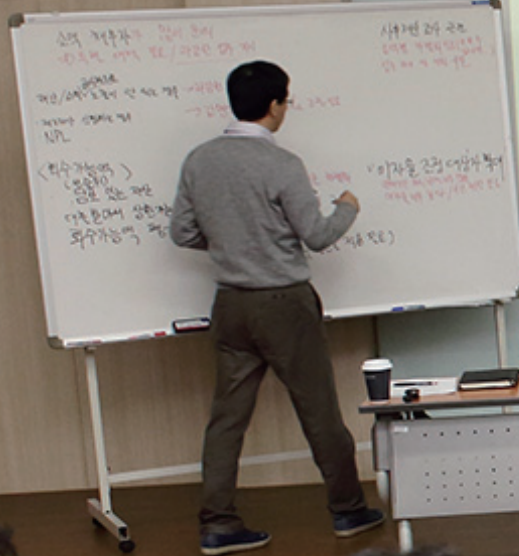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2015.12.11(금)

채무조정 관련 100분 토론

■ 채무자 관점에서의 채무조정제도 재검토

- 보통채무자 부담경감(Redleam 개선과제)
- 이자만 남은 채무자 구제
- 최저감면율 50%Rule의 문제점
- 손배채무자 채무조정 도입
- 채권분석을 통해 채권추심 및 캠페인 정례화 등



선제적 대응능력을 갖춘

최고의 금융안정 및 예금자보호 서비스기관



제7장

파산재단 및 인수자산 관리

제1절 파산재단 관리

제2절 부실금융회사 인수자산 관리

제1절 파산재단 관리

1. 파산재단 관리 현황

가. 공사의 파산관재인 역할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된다. (「법률용어사례집」, 법제처)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제1회 채권자 집회의 기일 등을 파산관재인이 정하게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점유, 관리 및 처분하며 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배당을 한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동법 제361조)

한편,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는 파산절차의 특례로서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부보금융회사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여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0조 제1항, 2015.12.22.)

이에 따라 2015년 말 현재 전국 44개 부실금융회사 파산재단에 공사 파산관재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선임되어 법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파산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추진함으로써 지원자금 등의 회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표 Ⅶ-1〉 파산관재인 선임 현황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구 분	전 체 파산재단 ¹⁾	파 산 관 재 인		
		공사 단독	변호사 단독	공 동 ²⁾
파산재단수	44	43	-	1

주 : 1) 법적종결재단(446개) 제외,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14개 신탁 파산재단 제외

2) 공사(또는 직원)가 변호사 등과 공동으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파산재단

나. 파산재단의 효율적인 관리

공사는 2007년 7월부터 지역통할책임자 제도를 통해 전국에 산재한 파산재단을 8개 광역권 별로 묶어 관리함으로써 파산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1인의 파산관재인이 동일 광역권내 여러 개의 파산재단을 맡아 통합·운영함으로써 파산재단 업무보조인 및 보유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현금 사고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무실 통합에 따라 임차비용, 건물관리비, 소모품 등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 2015년 파산관재인 대리인 워크숍 〉



또한, 공사는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정기적인 순환교체근무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파산관재인 대리인 워크숍을 통해 공사의 파산재단 운영 지침, 업무처리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동시에 파산관재인 대리인 간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파산재단 업무보조인을 상대로는 7월과 12월에 회수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보조인 워크숍을 개최하였다.(서울, 수도권, 충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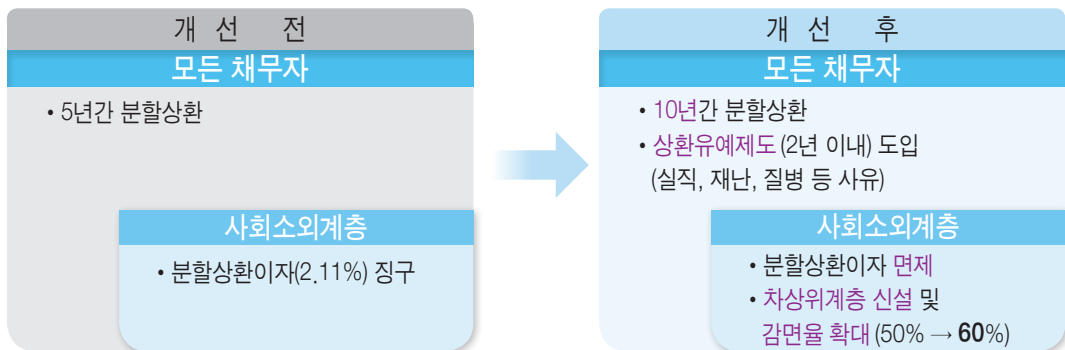
한편, 파산재단의 회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각, 부실채권 회수업무 등에 대해 파산재단 업무보조인의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다. 채무조정제도 개선

공사는 2001년부터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파산재단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재산 및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특히, 2015년도에는 10년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캠페인을 실시하여 1,598명의 10년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에게 65억원을 회수하고 211억원을 감면함으로써 파산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동시에 경제적 자활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림 Ⅶ-1〉 채무조정서비스 제도 개선내용



또한 채무조정 시 상환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채무자에게 실직·재난·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초수급자·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부담 없이 무이자로 채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는 등 채무조정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하여 공사는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시켰으며, 동시에 부실금융회사 등에 지원한 공적자금을 보다 충실히 회수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2. 자산환가 및 배당 극대화

공사는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각방식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먼저, 매각활성화 및 잠재수요자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했던 기존 공매정보 서비스를 전면 개선한 수요자 맞춤형 공매정보 전용 시스템인 “예보공매정보”를 구축하였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전자입찰시스템 ‘온비드’ 활용, 다양한 홍보 방안 발굴 등 다각적인 매각노력을 기울였으며, 자산별로 다양하게 진행되는 공고일을 목요일로 정례화 하여 수요자에게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였다.

〈 2016년 조선일보 재테크 박람회 〉



아울러 잠재수요자들에게 매각 대상 물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파산재단 보유 부동산 매각정보를 이메일 및 문자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투자설명회, 투자자간담회, 조선일보 재테크 박람회를 비롯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알짜 매물을 소개하는 등 잠재투자수요 발굴을 연중 추진하였다.

공사는 파산재단 보유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자산관리시스템(FASTs)’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시스템을 통해 파산재단 자산의 유형별 보유현황 및 매각대상 자산 등을 상시적·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파산재단 자산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이와 함께 공사는 파산재단의 배당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파산채권 및 배당관리 전산 시스템(CDIS)’을 2008년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파산채권 관리 및 배당금 지급 절차를 전산화 하여 배당 관련 업무의 적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였다.

공사는 이처럼 파산재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배당을 극대화하고 공적자금 등의 조기 회수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표 Ⅶ-2〉 파산재단 보유자산 매각 실적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건,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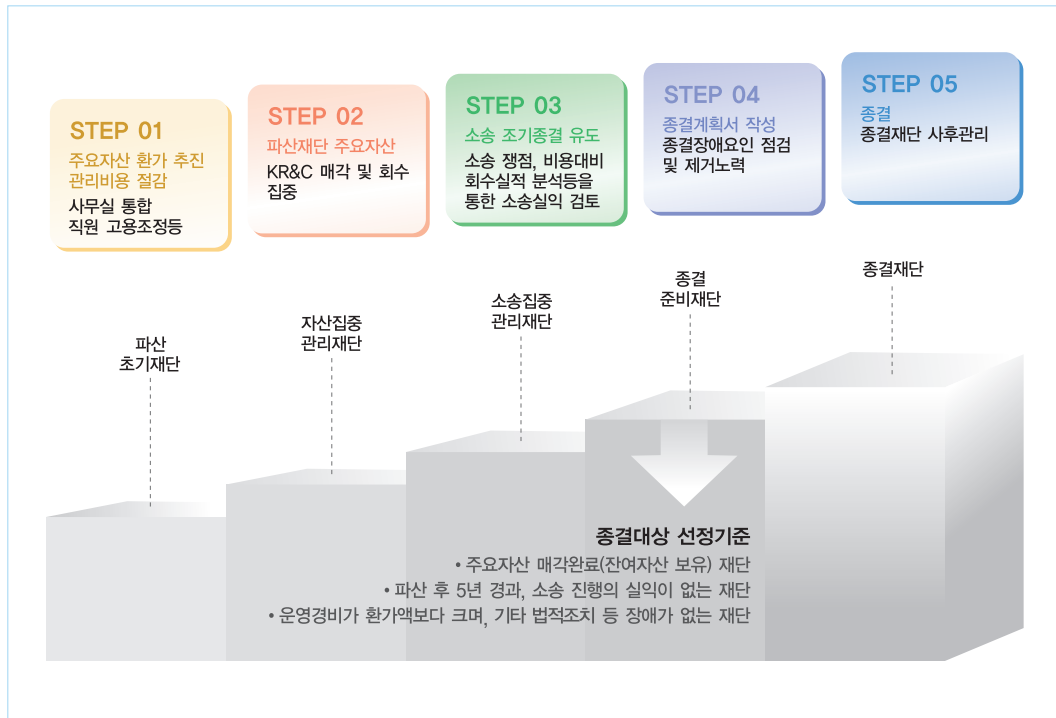
구 분	2013		2014		201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부 동 산	406	2,626	304	5,219	238	3,097
비상장주식	26	157	22	235	19	23
회원권(골프·콘도)	32	40	90	104	132	118

* 보유자산의 공매 및 수의계약 등으로 매각한 건수 및 금액임

3. 파산재단의 합리적 종결 추진

공사는 파산기간이 장기화되고 효율성이 저하되는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잔여자산을 평가·매각하여 최후배당을 실시한 후 법적 종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파산재단을 조속히 정리함으로써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림 Ⅶ-2〉 파산재단 단계별 관리방안



2015년 말 현재 490개 파산재단 중 446개 파산재단은 법원으로부터 종결선고를 받았으며, 나머지 44개 파산재단 중 파산기간이 장기화되고 효율성이 저하되는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법적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파산재단이 법적으로 종결된 이후에도 각 지역통합책임자를 통해 관련 민원 안내 및 법률관계 정리 등 법적 종결 파산재단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Ⅶ-3〉 파산재단¹⁾ 종결 및 진행 현황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개, %)

구 분		은행	보험	금융투자	증권	저축은행	신협	합계
총 파산재단 (A)		5	11	6	22	121	325	490
종결	종결재단 (B)	5	10	4	21	81	325	446
	종결율 (B/A×100)	100	91	67	95	67	100	91
진행재단 (A-B)		0	1	2	1	40	0	44

주 : 1)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관련된 파산재단 합산

제2절 부실금융회사 인수자산 관리

1. 부실금융회사 인수자산 현황

공사가 정리금융회사(케이알앤씨; KR&C)을 통해 2015년에 인수한 자산은 67억원(인수액 기준)이며, 2015년 말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총 49조 580억원(인수액 기준, 제각 제외)을 인수하였다.

〈표 Ⅶ-4〉 2015년 중 정리금융회사 인수자산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채권액	인수액	비 고
케이알앤씨 (KR&C)	파산재단	5,949	6	경북저축은행 외 9개 파산재단
	저축은행	166	61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제일은행 매각 시 뉴브리지캐피탈이 인수하지 않은 자산, 제일은행의 풋백옵션 자산, 기타 부실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미인수 자산의 인수를 위해 1999년 12월에 설립된 정리금융공사(RFC, 現 케이알앤씨로 전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제일은행으로부터 7조 8,386억원, 5개 인수은행(국민·주택·신한·하나·한미)으로부터 1,588억원, 5개 생명보험회사(국민·동아·태평양·한덕·대한)로부터 3,550억원, 3개 금융투자사(한투·대투·현투증권) 매각과정에서 1조 3,072억원, 467개 파산재단으로부터 3,728억원, 37개 저축은행*으로부터 5,147억원, 한아름종금 및 한아름금고 흡수과정에서

38조 5,109억원 등 2015년 말까지 총 49조 580억원(인수액 기준, 제각 제외)의 자산을 인수하였다.

* 한마음 · 한중 · 아림 · 좋은 · 대운 · 흥익 · 경북 · 현대 · 분당 · 전북 · 으뜸 · 전일 · 부산 · 부산2 · 중앙부산 · 대전 · 전주 · 보해 · 도민 · 경은 · 에이스 · 제일 · 제일2 · 진흥 · 토마토 · 토마토2 · 파랑새 · 프라임 · 한주 · 경기 · 신라 · 서울 · 영남 · 스마일 · 한울 · 해솔, 골든브릿지저축은행

〈표 Ⅶ-5〉 정리금융회사 인수자산(누계)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채권액	인수액	비 고
케이알앤씨 (KR&C)	은 행	98,693	79,974	6개 은행(제일은행 포함)
	보 험	4,032	3,550	5개 생명보험회사
	금융투자	25,324	13,072	3개 금융투자사
	파산재단	96,296	3,728	467개 파산재단(5개 은행, 10개 보험, 4개 금융투자, 22개 종금, 87개 저축은행, 339개 ¹⁾ 신탁)
	저축은행	26,425	5,147	37개 저축은행
	소 계	250,770	105,471	-
한아름종금 ²⁾	종 금	330,588	326,625 ³⁾	16개 종금
한아름금고 ²⁾	금 고	79,848	58,484 ³⁾	41개 저축은행
합	계	661,206	490,580	-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 중앙회로 이관된 14개 파산재단 포함

2) 공적자금 지원 분류 상 예금대지급 정리금융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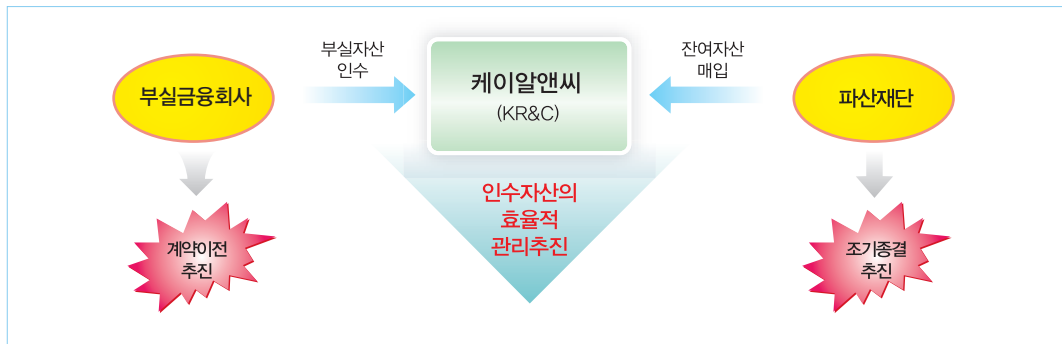
3) 예금대지급채권 포함(제각 제외)



2. 부실금융회사 인수자산의 효율적 관리

케이알앤씨(KR&C)는 부실금융회사의 계약 이전절차 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실금융회사의 부실자산 등을 신속하게 인수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재단의 조기종결 추진 등을 위해 파산재단으로부터 잔여자산을 매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Ⅶ-3〉 케이알앤씨(KR&C)의 업무



2015년말 기준 현재 케이알앤씨(KR&C)가 보유하고 있는 인수 자산의 잔액은 채권액 기준 10조 1,784억원으로 이 중 7,881억원은 케이알앤씨(KR&C)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9조 3,903억원은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케이알앤씨(KR&C)가 보유하고 있는 인수자산의 가치 제고 및 적기회수를 위해 자산별 특성에 맞는 회수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출채권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추심 및 채무조정을 통해 회수하고 있고, 유가증권 및 부동산은 정기 합동공매 실시, 구상채권의 경우 파산배당을 통해 회수를 추진하고 있다.



〈표 Ⅶ-6〉 케이알앤씨(KR&C) 보유 자산(잔액)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직접관리	외부 위탁관리	합 계
대출채권	424	93,258	93,682
유가증권	313	-	313
구상채권	6,414	-	6,414
부 동 산	730	645	1,375
합 계	7,881	93,903	101,784

주 : 손해배상채권 등 제외 기준





선제적 대응능력을 갖춘

최고의 금융안정 및 예금자보호 서비스기관



제8장

부실책임 추궁

- 제1절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조사
- 제2절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 제3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 제4절 부보금융회사 건전경영 풍토 조성

제1절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조사

1.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위법·부당행위 조사 효율성 제고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등에 대한 위법·부당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당해 부실금융회사 등에 위법·부당행위로 손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 부실금융회사 등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에 의한 업무집행 지시자, 부실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및 기타 제3자

2008년 3월 공사는 부실금융회사와 부실채무기업 간의 고도로 밀착된 불법행위에 대한 유기적 연계조사를 위하여 부실금융회사 조사를 담당하던 “舊조사부”와 부실채무기업 조사를 담당하던 “舊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을 통합하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2국 2부로 조직된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검찰 등 유관기관 수검 인력을 포함하여 2015년 말 현재 총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수검 직원의 전문성 및 정보력 등을 활용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으로부터 조사자료 등을 제공받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편, 조사결과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부실책임을 확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저축은행 대규모 부실과 보험회사 영업정지 발생 등 복잡·다양해지는 부실 책임 심의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금융분야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표 VIII-1〉 부실금융회사 관련 위법·부당행위 조사 현황(누계)

(2015년말 현재, 단위: 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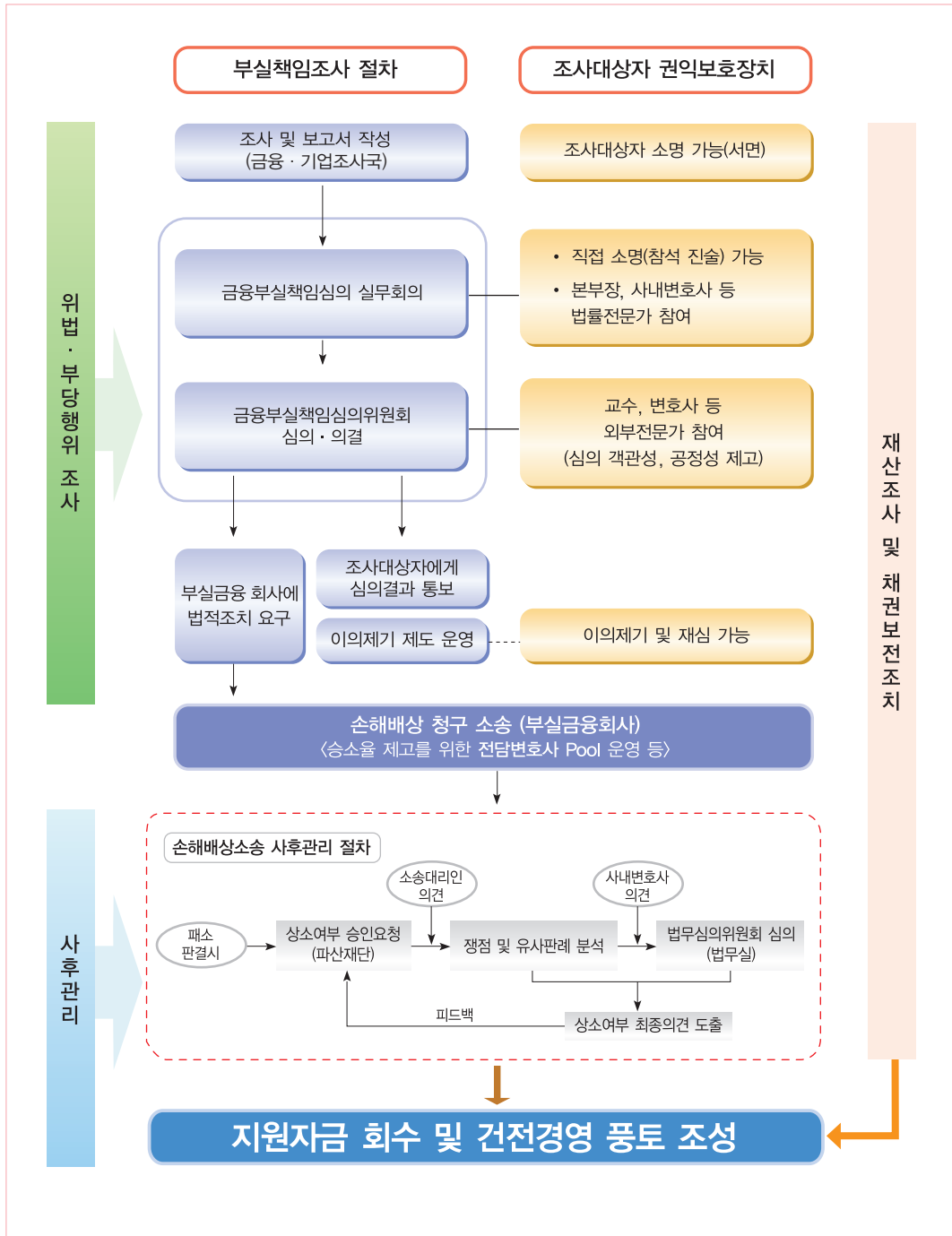
구 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기금	
	부실금융회사 수	부실관련자 수	부실금융회사 수	부실관련자 수
은 행	15	191	-	-
금융투자	6	65	-	-
보 험	18	244	1	6
종합금융	22	160	-	-
저축은행	86	789	45	506
신 협 ¹⁾	325	4,146	-	-
합 계	472	5,595	46	512

주: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14개 신탁 파산재단은 관련 통계에서 제외하였음



부실책임심의 결과 2015년 말 현재 공사는 총 518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6,107명에 대한 부실책임을 확정하여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부실금융회사와 그 파산재단에 요구하였다.

〈그림 Ⅷ-1〉 부실책임조사 절차 및 조사대상자 권익보호제도



2. 부실금융회사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요구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와 그 파산재단은 부실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에 대해 2015년 말까지 부실관련자 9,013명에 대해 1조 8,11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 이들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대부분 종료되었으며, 부실관련자 책임재산 강제집행 등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부실책임제재금액의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Ⅷ-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투입 부실금융회사 관련 소송제기 현황

(2015년말 현재, 단위 : 개, 명, 억원)

구 분	은 행	금융투자	보 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 협 ¹⁾	합 계
부실금융회사 수	15	6	18	22	85	311	457 ³⁾
피 고 수	191	83	276	181	1,026	7,256	9,013
소송청구액	1,004	342	2,435	3,048	5,433	5,856	18,118
승 소 액	471	218	1,346	548	4,056	3,208	9,847
집행금액 ²⁾	102	54	218	660	923	769	2,726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흥중앙회로 이관된 14개 신흥 파산재단은 관련 통계에서 제외하였음

2) 승소액 중 법원 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실제 회수된 금액

3) 자진변제, 면책 등의 사유로 조사 완료 후 소송 미제기한 15개 회사 제외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도 부실금융회사 및 그 파산재단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말까지 46개 부실금융회사 부실관련자 682명에 대해 4,42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표 Ⅷ-3〉 예금보험기금 투입 부실금융회사 관련 소송제기 현황

(2015년말 현재, 단위 : 개, 명, 억원)

부실금융회사 수	피 고 수	소송확정액 ¹⁾	승 소 액	집행금액 ²⁾
46	682	1,849	1,396	496

주 : 1) 소송청구액 4,422억원, 소송진행 2,573억원

2) 승소액 중 법원 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실제 회수된 금액

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채권보전조치 요구 이후 부실금융회사와 그 파산재단의 법적조치 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 인력 중심의 “소송지원점검반”을 구성하여 체계적 변론 및 다양한 증거자료 제시 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부실관련자의 재산을 새로이 발견할 경우 즉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잔여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관리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파산재단의 소송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손해소송대리인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소송에 필요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승소율을 제고하였으며, 소송사례집을 발간하여 각 재단 등에 배포함으로써 주요 판결에 대한 법적쟁점 등을 공유하여 소송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3. 부실책임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

공사는 부실책임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착수시점부터 부실책임이 확정될 때까지 전과정에 걸쳐 조사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실책임 현장조사 착수 시부터 향후 조사 진행과정과 각 과정별 소명 또는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부실책임 심의 단계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회의에 참석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부실책임조사 대상자가 제기한 이의제기에 대한 업무 처리 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조사 대상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이의제기 접수에서 통지까지 각 단계별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그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안내하여 조사 대상자의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는 한편,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결과를 조사 대상자에게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조사 대상자의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향후에도 공사는 엄정한 부실책임 추궁 과정에서 부당하게 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만전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1.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위법·부당행위 조사 노력

공사의 “舊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2006년말까지 마무리하고, 2007년부터 예금보험기금이 지원된 저축은행의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위법·부당행위 조사를 시작하였다.

2008년에는 부실금융회사 조사 전담 부서인 “舊 조사부”와 통합되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로 개편되었으며, 2013년에는 부실채무기업 전담부서인 조사2국이 신설되어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위법·부당행위 조사가 강화되는 한편, 책임재산 확보 등으로 채권회수 실효성이 제고되었으며, 2015년 12월에는 조사1국·조사2국이 각각 금융조사국과 기업조사국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부실채무기업 관련 위법·부당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2015년 말 현재 845명에 대해 부실책임을 확정하여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부실금융회사와 그 파산재단에 통보하였다.

〈표 Ⅷ-4〉 부실채무기업 관련 심의 현황(누계)

(2015년말 현재, 단위 : 개, 명)

부실채무기업 수	부실관련자 수
322	845

2. 부실채무기업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지원

공사는 부실금융회사 및 그 파산재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해, 부실채무기업의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도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와 동일하게 법적조치가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요구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와 그 파산재단은 부실관련자에 대해 2015년 말 까지 208건, 9,97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표 Ⅷ-5〉 부실채무기업 관련 소송제기 현황(누계)

(2015년말 현재, 단위 : 개, 명, 억원)

부실채무기업 수	피 고 수	소송청구액	승 소 액	집행금액 ¹⁾
322	1,230	9,970	4,597	1,187

주 : 1) 승소액 중 법원 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실제 회수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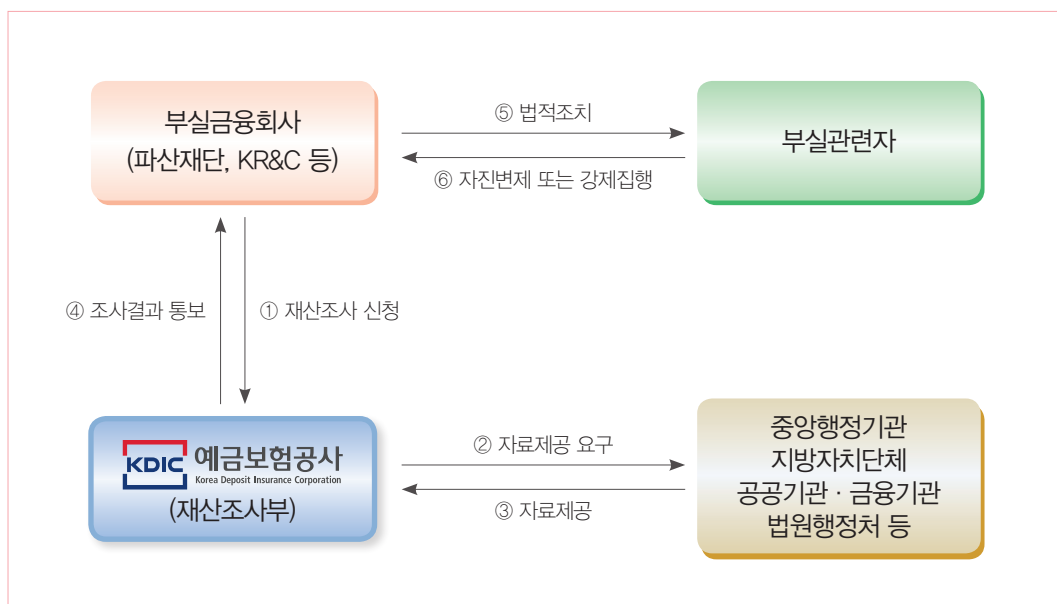


제3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1. 국내 재산조사 강화

공사는 자금을 지원한 부실금융회사(파산재단 포함)의 부실관련자가 보유하거나 제3자에게 은닉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추적·환수하는 등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을 통해 지원자금 회수 극대화 및 부보금융회사의 건전 경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Ⅷ-2〉 국내재산조사 업무흐름도



이를 위해 「예금자보호법」상 보장된 “자료제공 요구권”을 활용하여 법원행정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15년 12월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으로 은닉재산 추적에 매우 긴요한 수단인 세무관서의 과세정보에 대한 적기 확보가 가능해져 부실관련자의 재산 추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됨에 따라, 공사, 대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서울세관, 서울시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보공유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 2015년 정보공유 실무협의회 워크숍 〉



공사는 2011년 이후 영업정지 된 부산저축은행 등 30개 저축은행 및 그린손해보험의 부실책임자를 대상으로 책임추궁 및 관련 채권회수를 위해 재산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위법·부당 행위로 부실금융회사에 손실을 끼친 대주주·임직원 등 부실책임자의 금융자산 2,874억원과 부동산 5,259필지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부실금융회사는 동 발견 재산에 대해 2015년 12월말 현재 (가)압류 4,891억원과 가치분 45건 등 법적조치를 완료하였다.

〈표 Ⅷ-6〉 2011년 이후 영업 정지된 부실금융회사의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현황

(2015년 12월말 현재)

구 분	발견재산		채권보전조치 현황	
	금융자산(억원)	부동산(필지)	(가)압류(억원) ¹⁾	가치분(건)
부실책임자	2,874	5,259	4,891	45

주 : 1) (가)압류결정문상 청구금액

2. 해외 재산조사 확대 및 회수 강화

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해외 재산조사를 2002년부터 실시하였으며, 2006년 9월부터 미국·캐나다·일본·호주·중국·뉴질랜드·필리핀 등 7개국에서 본격적으로 해외재산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2011년 이후 대규모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부실관련자가 급증하고 부실관련자의 재산 은닉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됨에 따라, 2014년부터 조사대상국을 37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해외 재산조사를 한층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신규 해외 재산조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대검찰청 협업 및 자체조사 확대 등을 통해 해외 재산조사 채널을 다양화하였다. 또한, 해외 각 국의 제도 및 법령 연구를 통해 부부 공동 재산(Community Property)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가별 맞춤형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에 공사는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563명에 대해 해외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미화 12백만달러(135억원) 상당의 해외 은닉재산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공사는 해외소송대리인 후보군을 기존 12개국 16개 법무법인에서 14개국 26개 법무법인으로 확대하여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법적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5년에는 전년대비 2.2배 증가한 미화 503만달러(58억원) 상당의 해외은닉재산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Ⅷ-7〉 연도별 해외 은닉재산 회수 현황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천 USD)

년 도	2003~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¹⁾	2014 ¹⁾	2015	합 계
금 액	3,044	-	2	349	1,400	415	11,653	2,252	5,027	24,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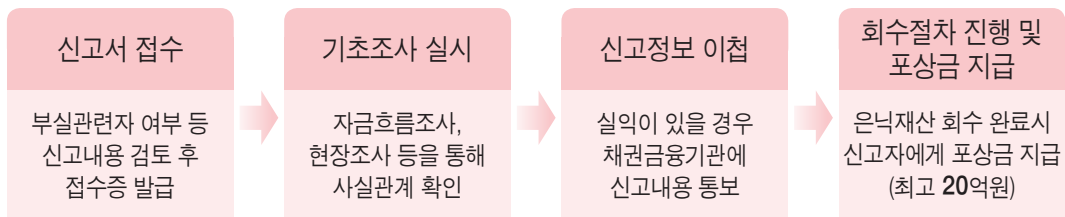
주: 1) 환가 등에 따른 금액 변동분 반영

3.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한 은닉재산 회수

공사는 기존의 정기 및 특별재산조사로는 파악이 불가능한 정보를 국민의 신고를 통해 확보하여 은닉재산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2002년 5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하였다.

은닉재산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내용에 대한 자금흐름조사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회수 실익이 있는 신고정보를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후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Ⅷ-3〉 은닉재산 신고센터 업무흐름도



한편, 공사는 은닉재산 신고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15년 5월 15일부터 신고 포상금의 최고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신고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공사 홈페이지에 은닉재산 신고 배너를 설치하여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특히, 신고인의 신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 2015년 신고 포상금 상향 관련 언론보도 〉



아울러, 공사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對국민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하철 광고, SNS 광고, 유관기관(국세청, 은행연합회,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배너 광고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7개 국가(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캄보디아)에 현지 교민 홍보위원을 위촉하였으며, 한인회 홈페이지 및 현지 회보 등을 통한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사는 2015년 말까지 총 311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그 중 56건에 대해 362억원을 회수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총 23억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은닉재산 회수를 위한 숨은 첨병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표 Ⅷ-8〉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 현황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접수건수	21	12	17	10	22	21	15	19	12	17	23	53	33	36	311
회수건수	-	1	1	2	3	8	4	2	4	2	5	9	7	8	56
회수금액	-	3,156	374	231	11,791	6,184	2,637	2,830	605	1,058	825	2,553	732	3,203	36,179



제4절 부보금융회사 건전경영 풍토 조성

2011년 이후 발생한 저축은행 대규모 영업정지의 주요 원인이 대주주, 임직원 등의 불법 행위와 도덕적 해이 등으로 나타남에 따라 저축은행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저축은행의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위별로 내용과 형태를 달리하는 맞춤형 부실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저축은행 직원 대상 부실예방교육

공사는 영업 중인 저축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부실예방교육을 통해 저축은행 직원들에게 업무 취급 시 준수해야 할 법규, 부실유형별 세부 점검사항, 최신 부실사례 및 관련 판례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실제 부실 사례를 알기 쉽게 재구성하고 시인성과 흥미 등을 보강하여 교재를 개선하였으며, 부실예방교육 실시 이후에도 최신 판례를 온라인(on-line)을 통해 상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였다.

〈표 Ⅷ-9〉 최근 5년간 저축은행 직원 대상 부실예방교육 실시 내역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저축은행수	35	43	60	67	78
교육 인원수	1,026	1,581	1,788	1,810	2,614

또한 잦은 방문교육 등으로 인한 저축은행 직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2부의 교육지원 서비스와 연계된 합동교육도 확대 실시하였다.

〈표 Ⅷ-10〉 저축은행 합동교육 실시 내역

구 분	2014	2015
저축은행수	3	8
교육 인원수	52	204

2. 여신담당 임원 지역별 간담회 개최

공사는 위법·부당대출 등 부실에 취약한 여신부문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저축은행 여신담당 임원에 대한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3년부터 분기별로 대구, 광주 등 주요 지역별 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부당여신 취급 사례와 임원의 부실책임 결과 등을 소개하고, 여신담당 임원들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참석대상자를 준법감시인 등으로 까지 확대하는 등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풍토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3. 저축은행 관계자 초청 워크숍 개최

공사는 임직원의 직무집행과 업무전반을 감사하는 감사의 부실예방 및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저축은행 감사를 대상으로 매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2015년에는 감사의 워크숍 참석부담을 완화하고 저축은행업권의 영업전략에 대한 정보수요 증대를 반영하여, 리스크관리2부와 함께 “저축은행 관계자 초청 워크숍”으로 통합 개최하였다.

향후에도 공사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립하고,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2015년 저축은행 관계자 초청 워크숍 〉





예금보험공사가
있어 언제나
안전합니다

당신의
대한민국



선제적 대응능력을 갖춘

최고의 금융안정 및 예금자보호 서비스기관

예금을 보호합니다

예금자 보호
꼭! 이것만은
기억해



제9장 기금관리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제2절 예금보험기금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002년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이하 '상환대책'이라 한다)에 따라 2003년 1월 1일, 금융구조 조정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예금보험기금으로부터 분리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으로 이관하였다. 동 기금은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와 공적자금 회수 및 상환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한편, 예금보험기금은 공사가 2003년부터 수납하는 예금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2003년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사고 등에 관한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1. 안정적 조성

가. 특별기여금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예금 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의 일정 비율을 특별기여금으로 2003년부터 2027년까지 공사에 납부해야 하며, 현재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그 밖의 부보금융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특별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다. 공사는 2015년에 총 1조 4,068억원의 특별기여금을 수납하였다.

〈표 IX-1〉 금융권역별 특별기여금요율

구 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협
요 율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5/10,000 ¹⁾
법정한도	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주 : 1) 2007년부터 신협의 특별기여금요율이 1/1,000에서 5/10,000로 변경됨

〈표 IX-2〉 금융권역별 특별기여금 수입

(단위 : 억원)

연 도	은행	금융투자	보 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협 ¹⁾	합 계
			생 보	손 보				
2003	4,775	156	889	185	21	222	-	6,247
2004	4,956	168	978	198	6	264	-	6,570
2005	4,872	145	1,069	219	5	319	-	6,628
2006	4,987	151	1,160	242	6	370	216	7,133
2007	5,027	156	1,265	278	7	430	116	7,280
2008	4,976	185	1,364	319	8	491	129	7,472
2009	5,965	169	1,430	352	10	593	137	8,656
2010	6,811	213	1,534	409	19	715	170	9,871
2011	7,789	227	1,650	487	12	718	205	11,087
2012	8,518	226	1,760	592	10	521	228	11,855
2013	8,973	202	2,297	707	9	394	248	12,830
2014	9,590	200	2,386	790	7	323	263	13,560
2015	9,786	179	2,617	896	7	308	275	14,068
합 계	87,024	2,379	20,398	5,672	126	5,668	1,986	123,255

주 : 1) 신협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납부

나.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공사는 상환대책에 따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총 52조 3,064억원의 출연금을 수령하여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일부를 상환하였다. 2007년 이후로는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추가 출연금을 수납하지 않고 있다.

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발행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이하 '예보채'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1998년 이후 2002년까지 총 87조 1,599억원의 예보채를 발행하였다.

2003년도 상환기금 설치에 따라 2002년 말 예보채 잔액 80조 9,744억원이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그 이후 만기도래하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예보채는 상환대책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하 '상환기금채'라 한다)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특별기여금 및 기타 회수 자금 등으로 2008년까지 전액 상환하였다.

〈표 Ⅸ-3〉 2002년 12월 31일 이전 예보채 발행 및 상환

(단위 : 억원)

연 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 액
1998	210,150	-	210,150
1999	224,849	-	434,999
2000	89,407	-	524,406
2001	310,593	14,640	820,359
2002	36,600	47,215	809,744
2003	-	97,371	712,373
2004	-	166,227	546,146
2005	-	180,904	365,242
2006	-	190,636	174,606
2007	-	60,672	113,933
2008	-	113,933	-
합 계	871,599 ¹⁾	871,599	-

주 : 1) 차환발행을 포함한 총 발행 누적액

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발행 및 상환

공사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예보채 원리금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에 따라 상환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에 공사는 2015년에 8,800억원을 5년 만기 고정금리채권으로 공모 방식을 통하여 발행하였다. 한편, 2015년 중 만기 도래한 상환기금채 4조 6,900억원을 상환함으로써 2015년 말 발행 잔액은 14조 7,100억원이다.

〈표 Ⅸ-4〉 상환기금채 발행 및 상환

(단위 : 억원)

연 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 액
2004	65,000	-	65,000
2005	74,400	-	139,400
2006	28,705	3,155	164,950
2007	27,200	450	191,700
2008	88,000	100	279,600
2009	58,600	65,000	273,200
2010	68,100	74,400	266,900
2011	7,800	37,300	237,400
2012	47,700	56,900	228,200
2013	72,700	75,700	225,200
2014	10,100	50,100	185,200
2015	8,800	46,900	147,100
합 계	557,105	410,005	147,100

마. 차입금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예금보험금 등의 지급 및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회사, 기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02년까지 재정용자 특별회계,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부보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소요자금을 차입한 바 있다.

그러나 2003년 상환기금 설치로 기존 차입금 잔액은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재정용자 특별회계 차입금 전액은 2003년 1월 1일자로 상환의무가 면제되었다. 2003년 이후에는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한 신규 차입은 없고, 2013년에 세계은행(IBRD) 차관의 원금 1억불(1,168억원)을 상환하여 2015년 말 현재 차입금은 없다.

〈표 Ⅸ-5〉 상환기금 차입 및 상환

(단위 : 억원)

연 도	차 입 금 액				상환금액	잔 액
	부보금융회사	차 관 ¹⁾	재정융자 특별회계	소 계		
인수액	76,011	-	-	76,011	-	76,011
1998	3,295	2,416	10,582	16,293	9,337	82,967
1999	13,870	12,016	26,254	52,140	33,870	101,237
2000	90,028	13	39,533	129,574	9,802	221,009
2001	-	8	49,672	49,680	110,196	160,493
2002	-	-	59,553	59,553	3	220,043
2003	-	-	-	-	195,993	24,050
2004	-	-	-	-	11,168	12,882
2005	-	-	-	-	3,538	9,344
2006	-	-	-	-	1,168	8,176
2007	-	-	-	-	1,168	7,008
2008	-	-	-	-	1,168	5,840
2009	-	-	-	-	1,168	4,672
2010	-	-	-	-	1,168	3,504
2011	-	-	-	-	1,168	2,336
2012	-	-	-	-	1,168	1,168
2013	-	-	-	-	1,168	-
합 계	183,204	14,453	185,594	383,251	383,251	-

주 : 1) IBRD, ADB 차관자금 등

2. 지원

가. 개 관

공사는 상환기금을 통해 예금보험금의 지급,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을 위한 출자·출연·대출 등의 자금 지원을 하였으며, 2015년 총 0.1억원의 자금을 전액 출연 형태로 지원하였다.

〈표 Ⅸ-6〉 상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 (2015년)

(단위 : 억원)

구 분	출 자	출 연	자산매입	대 출	예금보험금 지급	합 계
은 행	-	-	-	-	-	-
금융투자	-	-	-	-	-	-
보 험	-	0.1	-	-	-	0.1
종합금융	-	-	-	-	-	-
저축은행	-	-	-	-	-	-
신 협	-	-	-	-	-	-
합 계	-	0.1	-	-	-	0.1

2015년 말까지 공적자금 형태로 상환기금에서 부보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을 위해 지원된 자금은 총 110조 8,945억원이다. 이 중 부보금융회사의 파산 등에 따른 예금보험금 지급 30조 3,124억원(27.3%),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 50조 7,937억원(45.8%), 계약이전 등에 따른 출연 18조 6,117억원(16.8%), 기타 자산매입 등으로 11조 1,767억원(10.1%) 등이 지원되었다.

〈표 Ⅸ-7〉 상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 (누계)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 자	출 연	자산매입 ¹⁾	대 출	예금보험금 지급 ¹⁾	합 계
은 행	222,039	139,189	81,064	-	-	442,292
금융투자	99,769	4,143	21,239	-	113	125,264
보 험	159,198	31,192	3,495	-	-	193,885
종합금융	26,931	7,431	-	-	182,718	217,080
저축은행	1	4,161	-	5,969	72,892	83,023
신 협	-	-	-	-	47,402	47,402
합 계	507,937	186,117	105,799	5,969	303,124	1,108,945

주 : 1) 정리금융회사를 통한 지원 포함

나. 금융권역별 지원내역

(1) 은행

2015년 중 공사가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은행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또는 출자, 출연,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2) 보험회사

KB생명은 과거 한일생명 인수 시 공사와 체결한 출연약정서에 의거하여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하는 휴면보험금에 대하여 공사에 정산을 요청하여, 공사는 2015년에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0.1억원을 추가 출연하였다.

(3) 금융투자회사

2015년 중 공사가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또는 출자, 출연,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4) 저축은행

2015년 중 공사가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저축은행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또는 출자, 출연,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표 Ⅸ-8〉 연도별 저축은행 예금보험금 지급

(단위 : 개, 억원)

연 도	저축은행 수	예금보험금 지급 금액
1998	17	14,705
1999	19	14,272
2000	11	6,500
2001	5	29,537
2002	10	7,719
2003	7	5
2004	8	26
2005	7	1
2006	8	3
2007	2	128
2008	-	△4
2009	1	-
2010	-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2015	-	-
합 계	95	72,892

〈표 Ⅸ-9〉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 자		출 연		대 출	
	2014년 이전	2015년	2014년 이전	2015년	2014년 이전	2015년
경기(舊코미트)	-	-	254	-	1,654	-
경북(舊한우리)	-	-	85	-	-	-
대전(現 대전)	-	-	-	-	102	-
도민(금강)	-	-	28	-	709	-
동원(한국투자)	-	-	63	-	783	-
부민(부산)	-	-	243	-	-	-
부산 2	-	-	-	-	271	-
상업(舊현대)	-	-	701	-	-	-
새누리	-	-	13	-	21	-
솔로몬(舊골드)	-	-	663	-	-	-
신충북	-	-	-	-	161	-
아 름	-	-	-	-	615	-
유니온	-	-	39	-	518	-
제이원	-	-	325	-	-	-
조 일	-	-	29	-	738	-
충남(舊새온양)	-	-	-	-	45	-
충 일	-	-	-	-	89	-
텔슨(舊신한국)	-	-	775	-	-	-
하나로	-	-	422	-	-	-
한마음	-	-	521	-	-	-
해동(경기)	-	-	-	-	263	-
케이알앤씨(KR&C)	1 ¹⁾	-	-	-	-	-
합 계	1	-	4,161	-	5,969	-

주 : 1) 2001년 12월 말 정리금융공사(RFC)로 합병된 한아름금고에 대한 출자

3.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가. 개 관

공사의 공적자금 회수방법은 그 지원방법에 따라 다르다. 먼저 부보금융회사에 출자한 자금의 경우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부보금융회사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진다. 둘째, 예금대지급·출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공적자금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파산한 부실금융회사 등에 대해 지원된 것이므로 파산한 부실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공사가 직접 파산채권자로 참여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회수가 이루어진다. 끝으로 공사가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 및 부보금융회사에 대출한 자금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회수함으로써 공적자금이 회수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사는 2015년에 1조 6,243억원을 회수하고, 2015년 말까지 총 55조 279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IX-10〉 상환기금의 회수 (2015년)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금 회수	출연금 정산 등	자산 매각 ¹⁾	대출금 회수	파산 배당금 ¹⁾	합 계
은 행	2,499	0.1	273	-	-	2,772
금융투자	-	142	3	-	-	144
보 험	11,695	0.1	33	-	-	11,728
종합금융	89	-	-	-	1,506	1,596
저축은행	-	-	-	-	2	2
신 험	-	-	-	-	-	-
합 계	14,284	142	309	-	1,508	16,243

주 : 1) 정리금융회사를 통한 회수 포함

〈표 Ⅸ-11〉 상환기금의 회수(누계)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금 회수	출연금 정산 등	자산 매각 ¹⁾	대출금 회수	파산 배당금 ¹⁾	합 계
은 행	187,444	701	66,312	-	18,472	272,930
금융투자	12,121	3,373	18,007	-	78	33,579
보 험	50,872	888	2,453	-	4,310	58,523
종합금융	1,695	59	-	-	91,196	92,950
저축은행	-	343	-	5,969	51,793	58,105
신 협	-	4	-	-	34,188	34,192
합 계	252,133	5,368	86,771	5,969	200,038	550,279

주 : 1) 정리금융회사를 통한 회수 포함

나. 보유주식의 매각 등

(1) 은행

공사는 2015년 중 우리은행 배당금 2,499억원(은행계정 보유지분 해당액)을 회수하였고, 케이알앤씨(KR&C)를 통한 자산매각으로 273억원을 회수하였다.

(2) 보험회사

공사는 2015년 중 한화생명보험 지분 일부(9.5%) 매각대금 6,537억원, 한화생명보험 배당금 387억원, 서울보증보험 배당금 4,771억원을 회수하였고, 케이알앤씨(KR&C)를 통한 자산매각으로 33억원을 회수하였다.

(3) 금융투자회사

공사는 현투증권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입한 자산의 매각을 통해 3억원을 회수하였다.

(4) 종합금융회사

공사는 우리은행 배당금 89억원(종금계정 보유지분 해당액)을 회수하였다.

다. 파산배당금

2015년 중 공사(케이알앤씨 포함)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파산재단의 보유자산 처분을 통하여 종합금융 파산재단으로부터 1,506억원, 저축은행 파산재단으로부터 2억원의 파산배당금을 수령하여 2015년 말까지 총 20조 38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Ⅸ-12〉 금융권역별 파산배당금 회수¹⁾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억원)

구 분	파산재단 수 ²⁾	회 수 액	
		2015년	1999년~2015년 총회수액
은 행	5	-	18,472
금융투자	4	-	78
보 험	10	-	4,310
종합금융	22	1,506	91,196
저축은행	75	2	51,793
신 험	325	-	34,188
합 계	441	1,508	200,038

주 : 1) 공사가 파산재단(공사가 예금보험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및 케이알앤씨(舊 한아름종합금·금고를 통해 예금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로부터 수령한 파산배당 회수금액

2) 상환기금과 관련된 파산재단 기준이며, 〈표 Ⅶ-3〉의 파산재단 수는 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과 관련된 파산재단 합산 기준임

라. 대출금 회수 등

공사는 2015년 말까지 대출 형태로 총 5,96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금은 전액 회수하였다. 또한, 2015년 말까지 출연금 정산 등을 통해 회수한 지원금은 총 5,368억원이며, 2015년 중 ‘현대 SPC 손실분담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회수액 142억원, 한화생명보험 계약이전 관련 출연금 정산으로 0.1억원, 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총 142억원을 회수하였다.

마. 케이알앤씨(KR&C)를 통한 회수

케이알앤씨(KR&C)는 그 동안 인수자산에 대해 대출채권 회수 등의 전통적 방법은 물론 M&A방식에 의한 매각, 합작특수목적회사(JV SPC) 설립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 자산유동화

증권(ABS) 발행 등 다양한 첨단금융기법을 활용하여 2015년말 누적기준으로 총 41조 561억 원을 회수하였고, 이 중 20조 6,621억원을 공사에 상환*하였다.

*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공사로부터 대출한 금액 총 33조 8,297억원

2015년 케이알앤씨(KR&C)는 대출채권의 원리금 회수 등으로 485억원, 보유 유가증권의 매각 등으로 63억원 및 구상채권 파산배당 등으로 542억원 등 총 1,090억원을 회수하였고, 1,779억원(2015년도 이전 회수액 일부 포함)을 공사에 상환하였다.

〈표 Ⅸ-13〉 케이알앤씨(KR&C)의 자산매각 등을 통한 회수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년 도	자산구분	대상 자산	회수액	회수 방법
2015년 중 회수액	대출채권	원화 채권	485	추심 및 채무조정 등
		외화 채권	-	
		소 계	485	
	유가증권	상장 및 비상장 주식	63	공매, 장종매각, 배당 등
	부동산 등	대지 등	-	공매 등
	구상채권	예금대지급 채권 등	542	파산배당
	합 계		1,090	-
누계액	대출채권	원화 채권	103,315	국제입찰, NPL매각, ABS 발행 등
		외화 채권	30,726	
		소 계	134,041	
	유가증권	상장 및 비상장 주식	61,877	공매, 블록세일 등
	부동산 등	대지 등	6,220	공매 등
	구상채권	예금대지급 채권 등	208,423	파산배당
	합 계		410,561	-

제2절 예금보험기금

1. 안정적 조성

가. 예금보험료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예금 등의 잔액(보험 회사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의 일정 비율을 예금보험료로 공사에 납부해야 하며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그 밖의 부보금융회사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6월 이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2002년까지 수납한 예금보험료는 상환대책에 따라 설치된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현행 예금보험기금은 2003년부터 수납한 예금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었다.

〈표 IX-14〉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율

구 분	은 행	금융투자	보 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	8/10,000	15/10,000 ¹⁾	15/10,000	15/10,000	40/10,000 ²⁾
법 정 한 도	50/10,000	50/10,000	50/10,000	50/10,000	50/10,000

주 : 1) 2007년부터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는 투자자예탁금에 대하여 예금보험료율 30% 인하

2)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년 7월부터 예금보험료율 변경(기존 35/10,000)

한편, 2011년 3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였다. 특별계정은 각 금융업권별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연간 예금보험료의 45%(다만, 상호저축은행업권은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와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채권 발행, 외부 차입금, 회수자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공사는 특별계정을 포함하여 2015년 중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총 1조 3,547억원의 예금보험료를 수납하였다.

〈표 Ⅸ-15〉 연도별 ·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 수입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연 도	은 행	금융투자	보 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특별계정 ²⁾	합 계 ⁴⁾
			생명보험	손해보험				
2003 ¹⁾	4,775	312	2,580	535	73	667	-	8,942
2004	4,960	336	2,832	571	17	793	-	9,509
2005	4,869	300	3,109	628	15	974	-	9,895
2006	4,987	303	3,362	697	19	1,116	-	10,484
2007	5,027	256	3,654	801	22	1,306	-	11,066
2008	4,808	305	3,934	918	24	1,483	-	11,472
2009	5,291	276	4,097	1,016	29	1,737	-	12,446
2010	5,451	284	2,609	698	34	2,524	-	11,600
2011	4,795	283	2,362	700	18	2,332	1,742	12,231
2012 ⁵⁾	3,748	2	-14 ³⁾	100	8	1,345	5,816	11,004
2013 ⁵⁾	3,948	-	221	488	8	253	6,672	11,590
2014 ⁵⁾	4,197	-	811	445	6	256	6,158	11,872
2015 ⁵⁾	4,369	-	1,280	710	4	64	7,120	13,547
합 계	61,224	2,658	30,837	8,306	276	14,849	27,509	145,659

주 : 1) 2002년까지의 예금보험료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2) 2011년 4월 상호저축은행구조조정특별계정 설치 (2026년말까지 존치 예정)

3) 2012년 이전에 납부한 예금보험료에 대한 환급

4) 2010년 1월 1일자로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5) 목표기금제도에 따라 2012년 (금투 · 생보 면제, 손보 15% 감액), 2013년 (금투 면제, 생보 45% 감액, 손보 7% 감액), 2014년 (금투 면제, 생보 38% 감액, 손보 1% 감액), 2015년 (금투 면제, 생보 17% 감액) 예금보험료 감면 조치

나. 부보금융회사 출연금

부보금융회사가 영업 또는 설립 인가를 받은 때에는 「예금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사에 출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년까지 수납한 출연금은 상환 대책에 따라 설치된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2003년부터 수납한 출연금은 현행 예금보험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표 Ⅸ-16〉 부보금융회사 출연금

(단위 : 억원)

연 도	은행	금융투자	보 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특별계정	합 계 ²⁾
			생명보험	손해보험				
2003 ¹⁾	0.3	-	6.5	2.0	-	-	-	8.8
2004	3.4	2.0	6.0	2.0	-	-	-	13.4
2005	2.2	2.0	-	-	-	12.5	-	16.7
2006	3.8	8.0	-	2.0	-	13.4	-	27.2
2007	-	-	-	-	-	-	-	-
2008	1.6	110.1	-	-	-	5.6	-	117.2
2009	7.7	43.1	4.2	3.4	0.2	7.8	-	66.3
2010	0.8	5.8	9.0	0.3	-	-	-	15.9
2011	0.3	-	-	-	-	12.0	-	12.3
2012	5.8	1.3	50.0	8.0	-	24.0	-	89.1
2013	0.8	21.7	3.2	3.1	0.0	49.8	-	78.6
2014	-	0.6	-	-	-	90.6	-	91.2
2015	-	-	-	-	-	-	-	-
합 계	26.6	194.6	78.9	20.8	0.2	215.6	-	536.7

주 : 1) 2002년까지의 출연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2) 2010년 1월 1일자로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다.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채권 발행 및 상환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 및 제26조의2에 따라 2011년 12월 정부보증 없이 공사 자체 신용으로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채권을 최초로 발행하였다. 2013년까지 부실금융회사 정리를 위한 자금지원 등을 위하여 총 23조 3,300억원의 특별계정채권을 발행하였으며, 2014년 중 1조 2,000억원의 특별계정채권을 상환하였다. 2015년에는 9조 8,800억원의 특별계정채권을 상환하고, 5조 6,400억원을 차환 발행하였다.

〈표 Ⅸ-17〉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채권 발행 및 상환

(단위 : 억원)

연 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 액
2011	12,000	-	12,000
2012	200,400	-	212,400
2013	20,900	-	233,300
2014	-	12,000	221,300
2015	56,400	98,800	178,900
합 계	289,700	110,800	178,900

라. 차입금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예금보험금 등의 지급 및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회사, 기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부보금융회사로부터 2003년과 2004년에 1,664억원을 차입하였고,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하여 2007년에 2,314억원을 차입하였으며, 2011년 이후에 33조 3,795억원을 차입하였다.

〈표 Ⅸ-18〉 예금보험기금 차입 및 상환

(단위 : 억원)

계정별	연 도	차 입 금 액 ¹⁾				상환금액	잔 액
		부보금융회사	한국은행 등	정 부	소 계		
저축 은행	2007	2,314	-	-	2,314	-	2,314
	2008	-	-	-	-	2,314	-
	소 계	2,314	-	-	2,314	2,314	-
특별 계정	2011	104,199	-	-	104,199	12,000	92,199
	2012	141,932	-	1,000	142,932	222,625	12,506
	2013	19,365	-	1,000	20,365	30,871	2,000
	2014	960	-	500	1,460	960	2,500
	2015	67,339	-	-	67,339	67,339	2,500
	소 계	333,795	-	2,500	336,295	333,795	2,500
합 계		336,109	-	2,500	338,609	336,109	2,500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협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이 중 신용협동조합계정의 외부 차입금은 파산배당 등 자체 회수자금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920억원을 상환한 후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잔액을 모두 이관하여 상환하여야 할 외부 차입금이 없고, 저축은행계정의 외부차입금도 2008년 중 2,314억원 전액을 상환하였다.

한편, 2011년 대규모 부실저축은행 정리 재원 마련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계정은 은행 등 부보금융회사로부터 2015년 말까지 총 33조 3,795억원을 차입하였다. 또한, 특별계정 재원 확충의 일환으로 2012년 이후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무이자(10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총 2,500억원의 용자를 수령하였다.

2015년 말까지 특별계정 차입금 33조 6,295억원 중 지원자금회수 및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등을 통해 33조 3,795억원을 상환하여 2015년 말 차입금 잔액은 2,500억원이며, 이는 전액 정부로부터의 장기 차입금이다.

2. 적시 지원

가. 개 관

예금보험기금은 2003년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을 위한 출자·출연·대출 등의 자금 지원에 지출한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한 김천저축은행 등 16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하여 저축은행계정을 통해 총 4조 5,27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31개 부실저축은행은 특별계정을 통해 총 27조 1,704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3년에 1개 손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계정을 통해 226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Ⅸ-19〉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 (2015년)

(단위 : 억원)

계 정 별	출 자	출 연	예금보험금 지급	대 출	개산지급금	합 계
저축은행	-	-	1	-	-	1
특별계정	-	520	18 ¹⁾	-	-	537
합 계	-	520	19	-	-	538

주 : 1) 2015년 이전 발생 부실저축은행 관련 예금보험금 지급액

〈표 Ⅸ-20〉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 (누계)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계 정 별	출 자	출 연	예금보험금 지급	대 출	개산지급금	합 계 ¹⁾
은 행	-	-	-	-	-	-
금융투자	-	-	-	-	-	-
보 험	-	226	-	-	-	226
종합금융	-	-	-	-	-	-
저축은행	1,211	24,542	14,413	4,891	219	45,276
특별계정	3,655	229,873	36,265	1,136	775	271,704
합 계	4,866	254,641	50,678	6,027	994	317,206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나. 금융권역별 지원내역

(1) 은행

2015년 중 공사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은행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또는 출자, 출연,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2) 보험회사

2015년 중 공사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보험회사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또는 출자, 출연,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3) 금융투자회사

2015년 중 공사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또는 출자, 출연,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4) 저축은행(특별계정)

공사는 2011년부터 영업 정지된 31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하여 특별계정을 통하여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전이 확정된 부실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순자산부족분 출연 등으로 자금을 지원 하는 한편, 부실자산은 케이알앤씨(KR&C)로 계약 이전하여 이에 따른 자금을 대출해 주었다.

2015년 말까지 영업 정지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Ⅸ-21〉 특별계정을 통한 예금보험금 지급 및 자금 지원 현황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저 축 은 행	영업정지일	예금보험금 지급 (가지급금 포함)	출연, 대출 등	합 계
삼화 등 16개 저축은행	2011년 중	32,789	127,034	159,823
솔로몬 등 8개 저축은행	2012년 중	3,448	86,706	90,154
서울 등 5개 저축은행	2013년 중	28	18,185	18,213
해 솔 저 축 은 행	2014년 중	-	2,994	2,994
골든브릿지저축은행	2015년 중	-	520	520
합 계		36,265	235,439	271,704

3. 회수 극대화

가. 개 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지원한 자금도 상환기금의 회수방법과 마찬가지로 출자부보금융 회사의 보유지분 매각을 통한 회수, 부실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따른 파산배당, 부보금융 회사에 대한 대출자금 상환 등의 회수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2015년에 저축은행계정은 759억원, 특별계정은 3조 3,444억원을 회수 하였고, 2003년부터 2015년 말까지 누적으로 총 9조 302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Ⅸ-22〉 예금보험기금의 회수 (2015년 및 누계)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금회수	출연금회수	보험금회수	대출금회수 ¹⁾	개산지급금 회수	합 계 ²⁾
2015년	저축은행	-	154	382	226	-3	759
	특별계정	-	29,208	4,055	5	176	33,444
	합 계	-	29,362	4,437	231	173	34,203
2003~2015년 말 누계		5,948	59,940	17,755	5,665	994	90,302

주 : 1) 케이알앤씨(KR&C)를 통한 대출원금 및 이자의 회수

2)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나. 파산배당금 및 대출금 회수

2015년 중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을 투입한 파산재단의 보유자산 처분 등을 통하여 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으로부터 3조 3,972억원의 파산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누계실적으로 총 7조 7,143억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공사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케이알앤씨(KR&C) 등을 통해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하여 6,027억원을 대출하여 총 5,665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IX-23〉 파산배당금 및 대출금 회수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파산배당금 회수액		대출금 회수액	
	2015년 중	2003~2015년 말 누계	2015년 중	2003~2015년 말 누계
저축은행(특별계정 포함)	33,972	77,143	231	5,665

다. 케이알앤씨(KR&C)를 통한 회수

케이알앤씨(KR&C)는 그동안 인수자산에 대해 대출채권 회수, 부실채권 매각, 공매 등을 통해 2015년말 누적기준으로 총 6,206억원을 회수하였고, 이중 5,665억원을 공사에 상환* 하였다.

*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하여 공사로부터 대출한 금액 총 6,027억원

2015년 케이알앤씨(KR&C)는 대출채권의 원리금 회수 등으로 335억원, 보유 부동산의 매각 등으로 16억원 등 총 351억원을 회수하였고, 이중 231억원을 공사에 상환하였다.



〈표 Ⅸ-24〉 케이알앤씨(KR&C)의 자산매각 등을 통한 회수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년 도	자산구분	대상 자산	회수액	회수 방법
2015년 중 회수액	대출채권	원화 채권	335	추심 및 채무조정 등
		외화 채권	-	
		소 계	335	
	유가증권	상장 및 비상장 주식	-	-
	부동산 등	대지 등	16	공매 등
	합 계		351	-
누계액	대출채권	원화 채권	5,569	NPL매각, 추심 및 채무조정 등
		외화 채권	-	
		소 계	5,569	
	유가증권	상장 및 비상장 주식	2	공매 등
	부동산 등	대지 등	635	공매 등
	합 계		6,206	-

라.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제고

2003년 새로운 예금보험기금이 출범한 이후 2006년 5월 정부의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목표기금제의 도입과 예금보험료율 체계 개편 등 예금보험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공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목표기금제의 도입과 예금보험료율 체계 개편 등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2007년 10월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2007년 12월 의원입법을 통하여 2009년 부터 목표기금제가 시행되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었다.

2009년 2월에는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생명보험계정과 손해보험계정을 분리하고 부보 금융회사의 수가 적은 종금계정은 목표규모 설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6월에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로 기금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할 경우 예금 보험료를 인하, 면제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 3월에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예금보험기금의 부실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저축 은행의 정리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6개 계정 외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였다. 특별계정은 각 업권별 예금보험료 수입의 일부 및 회수자금 등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달하여 2011년 이후 발생한 부실저축은행의 정리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2년 이후 매년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에 따라 특별계정관리백서를 발간하고, 특별계정의 전년도 결산결과 및 해당 연도 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2012년 7월 및 2013년 11월, 2014년 10월에는 특별계정의 재원확충 및 조성 재원의 다양화를 위하여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로부터 무이자 조건으로 총 2,500억원의 차입금을 수령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공사는 특별계정을 통해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채권을 2011년 12월부터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나, 채권 발행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시스템 이용에 따른 수수료 증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2012년 8월 공사 자체 전자입찰시스템을 구축하여 채권을 발행하였고, 이를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자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도 중 예금보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측면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었다. EU 및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둔화 및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에 따른 국내외 경제지표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15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저금리 기조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2015년 12월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공사가 운용하는 예금보험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주요 경제동향 및 시장금리전망 등을 기초로 적극적인 자산배분과 채권 듀레이션 조절을 통해 금융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외부 위탁운용사에 대한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기준을 개선하였다. 또한, 자금배분 차등 폭을 확대하고 금융회사별 투자한도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예금보험기금 여유자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 자금운용성과 평가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관련 내규를 2015년에 새로 정비하였다. 또한, 예금보험기금 운용을 위한 거래대상 금융회사 선정 시 필요로 하는 최소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예금보험기금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된 신용·유동성·운영위험 통합관리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다.

주전문점 736-0076
736.0076

개성상회
736.5264



선제적 대응능력을 갖춘

최고의 금융안정 및 예금자보호 서비스기관



제10장

2015년도 결산

제1절 결산 개요

제2절 결산 기준

제3절 결산 현황

제1절 결산 개요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3(구분 회계처리)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공사회계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 등 3개의 회계단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다만, 예금보험기금과 공사회계의 결산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의 위임을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구분회계 사이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통합 결산서를 작성한다.

예금보험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시 은행계정,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계정, 생명보험회사계정, 손해보험회사계정, 종합금융회사계정, 상호저축은행계정, 상호저축은행구조조정 특별계정 등 7개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상환기금은 은행계정,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계정, 생명보험회사계정, 손해보험회사계정, 종합금융회사계정, 상호저축은행계정, 신용협동조합계정 등 7개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공사는 회계자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회계연도부터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수검하고 있으며, 2015회계연도에는 예일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수검하였고 감사의견은 ‘적정’이었다.

제2절 결산 기준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의 재무제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등에 따라 작성되었고, 상환기금의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I.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1. 자산·부채의 회계처리

가. 유가증권의 분류 및 평가

(1)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및 분류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취득목적과 성격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관계기업투자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15년의 경우 예금보험기금만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다.

(2) 유가증권의 평가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미실현 보유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 후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관계기업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피투자회사의 순자산변동액에 대한 지분비율만큼 취득원가에 가감처리하고 동시에 자본항목을 증감시키거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이 손상된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원가(또는 상각 후 취득원가)와 공정가액(또는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나. 대출금 등의 평가

대출금 및 구상채권 등에 대하여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파산재단에 대한 구상채권은 파산재단 보유자산 평가에 근거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 지급준비금

보험사고 발생 및 소송결과에 따라 공사가 부담해야 할 손실예상액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를 적립하고 있다.

라. 자본예산전출금 및 공사운영비

예금보험기금은 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매입자금과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바, 공사회계의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은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자본예산전출금)의 과목으로 하여 자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자산이 감가상각 등에 의하여 감소할 경우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자본예산전출금)의 과목을 감소시키고 영업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등 공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영업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2. 수익 · 비용의 회계처리

가. 수익인식기준

수익과 비용은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계상하였다. 예금 보험료수입과 예금 등과 관련된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며, 회수불가능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현금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나. 수익 · 비용의 기간귀속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간손익을 계상하였다.

- (1) (비용의 이연) 당해 연도 이후에 속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선급비용으로 표시하고 당기비용에서 차감하였다.
- (2) (비용의 계상) 당해 연도에 속하는 비용으로 결산일 현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비용은 미지급비용으로 표시하여 비용에 가산하였고, 결산일 현재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계상하지 않았다.
- (3) (수익의 계상) 당해 연도에 속하는 수익으로 일정한 계약 또는 약관에 정한 기일이 미도래하여 결산일 현재 현금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미수수익으로 표시하여 수익에 가산하였다.



Ⅱ. 상환기금

1. 국가회계기준의 적용

상환기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2. 자산·부채의 회계처리

가. 유가증권의 분류 및 평가

(1)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및 분류

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개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단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내 또는 1년 이내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을 포함하며, 장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상 또는 1년 이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장기투자증권을 포함한다.

(2) 유가증권의 평가

채무증권은 상각 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지분증권과 기타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투자목적의 장기투자증권 또는 단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표시하고 있다.

한편,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감액한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당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동 장부가액까지를 한도로 하여 동 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나. 대여금 등의 평가

대여금, 미수채권 및 구상채권 등에 대하여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파산재단에 대한 구상채권은 파산재단 보유자산 평가에 근거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 장기충당부채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금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손실금액을 장기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다.

라. 공채발행차금

상환기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할인발행차금 또는 할증발행차금으로 계상하고 공채 발행시부터 최종 상환 시까지의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환입)하고, 동 상각(환입)액을 이자비용에 가산(차감)하여 처리하고 있다.

마. 자본예산전출금 및 공사운영비

상환기금은 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과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바, 공사회계의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은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의 과목으로 하여 자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자산이 감가상각 등에 의하여 감소할 경우 동 과목을 감소시키고 관리운영비로 비용처리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등 공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금융정책지원프로그램에 배분된 금액은 프로그램충원가로 그 이외의 경비는 관리운영비로 처리하고 있다.

3. 수익 · 비용의 회계처리

가. 수익인식기준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교환 수익의 경우 수익창출 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비교환 수익의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되, 회수불가능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현금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나. 비용인식기준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 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제3절 결산 현황

1.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통합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의 위임을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구분회계단위인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통합결산서를 작성한다.

구분회계단위별 재무 현황 및 손익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예금보험기금

(1) 재무 현황

2015년말 현재 자산 총액은 14조 4,234억원으로 2014년말 대비 2조 105억원(12.2%) 감소하였다. 이는 파산배당 등에 따른 구상채권 감소(△2조 1,130억원) 등에 주로 기인한다.

2015년말 현재 부채 총액은 18조 4,318억원으로 2014년말 대비 4조 2,020억원(18.6%) 감소하였다. 이는 파산배당 등*으로 예특채(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채권, 이하 같음)를 상환함(△4조 2,400억원)에 주로 기인한다.

* 파산배당(3.4조원) 및 예금보험료 등(0.8조)

2015년말 현재 자본 총액은 (-)4조 84억원으로 2014년말 대비 2조 1,915억원(35.3%) 증가하였다. 이는 당기순이익(2조 1,984억원) 발생으로 인하여 결손금이 감소한데 주로 기인한다.

(2) 손익 현황

2015년도 당기순이익은 2조 1,984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여, 2014년 대비 1조 8,177억(477.5%) 증가하였다.

영업이익은 9,404억원으로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영업수익(1조 6,589억원)의 경우 예금보험료수익(1조 4,570억원), 운용자산 이자수익(1,950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영업비용(7,185억원)의 경우 예특채·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6,247억원, 공사운영비 925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영업외손익은 1조 2,580억원으로 주로 구상채권 회수예상가액 증가로 인한 대손충당금 환입액(1조 2,392억원)과 충당부채 환입액(167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공사회계

(1) 재무 현황

2015년말 현재 자산 총액은 201억원으로 2014년말 대비 5억원(2.8%) 증가하였다.

유동자산은 20억원으로 법인카드 지급을 위한 현금보유액 등이 전년 대비 감소하여 2014년말 대비 1억원 감소하였다. 비유동자산은 181억원으로 기타유형자산 취득으로 인해 유형자산이 7억원 가량 증가함에 따라 2014년말 대비 6억원 증가하였다.

2015년말 현재 부채 총액은 약 269억원으로 2014년말 대비 21억원(8.5%) 증가하였다.

2015년말 현재 자본 총액은 약 (-)68억원으로 2014년말 대비 16억원(30.8%) 감소하였다.

공사회계의 자본이 (-)인 사유는 2013회계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2015년 근로제공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 경영평가 성과급 42억원을 부채로 미리 반영하였고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한 순확정급여부채가 28억원 계상됨에 따라 회계상 부채가 크게 증가함(실제 자금수지와는 무관)에 기인한다.

(2) 손익 현황

2015년 중 당기순손실은 총수익과 총비용의 차액인 1억원이 발생하였다.

총수익은 982억원으로 기금전입수익(977억원)을 포함한 영업수익 978억원과 기타수익 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비용은 983억원으로 인건비 593억원(60.3%)과 경비 390억원(39.7%)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상환기금

가. 재무 현황

2015년말 현재 자산 총액은 6조 5,556억원으로 2014년말 대비 2조 5,514억원(28.0%) 감소하였다.

유동자산의 경우 상환기금채권 순상환 등으로 운용자산이 감소(1조 3,286억원)하는 등 1조 73억원 감소하였으며, 투자자산의 경우 한화생명보험 주식 일부 처분(6,840억원) 및 보유주식(우리은행·한화생명보험) 주가하락 등에 따른 지분증권 감소(4,768억원) 등으로 1조 5,405억원 감소하였다. 또한 기타 비유동자산의 경우 파산배당에 따른 구상채권 감소 등으로 36억원 감소하였다.

2015년말 현재 부채 총액은 14조 8,704억원으로 2014년말 대비 3조 8,706억원(20.7%) 감소하였다. 이는 운용자산 등*으로 상환채를 순상환(3조 8,100억원)한데 주로 기인한다.

* 한화생명보험 주식 매각(0.7조원), 주식배당(0.8조원), 기초 운용자산(1.3조원) 및 특별기여금 등(1.0조원)

2015년말 현재 자본 총액은 (-)8조 3,148억원으로 2014년말 대비 1조 3,192억원(13.7%) 증가하였다. 이는 당기순이익 2조 1,172억원 시현과 한화생명보험 주식 일부 처분 및 보유주식 주가하락 등으로 인한 순자산조정 7,980억원 감소에 기인한다.

나. 손익 현황

2015년 중 재정운영결과*는 (-)2조 1,172억원으로 2014년도 대비 3,445억원(14.9%) 감소하였다. 2015년 중 순이익이 감소한 주요 요인은 배당금수익이 증가(6,661억원)하고, 이자비용이 감소(1,375억원)하였으나, 주식처분이익이 감소(1조 2,048억원)한데 주로 기인한다.

* 재정운영결과는 기업회계기준의 당기순이익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負(-)인 경우 발생한 원가보다 수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

상환기금의 고유사업인 금융정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프로그램 순원가는 (-)6,735억원으로, 이는 프로그램총원가 5,949억원에서 프로그램차감수익 1조 2,684억원을 차감한 결과이다.

재정운영순원가는 (-)7,104억원으로, 이는 프로그램순원가 (-)6,735억원에서 관리운영비 65억원을 가산하고 비배분수익 434억원을 차감한 결과이다. 여기서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 원가로 배부되지 않은 경비 등의 관리업무비를 말하며, 비배분수익 및 비배분비용은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 없이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말한다.

한편, 재정운영결과 (-)2조 1,172억원은 재정운영순원가 (-)7,104억원에서 비교환수익 1조 4,068억원을 차감한 결과이다. 여기서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특별 기여금수익을 말한다.



〈표 X-1〉 요약 재무상태표

• 당 기 : 2015년 12월 31일 현재

• 전 기 : 2014년 12월 31일 현재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통합)

(단위 : 억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자본	금 액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유동자산	61,491	73,314	유동부채	45,211	101,349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3,137	1,546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540	2,339
2. 유동금융자산	49,390	63,605	단기미지급금	2	-
매도가능금융자산	18,058	12,185	단기미지급비용	1,538	2,339
단기대여금	1,012	1,211	2. 유동금융부채	42,200	98,816
(대손충당금)	(-)483	(-)559	사채	42,200	98,800
단기금융상품	30,803	50,768	사채할증(인)발행차금	-	16
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8,958	8,162	3. 유동비금융부채	1,453	9
단기미수익	8,970	8,182	단기예수금	1,453	9
(대손충당금)	(-)12	(-)20	4. 유동충당부채	18	183
4. 유동비금융자산	6	1	종업원급여충당부채	18	17
단기선급금	2	-	기타유동충당부채	-	166
단기선급비용	4	1	비유동부채	139,267	125,138
비유동자산	82,835	91,119	1. 비유동금융부채	139,163	125,050
1. 비유동금융자산	35,614	22,774	장기차입금	2,500	2,500
매도가능금융자산	17,693	22,445	(현재가치할인차금)	(-)731	(-)789
장기대여금	7	7	정부보조금	701	770
장기금융상품	17,914	322	사채	136,700	122,500
2.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01	112	사채할증(인)발행차금	(-)7	69
장기보증금	117	116	2. 비유동비금융부채	74	74
(현재가치할인차금)	(-)16	(-)4	기타비유동비금융부채	74	74
3. 유형자산	52	45	3. 종업원급여채무	28	11
토지	1	1	순확정급여채무 등	28	11
건물	15	15	4. 비유동충당부채	2	3
구축물	9	9	부채 합계	184,478	226,485
기타유형자산	230	209			
(감가상각누계액 등)	(-)203	(-)189	결손금	(-)40,334	(-)62,302
4. 영업권외 무형자산	6	6	당 기: (+) 21,983		
기타무형자산	6	6	전 기: (+) 3,809		
5. 비유동비금융자산	47,062	68,182	기타자본구성요소	182	250
장기선급비용	14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2	250
장기구상채권	220,076	254,677	자본 합계	(-)40,152	(-)62,052
(대손충당금)	(-)173,028	(-)186,499	부채 및 자본 합계	144,326	164,433
자산 합계	144,326	164,433			

〈표 X-2〉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 당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전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통합)

(단위 : 억원)

구 분	당 기	전 기
영업이익 (A=B-C)	9,401	8,344
영업수익 (B)	16,662	17,474
보험료수익	14,570	14,848
이자수익	1,950	2,390
이전수입	69	150
기타수입	73	86
영업비용 (C)	7,261	9,130
이자비용	6,247	8,151
인 건 비	593	566
경 비	399	368
기 타	22	45
기타 손익 (D)	12,582	(-)4,843
기타충당부채 순환입(전입)액	166	1,144
대 손 충 당 금 순환입(전입)액	12,392	(-)6,035
기 타	24	48
금융 손익 (E)	-	308
금융자산처분손익	-	308
당기순이익 (F=A+D+E)	21,983	3,809
기타포괄손익 (G)	(-)83	182
총포괄이익 (H=F+G)	21,900	3,991

〈표 X-3〉 요약 재무상태표

• 당 기 : 2015년 12월 31일 현재

• 전 기 : 2014년 12월 31일 현재

(예금보험기금)

(단위 : 억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자본	금 액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유동자산	61,471	73,293	유동부채	45,153	101,286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3,124	1,526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509	2,304
2. 유동금융자산	49,390	63,605	단기미지급비용	1,509	2,304
매도가능금융자산	18,058	12,185	2. 유동금융부채	42,200	98,816
단기대여금	1,012	1,211	사채	42,200	98,800
(대손충당금)	(-)483	(-)559	사채할증(인)발행차금	-	16
단기금융상품	30,803	50,768	3. 유동비금융부채	1,444	-
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8,957	8,162	단기예수금	1,444	-
단기미수수익	8,969	8,182	4. 유동충당부채	-	166
(대손충당금)	(-)12	(-)20	비유동부채	139,165	125,052
비유동자산	82,763	91,046	1. 비유동금융부채	139,163	125,049
1. 비유동금융자산	35,606	22,767	장기차입금	2,500	2,500
비유동매도가능금융자산	17,692	22,445	(현재가치할인차금)	(-)731	(-)789
장기금융상품	17,914	322	정부보조금	701	770
2. 비유동비금융자산	47,157	68,279	사채	136,700	122,500
장기구상채권	220,076	254,677	사채할증(인)발행차금	(-)7	68
(대손충당금)	(-)173,028	(-)186,499	2. 비유동충당부채	2	3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	109	101	장기소송충당부채	2	3
			부채 합계	184,318	226,338
			결손금	(-)40,266	(-)62,250
			당 기: (+) 21,984		
			전 기: (+) 3,807		
			기타자본구성요소	182	25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2	251
			자본 합계	(-)40,084	(-)61,999
자산 합계	144,234	164,339	부채 및 자본 합계	144,234	164,339

〈표 X-4〉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 당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전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예금보험기금)

(단위 : 억원)

구 분	당 기	전 기
영업이익 (A=B-C)	9,404	8,348
영업수익 (B)	16,589	17,388
보험료수익	14,570	14,848
이자수익	1,950	2,389
이전수입	69	151
영업비용 (C)	7,185	9,040
이자비용	6,247	8,152
공사운영비 등	938	888
기타손익 (D)	12,580	(-)4,849
기타충당부채 순환입액	167	1,143
대손충당금 순환입(전입)액	12,392	(-)6,035
기 타	21	43
금융손익 (E)	-	308
금융자산처분이익	-	308
당기순이익 (F=A+D+E)	21,984	3,807
기타포괄손익(G)	(-)69	206
총포괄이익 (H=F+G)	21,915	4,013

〈표 X-5〉 요약 재무상태표

• 당 기 : 2015년 12월 31일 현재

• 전 기 : 2014년 12월 31일 현재

(공사회계)

(단위 : 억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자본	금 액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유동자산	20	21	유동부채	58	62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14	20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31	35
2. 유동비금융자산	6	1	단기미지급금	2	-
단기선급비용 등	6	1	단기미지급비용	29	35
비유동자산	181	175	2. 유동비금융부채	9	9
1. 비유동금융자산	7	7	단기예수금	9	9
장기대여금	7	7	3. 유동충당부채	18	18
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01	112	경평성과급 총당부채	18	18
장기보증금	116	116	비유동부채	211	186
(현재가치할인차금)	(-15)	(-4)	1. 비유동비금융부채	183	175
3. 유형자산	53	46	기타비유동비금융부채	183	175
토지	1	1	2. 종업원급여채무	28	11
건물	14	14	순확정급여채무	28	11
건축물	2	2	부채 합계	269	248
기타유형자산	229	209			
(감가상각누계액 등)	(-193)	(-180)			
4. 영업권이외무형자산	6	6	결손금	(-68)	(-52)
기타무형자산	6	6	당 기: (-) 1		
5. 비유동비금융자산	14	4	전 기: (+) 2		
장기선급비용	14	4	자본 합계	(-68)	(-52)
자산 합계	201	196	부채 및 자본 합계	201	196

〈표 X-6〉 요약 손익계산서

- 당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전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사회계)

(단위 : 억원)

구 분	당 기	전 기
영업손익 (A=B-C)	(-)5	(-)7
영업수익 (B)	978	927
이자수익	1	1
기금전입수익	977	926
영업비용 (C)	983	934
인건비	593	566
경비	390	368
기타손익 (D)	4	9
충당부채환입	-	2
정부보조금수익	1	1
기타	3	6
당기순이익 (F=A+D)	(-)1	2
기타포괄손익 (G)	(-)15	(-)24
총포괄손익 (H=F+G)	(-)16	(-)22



〈표 X-7〉 요약 재정상태표

- 당 기 : 2015년 12월 31일 현재
- 전 기 : 2014년 12월 31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단위 : 억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순자산	금 액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유동자산	12,325	22,398	유동부채	42,876	48,966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67	937	1. 유동성장기차입부채	41,313	46,901
2. 단기금융상품	8,192	20,304	2. 기타유동부채	1,563	2,065
3. 단기투자증권	700	1,004			
4. 미수채권	11,041	11,115			
(대손충당금)	(-11,028)	(-11,028)	장기차입부채	105,828	138,444
5. 단기대여금	142,927	113	1. 공채	105,828	138,444
(대손충당금)	(-139,574)	(-47)			
			부채 합계	148,704	187,410
투자자산	53,157	68,562			
1. 장기대여금	226	143,686			
(대손충당금)	(-92)	(-139,754)			
2. 장기투자증권	53,023	64,630			
			순자산		
기타비유동자산	74	110	1. 기본순자산	523,064	523,064
1. 장기미수채권	1	41	2. 적립금및잉여금	(-609,378)	(-630,550)
(대손충당금)	(-1)	(-41)	3. 순자산조정	3,166	11,146
2. 장기구상채권 등	85	6,547			
(대손충당금)	(-11)	(-6,437)	순자산 합계	(-83,148)	(-96,340)
자산 합계	65,556	91,070	부채와 순자산 합계	65,556	91,070

〈표 X-8〉 요약 재정운영표

- 당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전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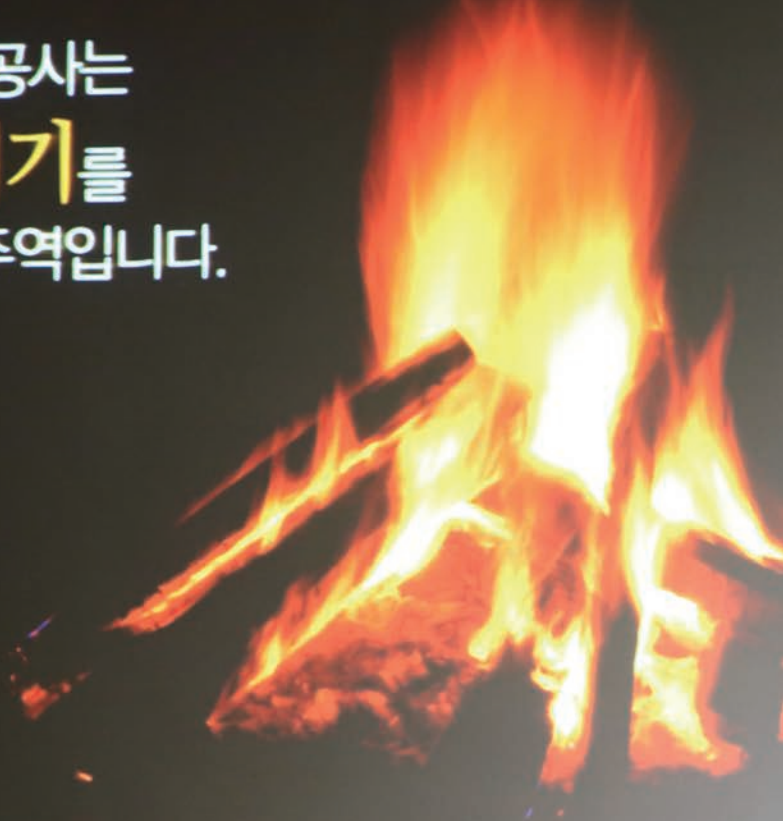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단위 : 억원)

구 분	당 기			전 기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I. 프로그램순원가	5,949	12,684	(-)6,735	8,764	19,563	(-)10,799
1. 금융정책지원	5,949	12,684	(-)6,735	8,764	19,563	(-)10,799
장기투자증권처분손실	-			1,492		
지급수수료 등	9			66		
대손상각비	437			328		
공채 등 이자비용	5,503			6,878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		2,412			15,952	
기타투자자산처분이익		3			14	
정부외융자금이자수익		1,834			1,326	
투자증권감액손실환입		497			786	
대손충당금환입		50			398	
배당금수익		7,747			1,086	
잡이익		141			1	
II. 관리운영비			65			76
1. 인건비			-			-
2. 경비			65			76
III. 비배분비용			-			-
IV. 비배분수익			434			334
1. 이자수익			288			219
2. 평가이익			146			24
3. 기타수익			-			91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7,104			(-)11,057
VI. 비교환수익			14,068			13,560
1. 부담금수익			14,068			13,560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21,172			(-)24,617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기를
헤쳐 온 주역입니다.



선제적 대응능력을 갖춘
최고의 금융안정 및 예금자보호 서비스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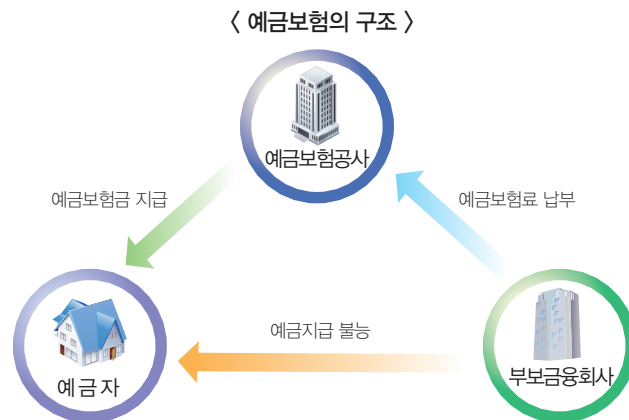
부록

1. 예금보험제도 개요
2. 대외평가
3. 2015년도 주요일지
4. 통계

1. 예금보험제도 개요

가. 예금보험제도 의의

예금보험제도는 평상시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예금보험료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적시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 등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나. 부보금융회사

부보금융회사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로서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증권금융회사 포함),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금융업을 영위하는 개별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예금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일반은행 뿐만 아니라, 외국은행 국내지점,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특수은행 등이 부보금융회사에 해당되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도 이에 해당된다.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모든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가 부보금융회사에 해당된다.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회사가 이에 해당된다.

그밖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부보금융회사에 포함된다.

다. 부보예금

부보예금이란 부보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예금 등을 말하며, 「예금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그 보호범위가 정해져 있다.

〈 보호 금융상품 및 비보호 금융상품 현황 〉

(2015년 12월말 현재)

구 분	보호 금융상품	비보호 금융상품
은 행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외화예금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적립금 등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은행발행채권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투자 매매업자 · 투자 중개업자	- 금융상품 중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적립금 등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선물 · 옵션거래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제세금 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 연계증권(ELS),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보 험	- 증권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 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퇴직보험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적립금 등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
종합금융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 발행채권 등
상호 저축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 정부 · 지방자치단체(국 · 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라. 보호한도

1996년 공사 출범 당시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는 2,000만원이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경제 전체의 구조적 위험이 현실화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호한도를 원리금 전액으로 확대하였다.

이후 금융구조조정의 진전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한편, 원리금 전액 보장으로 인한 예금자와 부보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됨에 따라 1998년 7월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금보험금 계산방식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내용은 원금(또는 납입 보험료)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2,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원금(또는 납입보험료)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원금만 보호하는 것이었다.

* 공사의 예금보험금 공시 이율[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11개 시중은행에서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월이자 지급식) 기준 금리의 평균이자율]과 영업 정지된 부보금융회사의 약정이율(만기가 지난 예금은 만기후 이율) 중 낮은 이율로 계산된 이자

2001년부터 환원 예정이었던 예금부분보호제도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보호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보험회사의 경우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공사는 2009년 6월 이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DC)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적립금 중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은행 예금, 금리연동형·이율보증형 보험상품 등)으로 운용되는 금전 등을 보호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금자가 보호대상 적립금 등이 예치된 부보금융회사에 다른 부보예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보호대상 적립금 등과 기타 부보예금을 합산하여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예금보호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공사는 2015년 2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보호대상 적립금 등과 기타 부보예금에 대하여 각각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 예금보호한도 변천내역 〉

구 분	예 금 보 호 한 도
1997. 1. 1 ~ 1997.11.18	• 1인당 2,000만원 보호
1997.11.19 ~ 1998. 7.31	• 원리금 전액 보호
1998. 8. 1 ~ 2000.12.31	• 1998. 8. 1 이전 가입분 : 전액 보호 • 1998. 8. 1 이후 가입분 : - 2,000만원 초과 시 원금만 전액 보호 - 2,000만원 이하 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2,000만원까지 보호
2001. 1. 1 ~ 2015. 2.25	• 1인당 5,000만원 보호 (결제성 예금은 2003.12.31까지 전액 보호)
2015. 2. 26 ~ 현 재	• 1인당 5,000만원 보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은 별도로 5,000만원 보호) *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포함

2. 대외평가

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사는 2015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2014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를 토대로 공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성한 경영평가단으로부터 경영실적평가를 받았다.

2015년 6월에 발표된 2014년도 경영평가 결과, 공사는 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하였다.

나. 기금운용평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 대하여 그 운용 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한다. 기금운용평가는 사업운영과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2014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기금운용실적보고서(자산운용부문)를 작성하여 2015년 2월 기금운용평가단에 제출하였으며, 동 평가단은 이를 토대로 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15년 5월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

동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2014년도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 결과 “우수” 등급을 획득하여 금융성 기금 가운데 최고 수준의 기금운용 역량을 인정받았다.

다.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도

공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진단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받았다.

2016년 2월에 발표된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사는 1등급(최우수)을 획득하여 2010년 이후 6년 연속 2등급(우수) 이상으로 평가받았다.

※ 최근 3년 연속 2등급(우수) 이상 획득기관 : 전체 268개 기관 중 44개 기관

아울러, 공사 내부직원 및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는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년 대비 0.25점이 상승한 8.81점(종합청렴도)을 기록하여 2등급(공직유관단체 Ⅲ유형 44개 기관 중 3위)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10년 이후 6년 연속 2등급을 획득하였다.



3. 2015년도 주요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1월 16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 계약이전
2월 26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DC, IRP) 적립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
3월 23일	한화생명보험 지분 2%, 블록세일을 통해 1,334억원 회수
3월 27일	한화생명보험 정기배당금으로 387억원 회수
3월 30일	대원저축은행 대출금 112.6억원 회수
4월 15일	우리은행 정기배당금으로 1,726억원 회수
4월 27일	서울보증보험 정기배당금으로 3,374억원 회수
5월 27일	제9대 광범국 사장 취임
7월 21일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방식 신규 도입
8월 13일	우리은행 중간배당금으로 863억원 회수
8월 20일	노사 합의를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
8월 31일	서울보증보험 중간배당금으로 1,397억원 회수
3월~8월 중	채무조정 캠페인을 통하여 1,598명에게 65억원 회수, 211억원 감면
9월 1일	서민의 경제적 자활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기준 개정
9월 23일	비전 및 미래전략 Agenda 발표
10월 29일	IADI 주관 “올해의 예보기구상” 핵심준칙 및 해외협력부문 수상
11월 2일	한화생명보험 지분 7.5%, 블록세일을 통해 5,203억원 회수
11월 13일	행정자치부 주관 “EA (Enterprise Architecture) 성숙도” 최우수상 수상
11월 25일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우수사례”로 선정
12월 22일	가족친화기업 인증(여성가족부) 획득
12월 22일	예금자보호법 개정(보호대상 범위 확대,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 등)

4. 통 계

가. 부보금융회사¹⁾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은 행	54	54	55	56	57	56	58
(국 내)	(17)	(17)	(17)	(17)	(17)	(17)	(16)
(외국계)	(37)	(37)	(38)	(39)	(40)	(39)	(42)
금융투자 ²⁾	115	118	117	115	117	116	114
보 험	43	44	44	46	47	48	48
(생명보험)	(22)	(23)	(23)	(24)	(25)	(25)	(25)
(손해보험)	(21)	(21)	(21)	(22)	(22)	(23)	(23)
종합금융	2	1	1	1	1	1	1
저축은행 ³⁾	106	105	107	101	91	80	79
합 계	320	322	324	319	313	301	300

주 : 1) 부보금융회사는 영업개시일부터 인 · 허가 취소일 또는 해 · 파산일 전일까지 금융회사를 말함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권업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3) 저축은행중앙회(2007.12월 부보금융회사에 포함) 제외

나. 금융권역별 부보예금¹⁾

(2015년 9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2014 (A)	2015 (B)	증감 (B-A)
은 행	9,568,701	10,344,189	775,488
금융투자	183,806	246,371	62,565
보 험	5,495,566	6,089,373	593,807
(생명보험)	(4,351,008)	(4,758,909)	(407,901)
(손해보험)	(1,144,558)	(1,330,464)	(185,906)
종합금융	6,847	8,256	1,409
저축은행	307,920	347,028	39,108
합 계	15,562,840	17,035,217	1,472,377

주 : 1) 부보예금이란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따라 보호되는 부보금융회사 예금상품 중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정부, 지방자치단체, 타 부보 금융회사 등의 예금 등을 제외한 금액(잔액기준)

다. 상환기금 수입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상환기금 설치 전 예금보험료 수입 ²⁾						상환기금 특별기여금 수입								
	1998 이전 ¹⁾	1999	2000	2001	2002	합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은 행	1,613	1,975	2,630	4,139	4,361	14,718	5,027	4,976	5,965	6,811	7,789	8,518	8,973	9,590	9,786
금융투자	-	51	156	218	262	687	156	185	169	213	227	226	202	200	179
보 험	2,322	1,260	1,781	2,416	2,780	10,559	1,543	1,683	1,782	1,943	2,137	2,352	3,004	3,176	3,513
생명보험	1,800	1,011	1,402	1,938	2,295	8,446	1,265	1,364	1,430	1,534	1,650	1,760	2,297	2,386	2,617
손해보험	522	249	379	478	485	2,113	278	319	352	409	487	592	707	790	896
종합금융	980	336	233	139	130	1,818	7	8	10	19	12	10	9	7	7
저축은행	2,407	377	323	529	604	4,240	430	491	593	715	718	521	394	323	308
신 협	402	162	281	407	641	1,893	116	129	137	170	205	228	248	263	275
합 계	7,724	4,161	5,404	7,848	8,778	33,915	7,280	7,472	8,656	9,871	11,087	11,855	12,830	13,560	14,068

주 : 1) 1998년 예금보험료 수입은 1998년초 예금보험기금 통합에 따라 해체된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제외한 관련 기금을 1998년 4월 1일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인수받은 기금을 포함

2) 2002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라. 예금보험료 수입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2003 ¹⁾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⁵⁾	2013 ⁵⁾	2014 ⁵⁾	2015 ⁵⁾	합 계
은 행	4,775	4,960	4,869	4,987	5,027	4,808	5,291	5,451	4,795	3,748	3,947	4,197	4,369	61,224
금융투자	312	336	300	303	256	305	276	284	283	2	-	-	-	2,658
보 험	3,115	3,403	3,737	4,059	4,455	4,852	5,113	3,307	3,062	86	708	1,256	1,990	39,143
생명보험	2,580	2,832	3,109	3,362	3,654	3,934	4,097	2,609	2,362	-14 ³⁾	221	811	1,280	30,837
손해보험	535	571	628	697	801	918	1,016	698	700	100	487	445	710	8,306
종합금융	73	17	15	19	22	24	29	34	18	8	8	6	4	276
저축은행	667	793	974	1,116	1,306	1,483	1,737	2,524	2,332	1,345	253	256	64	14,849
특별계정 ²⁾	-	-	-	-	-	-	-	-	1,742	5,816	6,672	6,158	7,120	27,509
합 계 ⁴⁾	8,942	9,509	9,895	10,484	11,066	11,472	12,446	11,600	12,231	11,004	11,590	11,872	13,547	145,659

주 : 1) 2002년까지의 예금보험료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2) 2011년 4월 상호저축은행구조조정특별계정 설치(2026년말까지 존치 예정)

3) 2012년 이전에 납부한 예금보험료에 대한 환급

4) 2010년 1월 1일자로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5) 목표기금제도에 따라 2012년(금투·생보 면제, 손보 15% 감액), 2013년(금투 면제, 생보 45% 감액, 손보 7% 감액), 2014년(금투 면제, 생보 38% 감액, 손보 1% 감액), 2015년(금투 면제, 생보 17% 감액) 예금보험료 감면 조치

마.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실적(2002년 舊 발행 예보채권)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합 계
은 행	120,650	158,591	60,307	77,617	36,600	453,765
금융투자	160	3	-	32,185	-	32,348
보 험	11,534	42,100	10,000	92,089	-	155,723
(생명보험)	(11,534)	(41,422)	-	(24,120)	-	(77,076)
(손해보험)	-	(678)	(10,000)	(67,969)	-	(78,647)
종합금융	65,120	-	12,600	73,344	-	151,064
저축은행	9,917	15,977	6,500	33,331	-	65,725
신 협	2,769	8,178	-	2,027	-	12,974
합 계	210,150	224,849	89,407	310,593	36,600	871,599 ¹⁾

주 : 1) 차환발행을 포함한 총 발행 누적액

바. 상환기금 자금지원 총괄표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 자	출 연	예금보험금 지급 ¹⁾	자산매입 ¹⁾	대 출	합 계
은 행	222,039	139,189	-	81,064	-	442,292
금융투자	99,769	4,143	113	21,239	-	125,264
보 험	159,198	31,192	-	3,495	-	193,885
(생명보험)	(56,697)	(27,519)	-	(3,495)	-	(87,710)
(손해보험)	(102,501)	(3,673)	-	-	-	(106,174)
종합금융	26,931	7,431	182,718	-	-	217,080
저축은행	1	4,161	72,892	-	5,969	83,023
신 협	-	-	47,402	-	-	47,402
합 계	507,937	186,117	303,124	105,799	5,969	1,108,945

주 : 1) 정리금융회사를 통한 지원 포함

사. 상환기금 자금지원 세부 내역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금액
출 자	서울은행	46,809
	제일은행	50,248
	한빛은행	60,286
	국민 등 5개 인수은행	11,923
	하나은행(하나·보람합병)	3,295
	조흥은행	27,179
	평화은행	4,930
	경남은행	2,590
	광주은행	1,704
	제주은행	531
	수협	11,581
	농협	962
	한아름종합금융회사	300
	하나로증권	24,912
	한스, 한국, 중앙증권	2
	영남증권	1,717
	한아름상호신용금고	1
	서울보증보험	102,500
	대한생명보험	35,500
	국민, 태평양, 두원, 동아, 한덕, 조선생명보험	21,197
	한국투자신탁증권	51,649
	대한투자신탁증권	29,003
	정리금융공사	1
	대한, 국제화재보험	1
	현대투자신탁증권	19,116
	소 계	507,937
출 연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5개 인수은행)	97,113
	한빛, 경남, 광주, 평화, 서울, 제주은행	29,677
	농협	870
	삼성, 흥국, 교보, 제일생명(4개 인수보험사)	11,641
	제일은행	11,528
	대한, 현대, 금호, 동양, SK생명보험	14,220
	부민금고 등	4,161
	대한화재	509
	우리(舊하나로)증권	7,431
	국제화재	739
	동양, 삼성, 현대, LG, 동부화재	2,425
	녹십자(대신)생명	1,393
	KB(한일)생명	265
	한국투자신탁증권	784
	대한투자신탁증권	630
	현대투자신탁증권	2,730
	소 계	186,117

구		분	지원금액
예금보험금지급	직접지급	신용협동조합	47,402
		증권회사(4개)	113
		상호신용금고	12,335
		영남, 한솔, 한국증권	1
	정리금융회사 대출을 통한 지급	한아름종합금융(종금 18개)	182,717
		한아름상호신용금고(금고 59개)	60,557
	소 계		303,124
자산매입	직접매입	제일은행(신주인수권부사채)	249
		제일은행(베트남, 뉴욕현지법인 지분)	165
		현대투자신탁증권(현대오토넷 주식등)	8,570
	정리금융공사 대출을 통한 매입	국민 등 5개 인수은행	1,588
		제일은행	79,063
		동아, 국민, 태평양, 대한, SK생명보험	3,495
		한국투자신탁증권	4,830
		대한투자신탁증권	6,539
		현대투자신탁증권	1,300
		소 계	105,799
대 출	상호신용금고(13개)	5,969	
	소 계	5,969	
총 계			1,108,945

아.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 총괄표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 자	출 연	예금보험금 지급	대 출	개산지급금	합 계 ¹⁾
은 행	-	-	-	-	-	-
금융투자	-	-	-	-	-	-
보 험	-	226	-	-	-	226
(생명보험)	-	-	-	-	-	-
(손해보험)	-	226	-	-	-	226
종합금융	-	-	-	-	-	-
저축은행	1,211	24,542	14,413	4,891	219	45,276
특별계정	3,655	229,873	36,265	1,136	775	271,704
합 계	4,866	254,641	50,678	6,027	994	317,206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자. 연도별 상환기금 지원자금 회수 실적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연 도	금 액
2000 이전	103,457
2001	41,179
2002	26,634
2003	56,034
2004	56,672
2005	36,117
2006	34,001
2007	43,660
2008	23,980
2009	24,118
2010	29,295
2011	12,679
2012	13,769
2013	7,992
2014	24,449
2015	16,243
누 계 ¹⁾	550,279

주 : 1) 현투증권 등 부실금융회사 대주주 책임부담금 2,351억원 (2004년도), 458억원 (2006년도), 93억원 (2007년도), 200억원 (2012년도) 포함

차. 형태별 상환기금 지원자금 회수 실적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금 회수	출연금정산 등	파산배당금 ¹⁾	자산매각 ¹⁾	대출금 직접회수	합 계
은 행	187,444	701	18,472	66,312	-	272,930
금융투자	12,121	3,373	78	18,007	-	33,579
보 험	50,872	888	4,310	2,453	-	58,523
(생명보험)	21,403	848	3,662	2,453	-	28,366
(손해보험)	29,469	40	648	-	-	30,157
종합금융	1,695	59	91,196	-	-	92,950
저축은행	-	343	51,793	-	5,969	58,105
신 협	-	4	34,188	-	-	34,192
합 계	252,133	5,368	200,038	86,771	5,969	550,279

주 : 1) 정리금융회사를 통한 회수 포함

카. 금융구조조정 추진 실적

(2015년 6월말 현재, 단위 : 개, %)

금융권역별	1997년 말 총기관수 (A)	구조조정 현황					신설 등	현 재 기관수
		인가취소	합 병	해산·파산, 영업이전등	계 (B)	비중 (B/A)		
은 행	33	5	11	-	16	48.5	1	18
비은행	2,062	199	273	598	1,070	51.9	218	1,210
• 종 금	30	22	8	-	30	100.0	1	1
• 증 권	36	6	11	6	23	63.9	32	45
• 보 험	50	11	7	6	24	48.0	31	57
• 자산운용	24	7	11	1	19	79.2	82	87
• 저축은행	231	144	38	1	183	79.2	31	79
• 신 협	1,666	3	185	584	772	46.3	19	913
• 리 스	25	6	13	-	19	76.0	22	28
합 계	2,095	204	284	598	1,086	51.8	219	1,228

자료 : 공적자금관리백서, 2015년 8월

타. 공적자금 지원 실적

(1997년 11월~2015년 12월말, 단위 : 조원)

구 분		출 자	출 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합 계
은 행		34.0	13.9	-	14.4	24.6	86.9
제 2 금 융 권	종 금	2.7	0.7	18.3	-	1.0	22.8
	증권·투신	10.9	0.4	0.01	2.1	8.5	21.9
	보 험	15.9	3.1	-	0.3	1.8	21.2
	신 협	-	-	4.7	0.3	-	5.0
	저 축 은 행	-	0.4	7.3	0.6	0.2	8.5
	소 계	29.5	4.7	30.3	3.3	11.5	79.4
해외금융회사 등		-	-	-	-	2.4	2.4
합 계		63.5	18.6	30.3	17.8	38.5	168.7

자료 : 금융위원회





2015 연차보고서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발행인_ **곽 범 국**

편집인_ **한 효 섭**

발행처_ **예금보험공사**

주 소_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전 화_ 02) 758-0114

팩 스_ 02) 758-0220



당신의 예금을 보호합니다 대한민국 금융을 지킵니다

꿈과 희망이 담긴 소중한 예금!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지켜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있어 언제나 안심입니다.

'16.6.23일부터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시행!

이제는 금융상품 가입 시 예금보호 적용여부와 보호한도에
대해 꼼꼼히 **설명을 듣고 확인하신 후** 가입하세요.

·예금자보호,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1. **보호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2. **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 포함 최대 5천만원!
3. **보호금융회사**는 은행, 보험사,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증권사!

5천만원 초과금액과 후순위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KDIC

2015 Annual Report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